2019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9.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19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부

차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3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Ⅱ 2019년 특수교육 현황 21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Ⅲ 2019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3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33
      (1) 특수학교 학생 ····· 33
      (2) 특수학급 학생 ····· 36
      (3) 일반학급 학생 ····· 37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38
   2) 특수교육기관 확충 ····· 39
      (1) 특수학교 ····· 39
      (2) 특수학급 ····· 42

차례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45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48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50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50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57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6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4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64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65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68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71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73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79
7)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 강화 ····· 81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 83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및 발전 ····· 83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 85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94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94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98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00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3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10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05
3) 장애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 108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14

차례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8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18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120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4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7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128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129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1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134

Appendix 부록

Ⅰ :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37
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67

표차례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4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 15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 15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 15
〈표 1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 15
〈표 1 · 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15
〈표 1 · 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 16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16
〈표 1 · 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17

〈표 3 · 1〉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3
〈표 3 ·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 · 3〉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 35
〈표 3 · 4〉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36
〈표 3 · 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6
〈표 3 · 6〉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7
〈표 3 · 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 38
〈표 3 · 8〉 연도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9〉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0〉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40
〈표 3 · 11〉 설립별 특수학교 수 ····· 41
〈표 3 · 12〉 연도별 특수학급 수 ····· 42
〈표 3 · 13〉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 43
〈표 3 · 14〉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 · 현원 ····· 44
〈표 3 · 15〉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45
〈표 3 · 16〉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 45
〈표 3 · 17〉 공 · 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46
〈표 3 · 18〉 유치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 47

표차례

〈표 3 · 19〉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49
〈표 3 · 20〉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51
〈표 3 · 21〉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 54
〈표 3 · 22〉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 56
〈표 3 · 23〉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 58
〈표 3 · 2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 59
〈표 3 · 25〉 전국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 학교의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 61
〈표 3 · 26〉 국 ·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 62
〈표 3 · 27〉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 62
〈표 3 · 28〉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 62
〈표 3 · 29〉 특수학교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 63
〈표 3 · 3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64
〈표 3 · 31〉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66
〈표 3 · 32〉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 67
〈표 3 · 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69
〈표 3 · 34〉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 70
〈표 3 · 35〉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 71
〈표 3 · 36〉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 72
〈표 3 · 37〉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 72
〈표 3 · 38〉 치료지원 현황 ····· 73
〈표 3 · 39〉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 74
〈표 3 · 40〉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 75
〈표 3 · 41〉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 76
〈표 3 · 42〉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 77
〈표 3 · 43〉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78
〈표 3 · 44〉 병원학교 운영 현황 ····· 80
〈표 3 · 45〉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 81
〈표 3 · 46〉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현황 ····· 82

표차례

〈표 3 · 47〉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 지원 현황 ····· 84
〈표 3 · 48〉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86
〈표 3 · 49〉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 87
〈표 3 · 50〉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 88
〈표 3 · 51〉 2019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 89
〈표 3 · 52〉 2019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0
〈표 3 · 53〉 2019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1
〈표 3 · 54〉 2019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92
〈표 3 · 55〉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93
〈표 3 · 56〉 2019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 95
〈표 3 · 57〉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 96
〈표 3 · 58〉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 97
〈표 3 · 5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 98
〈표 3 · 6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영역(원격대학) ····· 99
〈표 3 · 61〉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 101
〈표 3 · 6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 102
〈표 3 · 63〉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 104
〈표 3 · 6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 106
〈표 3 · 6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18) ····· 106
〈표 3 · 66〉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7
〈표 3 · 67〉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7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109
〈표 3 · 69〉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110
〈표 3 · 70〉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111
〈표 3 · 71〉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112
〈표 3 · 7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113
〈표 3 · 73〉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114
〈표 3 · 74〉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 115

표차례

〈표 3 · 75〉 특수교육 총예산 ····· 116
〈표 3 · 7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116
〈표 3 · 77〉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 117
〈표 3 · 78〉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19
〈표 3 · 79〉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서 관련 사업 ····· 123
〈표 3 · 80〉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6
〈표 3 · 81〉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7
〈표 3 · 82〉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 128
〈표 3 · 83〉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 129
〈표 3 · 84〉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 130
〈표 3 · 85〉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32
〈표 3 · 86〉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3
〈표 3 · 87〉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 135

특수교육의 개요 I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 령	관 련 조 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 ·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장 제20조(교육)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A)	´19(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2,178**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49	582	532	-50
	유치원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359
	초등학교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3,060
	중학교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326
	고등학교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1,082
	전공과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217
특수학교 수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2
특수학급 수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429
교원 수*		15,244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734

*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3	´06	´08	´09	´12	´13	´14	´15	´16	´17	´18	**´19**
학교 수	10	22	38	48	65	95	103	114	137	143	149	150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8	´09	´12	´15	´16	´17	´18	**´19**
학생 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3,606	24,720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표 1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95	´00	´08	´09	´12	´15	´16	´17	´18	**´19**
학급 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6,352	6,924	8,92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표 1 · 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71	´82	´86	´91	´96	´00	´08	´09	´12	´15	´16	´17	´18	**´19**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7,857	39,380	44,43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표 1 · 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 학급)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396	4,454	58	1.3%	4,550	96	2.1%	4,615	65	1.4%	4,747	132	2.9%	4,843	96	2.0%
일반학교 특수학급	9,617	9,868	251	2.5%	10,065	197	2.0%	10,325	260	2.6%	10,676	351	3.4%	11,105	429	4.0%
특수교육 지원센터	62	61	-1	-1.6%	60	-1	-1.7%	74	14	23.3%	77	3	4.1%	72	-5	-6.5%
계	**14,075**	**14,383**	**308**	**2.1%**	**14,675**	**292**	**2.4%**	**15,014**	**339**	**2.3%**	**15,500**	**486**	**3.2%**	**16,020**	**520**	**3.2%**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

연 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2	24,932 (29.3)	44,433	15,647	60,080 (70.7)	85,012 (100)
2013	25,522 (29.5)	45,181	15,930	61,111 (70.5)	86,633 (100)
2014	25,827 (29.6)	45,803	15,648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15,622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5)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5)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459 (28.4)**	**50,812 (54.7)**	**15,687 (16.9)**	**66,499 (71.6)**	**92,958 (100)**

〈표 1 · 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3	2,220 (2.6)	3,666 (4.2)	47,120 (54.4)	11,233 (13.0)	2,754 (3.2)	8,722 (10.1)	1,953 (2.3)	4,060 (4.7)	2,157 (2.5)	2,748 (3.2)	86,633 (100)
2014	2,130 (2.4)	3,581 (4.1)	47,667 (54.6)	11,209 (12.8)	2,605 (3.0)	9,334 (10.7)	1,966 (2.3)	3,362 (3.9)	2,029 (2.3)	3,395 (3.9)	87,278 (100)
2015	2,088 (2.4)	3,491 (4.0)	47,716 (54.2)	11,134 (12.6)	2,530 (2.9)	10,045 (11.4)	2,045 (2.3)	2,770 (3.1)	1,935 (2.2)	4,313 (4.9)	88,067 (100)
2016	2,035 (2.3)	3,401 (3.9)	47,258 (53.7)	11,019 (12.5)	2,221 (2.5)	10,985 (12.5)	2,089 (2.4)	2,327 (2.7)	1,675 (1.9)	4,940 (5.6)	87,950 (100)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0)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8)**	**92,958 (1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19년 특수교육대상자는 92,958명으로 ´18년보다 2,178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66,499명(71.6%)으로 ´18년보다 2,056명이 증가함
- 장애영역별로는 자폐성, 발달지체, 의사소통 장애 학생 비율이 각각 0.7%, 0.6%, 0.1%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19년 특수학교는 총 177교로 ´18년보다 2개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1,105개로 ´18년보다 429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총 20,773명으로 ´18년보다 734명이 증가함

2019년 특수교육 현황 Ⅱ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Ⅱ 2019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 2019.4.1.

1 주요 현황

(단위 :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6,084	50,812	15,687	375	92,958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221	268	444	4	1,937
		청각장애	709	717	1,772	27	3,225
		지적장애	14,205	30,996	4,384	39	49,624
		지체장애	3,730	3,791	2,574	105	10,200
		정서행동장애	210	1,314	658	-	2,182
		자폐성장애	5,424	6,832	848	1	13,105
		의사소통장애	134	1,203	867	-	2,204
		학습장애	17	910	482	-	1,409
		건강장애	16	177	1,570	-	1,763
		발달지체	418	4,604	2,088	199	7,309
		계	26,084	50,812	15,687	375	92,958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157	-	-	375	532
		유치원	929	3,422	1,638	-	5,989
		초등학교	7,751	26,282	7,058	-	41,091
		중학교	5,319	9,907	3,236	-	18,462
		고등학교	6,769	10,978	3,755	-	21,502
		전공과	5,159	223	-	-	5,382
		계	26,084	50,812	15,687	375	92,958
학교 및 센터 수			177	8,200	7,777	198	11,689
				11,314			
학급 수			4,843	11,105	14,884	72	30,904
특수학교(급)교원 수*			8,746	11,477	-	550	20,773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4,569	7,883	255	-	12,707

*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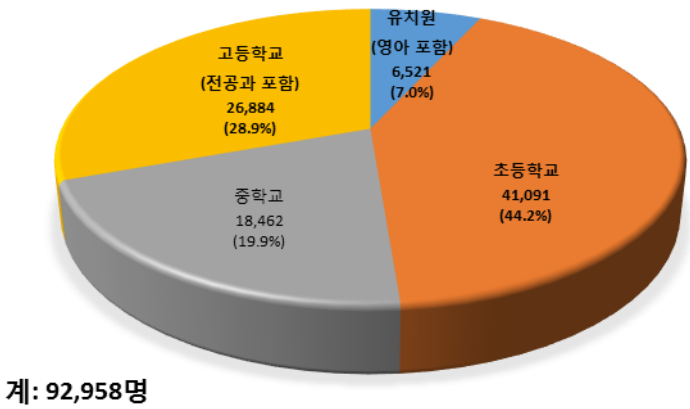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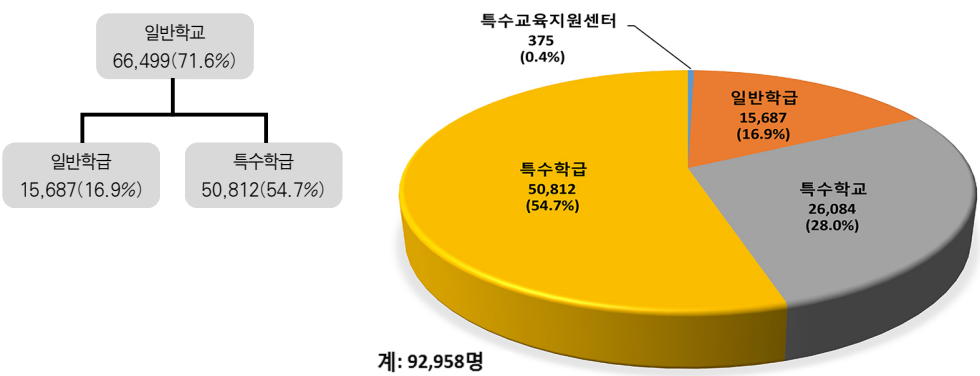

(단위 :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6,084 (28.0%)	50,812 (54.7%)	15,687 (16.9%)	66,499 (71.6%)	375 (0.4%)	**92,958** **(100%)**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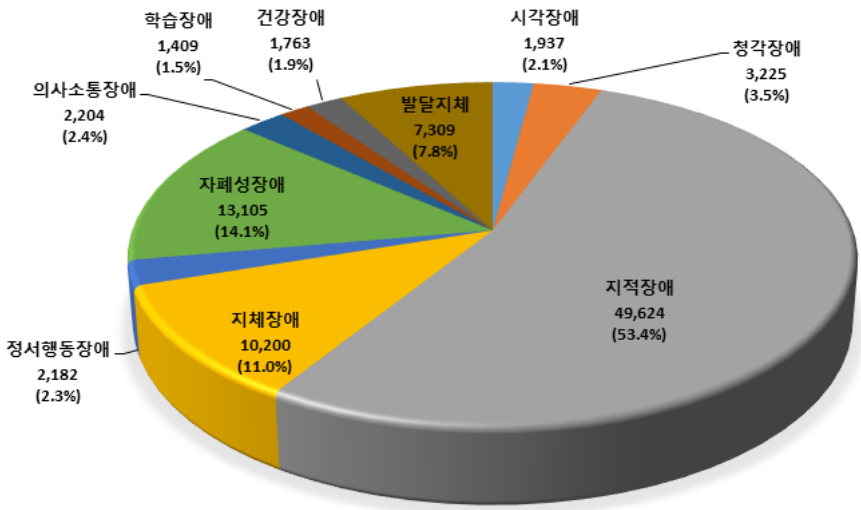

계: 92,958명

(단위 :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8%)	**92,958 (100%)**

2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교 설립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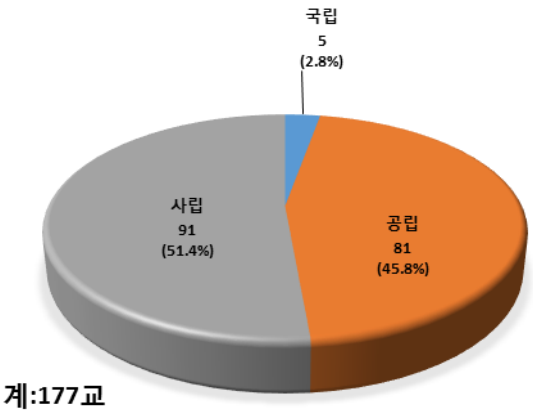

(단위 : 교, 학급, 명)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 립	5	167	877	325
공 립	81	2,675	14,455	4,809
사 립	91	2,001	10,752	3,612
계	**177**	**4,843**	**26,084**	**8,746**

〔특수학교 장애영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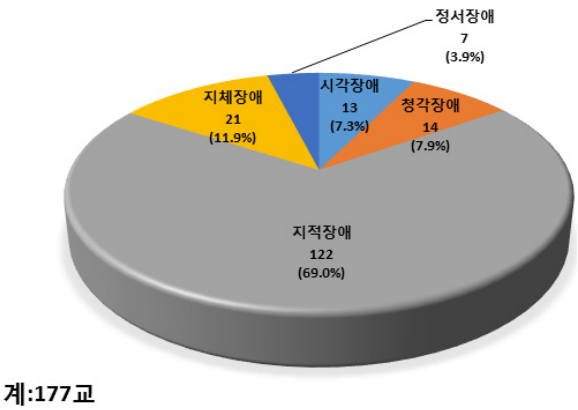

(단위 : 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4	122	21	7	**177**

〈시 · 도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 교)

시 · 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영역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8	19	30	3	4	15	5	3	30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3	6	9	1	1	4	2	1	9
인천	-	5	4	9	1	1	6	1	-	9
광주	-	3	2	5	1	-	3	1	-	5
대전	-	3	2	5	1	-	3	1	-	5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1	-	1	-	-	1	-	-	1
경기	2	12	22	36	-	2	30	3	1	36
강원	-	6	1	7	1	1	5	-	-	7
충북	-	3	7	10	2	1	4	2	1	10
충남	-	5	2	7	-	-	6	1	-	7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3	5	8	1	1	6	-	-	8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8	2	10	-	-	9	1	-	10
제주	-	2	1	3	-	-	2	1	-	3
총계	**5**	**81**	**91**	**177**	**13**	**14**	**122**	**21**	**7**	**177**

〈시 · 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 교)

시 · 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0	8	22	26	26	26	24
부산	15	7	10	12	13	11	9
대구	9	-	3	9	9	9	9
인천	9	1	6	8	8	8	7
광주	5	3	5	5	5	5	4
대전	5	1	5	5	5	5	5
울산	4	-	3	4	4	4	4
세종	1	1	1	1	1	1	1
경기	36	3	31	31	33	33	26
강원	7	-	6	7	7	7	6
충북	10	2	9	10	10	10	10
충남	7	1	2	7	7	7	6
전북	10	1	5	9	9	9	8
전남	8	-	6	8	8	8	8
경북	8	-	5	8	8	8	8
경남	10	-	6	10	10	10	9
제주	3	-	2	3	3	3	3
총계	**177**	**28**	**127**	**163**	**166**	**164**	**147**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특수학급〉

(단위 :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814	949	3,422	952
초등학교	4,422	5,807	26,282	5,821
중 학 교	1,867	2,384	9,907	2,401
고등학교	1,079	1,932	10,978	2,241
전 공 과	18	33	223	62
계	**8,200**	**11,105**	**50,812**	**11,477**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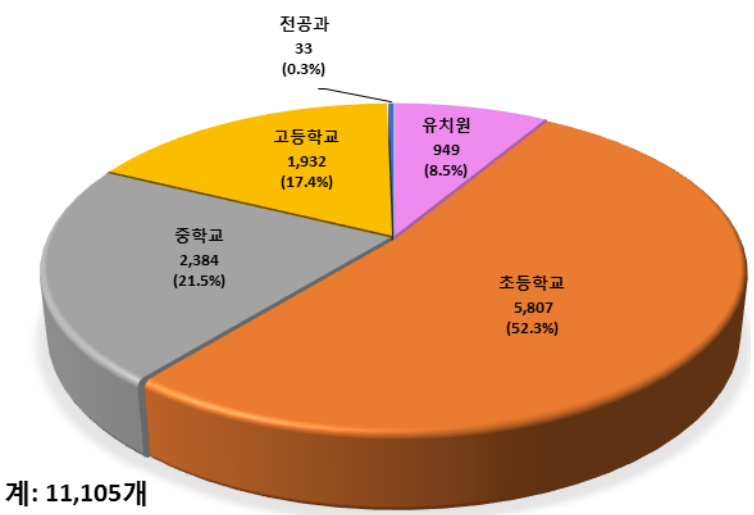

〈일반학급〉

(단위 :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353	1,472	1,638
초등학교	3,351	6,826	7,058
중 학 교	1,650	3,103	3,236
고등학교	1,423	3,483	3,755
계	**7,777**	**14,884**	**15,687**

4 순회교육 현황

(단위 :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 · 파견	651	271	59	-	981	184	338	193	266	981	284	290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488	439	13	62	1,002	61	385	279	277	1,002	270	302
특수교육 지원센터	338	123	8	1,671	2,140	662	822	433	223	2,140	-	772
계	**1,477**	**833**	**80**	**1,733**	**4,123**	**907**	**1,545**	**905**	**766**	**4,123**	**554**	**1,364**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236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공무원	기타 (치료사, 보조인력 등)
198	375	72	860	74	527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고등학교	특수학교	2,447	1,364	55.7	64	5.9	1,019
	특수학급	3,952	1,707	43.2	718	32.0	1,527
	일반학급	1,328	741	55.8	69	11.8	518
	계	7,727	3,812	49.3	851	21.7	3,064
전공과	특수학교	2,131	23	1.1	922	43.7	1,186
	특수학급	103	-	-	82	79.6	21
	계	2,234	23	1.0	1,004	45.4	1,207
전체		**9,961**	**3,835**	**38.5**	**1,855**	**30.3**	**4,271**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2019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Ⅲ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4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 83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3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8

Ⅲ 2019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특수학교 학생

- 2019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6,084명으로 2018년의 25,919명에 비해 165명이 증가함

〈표 3 · 1〉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72	′77	′82	′87	′92	′97	′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학생 수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 시 · 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 ·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 · 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60	301	1,785	835	11	943	3	-	-	124	4,362
부산	80	46	869	302	10	410	6	6	1	72	1,802
대구	58	47	880	245	1	327	13	-	-	20	1,591
인천	93	50	874	190	2	300	18	3	1	4	1,535
광주	97	12	520	198	1	181	5	-	-	12	1,026
대전	116	21	500	110	-	265	4	-	-	7	1,023
울산	19	31	499	88	7	147	-	-	-	13	804
세종	2	1	71	17	-	44	-	-	1	9	145
경기	29	41	2,869	571	19	1,254	26	4	2	47	4,862
강원	65	13	526	63	1	154	4	-	1	17	844
충북	156	92	630	172	6	193	4	-	-	11	1,264
충남	3	7	676	152	3	211	8	-	2	5	1,067
전북	54	11	715	159	8	144	15	-	-	29	1,135
전남	72	14	737	121	4	142	6	-	5	9	1,110
경북	6	12	1,032	123	2	251	15	-	3	16	1,460
경남	10	7	869	302	5	380	5	4	-	23	1,605
제주	1	3	153	82	130	78	2	-	-	-	449
계	**1,221**	**709**	**14,205**	**3,730**	**210**	**5,424**	**134**	**17**	**16**	**418**	**26,084**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77명(3.4%), 공립학교 14,455명(55.4%), 사립학교 10,752명(41.2%)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 · 3〉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시 · 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96	1,447	2,419	4,362	55.4
부산	-	1,251	551	1,802	30.6
대구	-	835	756	1,591	47.5
인천	-	1,105	430	1,535	28.0
광주	-	762	264	1,026	25.7
대전	-	685	338	1,023	33.0
울산	-	533	271	804	33.7
세종	-	145	-	145	-
경기	381	2,322	2,159	4,862	44.4
강원	-	762	82	844	9.7
충북	-	451	813	1,264	64.3
충남	-	846	221	1,067	20.7
전북	-	703	432	1,135	38.1
전남	-	545	565	1,110	50.9
경북	-	376	1,084	1,460	74.2
경남	-	1,402	203	1,605	12.6
제주	-	285	164	449	36.5
계	**877(3.4)**	**14,455(55.4)**	**10,752(41.2)**	**26,084(100)**	**41.2**

(2) 특수학급 학생

- 2019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50,812명으로 2018년의 48,848명에 비해 1,964명이 증가함
  -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비해 429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 · 4〉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71	'82	'86	'91	'96	'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3,422명, 초등학교 26,282명, 중학교 9,907명, 고등학교 11,201명(전공과 포함)임

〈표 3 · 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337	-	337	11	3,301	-	3,312	16	1,249	-	1,265	26	1,145	161	1,332	53	6,032	161	6,246
부산	-	118	-	118	6	1,500	2	1,508	-	489	-	489	10	546	72	628	16	2,653	74	2,743
대구	-	132	-	132	13	995	-	1,008	5	424	-	429	8	467	-	475	26	2,018	-	2,044
인천	-	259	-	259	5	1,816	-	1,821	-	590	3	593	-	619	53	672	5	3,284	56	3,345
광주	-	67	-	67	5	707	-	712	7	232	6	245	12	246	39	297	24	1,252	45	1,321
대전	-	176	-	176	-	873	-	873	-	323	9	332	-	325	54	379	-	1,697	63	1,760
울산	-	101	-	101	-	644	-	644	-	267	-	267	-	254	-	254	-	1,266	-	1,266
세종	-	81	-	81	-	171	-	171	-	55	-	55	-	57	-	57	-	364	-	364
경기	-	1,072	7	1,079	-	6,671	18	6,689	-	2,591	121	2,712	-	3,218	126	3,344	-	13,552	272	13,824
강원	4	99	-	103	5	867	-	872	-	302	-	302	11	305	-	316	20	1,573	-	1,593
충북	2	186	-	188	9	988	-	997	13	402	2	417	14	447	13	474	38	2,023	15	2,076
충남	5	259	-	264	3	1,622	-	1,625	4	529	25	558	4	633	21	658	16	3,043	46	3,105
전북	-	98	-	98	10	934	-	944	-	313	14	327	5	324	12	341	15	1,669	26	1,710
전남	-	126	-	126	4	1,297	-	1,301	-	490	12	502	-	507	19	526	4	2,420	31	2,455
경북	-	65	-	65	3	1,366	12	1,381	-	467	73	540	-	413	170	583	3	2,311	255	2,569
경남	-	196	-	196	4	2,031	10	2,045	2	689	61	752	8	627	102	737	14	3,543	173	3,730
제주	-	32	-	32	3	376	-	379	15	107	-	122	13	108	7	128	31	623	7	661
계	**11**	**3,404**	**7**	**3,422**	**81**	**26,159**	**42**	**26,282**	**62**	**9,519**	**326**	**9,907**	**111**	**10,241**	**849**	**11,201**	**265**	**49,323**	**1,224**	**50,812**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23명(대구 11명, 인천 25명, 경기 151명, 충북 36명) 포함

(3) 일반학급 학생

- 2019년 4월 현재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5%로 2018년보다 0.1% 증가함

〈표 3 · 6〉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시·도	일반학교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77,630	422,453	207,480	236,725	944,288	861	5,579	2,608	3,731	12,779	1.1	1.3	1.3	1.6	1.4
부산	42,240	155,561	73,357	84,233	355,391	511	2,728	1,204	1,607	6,050	1.2	1.8	1.6	1.9	1.7
대구	36,184	126,123	62,539	70,945	295,791	287	2,045	999	1,543	4,874	0.8	1.6	1.6	2.2	1.6
인천	39,396	158,342	73,863	78,103	349,704	470	2,889	1,106	1,543	6,008	1.2	1.8	1.5	2.0	1.7
광주	23,251	88,991	43,070	49,048	204,360	156	1,266	567	882	2,871	0.7	1.4	1.3	1.8	1.4
대전	22,898	82,644	40,984	46,866	193,392	289	1,302	613	1,053	3,257	1.3	1.6	1.5	2.2	1.7
울산	17,246	68,406	30,910	33,836	150,398	155	1,118	520	786	2,579	0.9	1.6	1.7	2.3	1.7
세종	6,540	27,902	11,197	9,468	55,107	96	253	102	132	583	1.5	0.9	0.9	1.4	1.0
경기	177,190	770,124	353,081	363,634	1,664,029	1,626	9,881	4,335	5,960	21,802	0.9	1.3	1.2	1.6	1.3
강원	16,554	76,356	37,837	42,630	173,377	160	1,219	567	941	2,887	1.0	1.6	1.5	2.2	1.7
충북	16,619	86,710	40,839	44,058	188,226	286	1,615	781	1,299	3,981	1.7	1.9	1.9	2.9	2.1
충남	26,659	122,492	56,050	60,515	265,716	365	2,125	843	1,290	4,623	1.4	1.7	1.5	2.1	1.7
전북	22,025	97,731	48,648	56,769	225,173	298	1,531	718	1,149	3,696	1.4	1.6	1.5	2.0	1.6
전남	18,750	95,178	45,723	52,823	212,474	185	1,716	818	1,119	3,838	1.0	1.8	1.8	2.1	1.8
경북	36,723	131,374	61,394	71,272	300,763	278	2,101	1,022	1,575	4,976	0.8	1.6	1.7	2.2	1.7
경남	49,122	195,306	88,761	93,313	426,502	380	2,983	1,376	1,879	6,618	0.8	1.5	1.6	2.0	1.6
제주	6,181	41,066	18,899	19,707	85,853	118	740	283	395	1,536	1.9	1.8	1.5	2.0	1.8
계	**635,208**	**2,746,759**	**1,294,632**	**1,413,945**	**6,090,544**	**6,521**	**41,091**	**18,462**	**26,884**	**92,958**	**1.0**	**1.5**	**1.4**	**1.9**	**1.5**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 2012(1.2%),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1.4%), 2018(1.4%), 2019(1.5%)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19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72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375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12명, 1세 121명, 2세 242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254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121명임

〈표 3 · 7〉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 학급, 명)

시 · 도	센터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5	44	86	135	135	-	135
부산	-	-	-	-	-	-	-	-
대구	4	-	5	6	11	11	-	11
인천	2	-	1	2	3	3	-	3
광주	-	-	-	-	-	-	-	-
대전	4	-	11	2	13	13	-	13
울산	2	-	4	4	8	-	8	8
세종	-	-	-	-	-	-	-	-
경기	25	5	24	48	77	19	58	77
강원	6	-	2	9	11	1	10	11
충북	4	-	3	9	12	4	8	12
충남	3	-	1	9	10	5	5	10
전북	-	-	-	-	-	-	-	-
전남	-	-	1	8	9	4	5	9
경북	6	1	10	25	36	21	15	36
경남	3	-	7	14	21	9	12	21
제주	2	1	8	20	29	29	-	29
계	**72**	**12**	**121**	**242**	**375**	**254**	**121**	**375**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 · 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 경영하여야 함(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77개교로 2018년 대비 2교 증가하였음

〈표 3 · 8〉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학교수	10	22	38	48	65	95	103	11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 전국 177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81개교, 사립 91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51.4%임
- 전국 177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개교, 청각장애학교 14개교, 지적장애학교 122개교, 지체장애학교 21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68.9%임

〈표 3 · 9〉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69	6	1	81
사립	10	10	52	14	5	91
계	**13**	**14**	**122**	**21**	**7**	**177**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 전국 177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에 36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30교, 부산 15교 등의 순임

〈표 3 · 10〉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 · 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5	5	3	30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4	2	1	9
인천	1	1	6	1	-	9
광주	1	-	3	1	-	5
대전	1	-	3	1	-	5
울산	-	1	3	-	-	4
세종	-	-	1	-	-	1
경기	-	2	30	3	1	36
강원	1	1	5	-	-	7
충북	2	1	4	2	1	10
충남	-	-	6	1	-	7
전북	1	1	6	2	-	10
전남	1	1	6	-	-	8
경북	-	-	7	-	1	8
경남	-	-	9	1	-	10
제주	-	-	2	1	-	3
계	13	14	122	21	7	177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1〉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8	19	30
부산	-	8	7	15
대구	-	3	6	9
인천	-	5	4	9
광주	-	3	2	5
대전	-	3	2	5
울산	-	2	2	4
세종	-	1	-	1
경기	2	12	22	36
강원	-	6	1	7
충북	-	3	7	10
충남	-	5	2	27
전북	-	6	4	10
전남	-	3	5	8
경북	-	3	5	8
경남	-	8	2	10
제주	-	2	1	3
계	**5**	**81**	**91**	**177**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장애학생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특수학교 신설비 교부기준 마련
-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작은 규모 및 단일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추진

(2) 특수학급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 · 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현황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 · 운영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2019년 4월 현재 11,105개 학급으로 2018년보다 429개 학급이 증가함

〈표 3 · 12〉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00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학급 수	1	350	355	1,601	3,181	3,80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949학급, 초등학교 5,807학급, 중학교 2,384학급, 고등학교 1,965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2.3%를 차지함
- 2019년 4월 현재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0,807학급, 사립 252학급으로 총 11,105학급이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국 · 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7%를 차지함

〈표 3 · 13〉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83	-	83	2	727	-	729	2	289	-	291	3	223	29	255	7	1,322	29	1,358
부산	-	28	-	28	1	331	1	333	-	122	-	122	1	80	11	92	2	561	12	575
대구	-	34**	-	34	2	244	-	246	1	100	-	101	1	72	-	73	4	450	-	454
인천	-	70	-	70	1	344	-	345	-	117	1	118	-	108	7	115	1	639	8	648
광주	-	16	-	16	1	146	-	147	1	59	1	61	2	41	8	51	4	262	9	275
대전	-	48	-	48	-	171	-	171	-	77	2	79	-	50	9	59	-	346	11	357
울산	-	27	-	27	-	135	-	135	-	56	-	56	-	47	-	47	-	265	-	265
세종	-	25	-	25	-	50	-	50	-	21	-	21	-	13	-	13	-	109	-	109
경기	-	314	2	316	-	1,403	3	1,406	-	625	32	657	-	555	21	576	-	2,897	58	2,955
강원	1	28	-	29	1	216	-	217	-	80	-	80	1	56	-	57	3	380	-	383
충북	1	50	-	51	2	233	-	235	2	96	1	99	3	77	3	83	8	456	4	468
충남	1	69	-	70	1	354	-	355	1	135	8	144	1	110	4	115	4	668	12	684
전북	-	28	-	28	2	245	-	247	-	79	5	84	1	59	2	62	3	411	7	421
전남	-	44	-	44	1	311	-	312	-	123	3	126	-	93	4	97	1	571	7	579
경북	-	19	-	19	1	358	2	361	-	115	20	135	-	79	30	109	1	571	52	624
경남	-	54	-	54	1	441	2	444	1	162	19	182	1	119	20	140	3	776	41	820
제주	-	7	-	7	1	73	-	74	2	26	-	28	2	17	2	21	5	123	2	130
계	**3**	**944**	**2**	**949**	**17**	**5,782**	**8**	**5,807**	**10**	**2,282**	**92**	**2,384**	**16**	**1,799**	**150**	**1,965**	**46**	**10,807**	**252**	**11,105**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5학급, 충북 4학급)
** 대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4학급 미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 ·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19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6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1명임

〈표 3 · 14〉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 · 현원

(단위 : 명)

시 · 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8	5.2	5.2	6.2	4.1	4.5	4.3	5.2	4.0	4.7	4.7	5.7
부산	3.3	5.1	5.0	6.0	4.2	4.5	4.0	6.8	3.6	4.7	4.4	6.4
대구	2.3	4.8	5.3	7.0	3.9	4.1	4.2	6.5	3.7	4.3	4.7	6.8
인천	2.9	4.8	5.3	6.4	3.7	5.3	5.0	5.8	3.6	5.2	5.1	6.1
광주	2.8	4.7	5.0	6.4	4.2	4.8	4.0	5.8	3.5	4.8	4.4	6.2
대전	3.0	5.0	5.5	7.7	3.7	5.1	4.2	6.4	3.5	5.1	4.6	7.1
울산	2.0	3.9	4.3	6.9	3.7	4.8	4.8	5.4	3.5	4.5	4.6	6.2
세종	3.3	4.8	4.4	5.5	3.2	3.4	2.6	4.4	3.3	3.6	3.1	4.9
경기	3.4	5.6	5.4	6.3	3.4	4.8	4.1	5.8	3.4	4.9	4.4	6.0
강원	2.8	3.2	4.0	6.6	3.6	4.0	3.8	5.5	3.4	3.9	3.9	6.1
충북	2.7	3.9	4.4	6.5	3.7	4.2	4.2	5.7	3.4	4.1	4.3	6.1
충남	3.6	4.2	4.6	6.5	3.8	4.6	3.9	5.7	3.8	4.5	4.1	6.0
전북	3.6	3.9	4.5	6.6	3.5	3.8	3.9	5.5	3.5	3.8	4.1	6.1
전남	2.9	4.6	5.5	7.2	2.9	4.2	4.0	5.4	2.9	4.2	4.4	6.2
경북	3.6	4.4	4.8	7.7	3.4	3.8	4.0	5.3	3.5	3.9	4.3	6.5
경남	3.3	4.1	4.6	6.4	3.6	4.6	4.1	5.3	3.6	4.5	4.3	5.8
제주	2.7	4.5	4.6	5.4	4.6	5.1	4.4	6.1	4.0	4.9	4.4	5.7
평균	**3.3**	**4.8**	**5.0**	**6.5**	**3.6**	**4.5**	**4.2**	**5.7**	**3.5**	**4.6**	**4.4**	**6.1**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 · 운영 추진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 · 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4월 현재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27개교 276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개교 61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814개교 949학급으로 총 941개교 1,225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 · 15〉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27	10	814	**941**
학급 수	276	61	949	**1,225**

- 2019년 4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29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245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3,422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1,638명으로 총 5,989명임

〈표 3 · 16〉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 (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생 수	929	245	3,422	1,638	**5,989**

- 2019년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은 공립유치원 4,091명, 사립유치원 958명으로 총 5,049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최고지원액 평균은 공립유치원 114.9천원, 사립유치원 377.6천원임

〈표 3 · 17〉 공 · 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 · 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383	146	67	384
부산	174	110	186	361
대구	165	110	102	361
인천	304	110	120	361
광주	72	110	42	361
대전	192	110	39	361
울산	120	110	19	380
세종	86	110	-	-
경기	1197	90	114	340
강원	120	140	8	361
충북	211	110	15	413
충남	300	110	14	413
전북	184	90	50	361
전남	149	110	7	361
경북	117	110	82	431
경남	266	140	63	431
제주	51	137	30	361
계	**4,091**	**114.9**	**958**	**377.6**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또는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표 3 · 18〉 유치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1] 현황

(단위 : 교, 원, 개소)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계
특수학교 유치원[2]	유치원[3]		소계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27	814	1,353	2,294	162	745	879	1,786	**4,080**

1)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영 · 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8.12.31. 기준
2) 유치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19.4.1. 기준
3)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치원. ´19.4.1. 기준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및 특수교육기관 배치 확대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교원은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은 2019년 4월 현재 특수학교 50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72학급, 총 122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57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375명으로 총 532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19명, 1세 170명, 2세 343명으로 총 532명임

〈표 3 · 19〉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학급)

시 · 도	연령별 지원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 계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지원 영아 수	계		
서울	8	60	115	183	12	48	11	135	-	135	23	183
부산	3	10	21	34	15	34	-	-	-	-	15	34
대구	-	5	6	11	-	-	4	11	-	11	4	11
인천	-	2	6	8	3	5	2	3	-	3	5	8
광주	-	9	15	24	6	24	-	-	-	0	6	24
대전	-	15	7	22	3	9	4	13	-	13	7	22
울산	-	4	4	8	-	-	2	-	8	8	2	8
세종	-	2	2	4	1	4	-	-	-	0	1	4
경기	6	28	59	93	4	16	25	19	58	77	29	93
강원	-	2	9	11	-	-	6	1	10	11	6	11
충북	-	6	10	16	2	4	4	4	8	12	6	16
충남	-	1	14	15	2	5	3	5	5	10	5	15
전북	-	-	7	7	2	7	-	-	-	-	2	7
전남	-	1	9	10	-	1	-	4	5	9	-	10
경북	1	10	25	36	-	-	6	21	15	36	6	36
경남	-	7	14	21	-	-	3	9	12	21	3	21
제주	1	8	20	29	-	-	2	29	-	29	2	29
계	**19**	**170**	**343**	**532**	**50**	**157**	**72**	**254**	**121**	**375**	**122**	**532**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영아 조기 중재를 위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학급 편성 · 확대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19년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7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505명임

〈표 3 · 20〉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여수)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인문사회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6		8	172	172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동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예체능	특수체육교육학과	7	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단위 :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남부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죽전)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
	대구한의대	의과학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정보·컴퓨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일본어
	대전대	인문사회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백석대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 (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신라대	체육계열	웰빙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53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단위 :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체육과학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9	2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중부대	사범계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국제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31		51	1,419	1,333	
총계	37		59	1,591	1,505	

- 2019년 기준 17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7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21〉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단위 :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19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1986	계절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7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2001	야간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1999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창원대	1997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201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1997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국립계	**6**			**10**	
사립	대구대	1984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1997	계절	감각운동 발달장애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지적학습 발달장애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위 :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19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순천향대	1999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2011	야간	특수체육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세종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아주대	2001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영남대	1999	계절 ·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용인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정교사(2급)
	우석대	1986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6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자대	199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인제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2000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1999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사립계	11			17	
총계	17			27	

- 2019년 기준 10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22〉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 명)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19학년도 입학정원	´19학년도 운영전공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10	초등특수교육
부산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8	
대구교육대학교		계절 · 야간	총정원제 운영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 · 야간	30	특수교육
광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춘천교육대학교		계절 · 야간		
청주교육대학교		계절	9	초등특수교육 및 학습행동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계절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전주교육대학교		야간		
진주교육대학교		야간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자격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 · 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 · 도 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출석(집합)연수 혹은 원격교육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연수(유 · 초등 · 부전공과목), 직무연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 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 · 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 · 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가 99.5%, 특수학급이 99.9%, 전체 99.7%로 나타남

〈표 3 · 23〉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 : 명, %)

시 · 도	특수학교 (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499	1,484	15	99	1,359	1,359	-	100	2,858	2,843	15	99.5
부산	662	656	6	99.1	585	583	2	99.7	1,247	1,239	8	99.4
대구	558	558	-	100	458	457	1	99.8	1,016	1,015	1	99.9
인천	484	484	-	100	655	655	-	100	1,139	1,139	-	100
광주	364	364	-	100	279	279	-	100	643	643	-	100
대전	337	336	1	99.7	371	371	-	100	708	707	1	99.9
울산	275	275	-	100	265	265	-	100	540	540	-	100
세종	56	56	-	100	112	112	-	100	168	168	-	100
경기	1,818	1,816	2	99.9	3,263	3,260	3	99.9	5,081	5,076	5	99.9
강원	365	361	4	98.9	385	384	1	99.7	750	745	5	99.3
충북	438	434	4	99.1	471	469	2	99.6	909	903	6	99.3
충남	383	380	3	99.2	693	692	1	99.9	1,076	1,072	4	99.6
전북	410	409	1	99.8	421	421	-	100	831	830	1	99.9
전남	417	414	3	99.3	582	582	-	100	999	996	3	99.6
경북	480	473	7	98.5	624	623	1	99.8	1,104	1,096	8	99.3
경남	588	587	1	99.8	823	822	1	99.9	1,411	1,409	2	99.9
제주	162	161	1	99.4	131	131	-	100	293	292	1	99.7
총계	**9,296**	**9,248**	**48**	**99.5**	**11,477**	**11,465**	**12**	**99.9**	**20,773**	**20,713**	**60**	**99.7**

- 2019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610개이며 9,764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2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시 · 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27	570	60,340
부산	64	569	36,000
대구	61	1,080	56,660
인천	68	1,052	76,138
광주	55	583	49,455
대전	28	276	21,550
울산	2	193	3,000
세종	6	161	14,500
경기	11	196	25,000
강원	51	615	37,445
충북	23	291	25,000
충남	71	1301	54,026
전북	45	377	71,580
전남	7	781	18,540
경북	49	758	55,440
경남	36	809	40,720
제주	6	152	12,000
계	610	9,764	657,394

향후과제

- 특수교육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주기 단축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다양화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 ·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 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4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 학교는 총 12,117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0.0%임

〈표 3·25〉 전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51	94.0	99.0	92.4	84.8	63.7	78.6	96.4	91.6	70.1	59.0	62.3	81.1
부산	640	96.9	98.9	95.5	93.0	89.8	93.4	98.1	90.8	96.3	96.6	92.2	94.7
대구	461	99.8	99.8	99.3	99.8	99.1	96.5	99.3	97.8	98.3	95.7	95.9	98.3
인천	531	96.2	95.7	96.0	93.6	85.1	92.3	96.6	85.1	87.0	66.1	71.2	87.7
광주	321	96.6	99.1	96.6	92.8	78.2	76.9	99.1	93.1	94.1	95.6	78.2	90.9
대전	310	99.4	100.0	99.4	98.4	89.4	92.9	99.7	99.0	98.1	95.2	89.7	96.5
울산	246	97.2	100.0	98.8	96.3	96.3	95.1	100.0	92.3	99.6	98.4	94.7	97.2
세종	88	97.7	98.9	97.7	95.5	84.1	97.7	100.0	92.0	98.9	97.7	89.8	95.5
경기	2,435	95.7	97.9	95.6	92.4	85.7	86.1	97.2	89.8	89.5	84.5	82.9	90.7
강원	673	96.6	96.4	95.8	91.8	89.5	73.4	93.3	77.3	92.0	88.7	85.0	89.1
충북	498	97.8	97.4	97.0	94.4	95.0	79.7	97.4	91.4	92.8	87.6	83.3	92.2
충남	734	96.9	96.7	96.6	93.3	78.5	71.5	97.7	90.6	92.9	90.2	76.6	89.2
전북	776	92.8	97.2	93.7	87.1	80.3	62.8	93.8	92.3	89.3	88.9	84.4	87.5
전남	878	90.0	92.9	90.1	88.2	87.1	49.9	91.5	87.8	88.6	85.5	75.5	84.3
경북	986	94.9	97.5	95.7	91.6	93.9	84.0	92.5	91.9	93.0	92.3	86.8	92.2
경남	993	96.8	97.6	96.1	92.3	95.4	76.8	97.9	95.6	96.7	94.4	90.1	93.6
제주	196	100.0	99.0	99.5	100.0	98.0	98.0	100.0	96.9	98.5	91.8	99.0	98.2
계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96.3**	**90.7**	**90.0**	**85.5**	**81.9**	**90.0**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2.9%, 사립 학교는 84.5%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26〉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단위 :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322	96.8	97.9	96.5	93.0	88.4	97.9	97.0	91.7	91.5	87.2	83.4	92.9
사립	1,795	88.6	95.3	88.5	84.1	69.7	95.3	92.3	85.3	81.0	75.8	73.3	84.5
계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96.3**	**90.7**	**90.0**	**85.5**	**81.9**	**90.0**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0.8%, 중학교 89.4%, 고등학교 88.4%, 특수학교 98.6%, 각종 학교 75.4%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27〉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단위 :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247	96.2	97.0	95.6	92.5	88.4	81.3	96.1	92.0	91.0	86.6	82.6	90.8
중학교	3,232	95.5	98.2	95.5	91.0	84.3	77.7	96.6	89.4	89.3	85.0	80.5	89.4
고등학교	2,389	94.3	98.5	94.5	90.2	79.5	78.1	96.5	89.0	87.9	83.0	81.3	88.4
특수학교	175	98.9	98.9	99.4	100.0	99.4	97.1	98.9	98.9	97.1	98.3	98.3	98.6
각종학교	74	90.5	78.4	83.8	82.4	77.0	62.2	87.8	71.6	75.7	56.8	63.5	75.4
계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96.3**	**90.7**	**90.0**	**85.5**	**81.9**	**90.0**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평균 94.1%, 미설치 학교는 평균 83.8%의 설치율을 보임

〈표 3·28〉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단위 :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7,307	98.4	99.4	98.3	95.0	91.1	90.4	99.2	93.5	94.1	89.1	86.2	94.1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4,810	91.4	94.7	90.9	86.6	77.4	63.7	91.9	86.5	83.7	80.0	75.4	83.8
계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96.3**	**90.7**	**90.0**	**85.5**	**81.9**	**90.0**

- 2018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75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8.6%임

〈표 3 · 29〉 특수학교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8)

(단위 : 교, %)

시·도	특수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파난설비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30	29	96.7	29	96.7	29	96.7	30	100.0	29	96.7	29	96.7	29	96.7	29	96.7	29	96.7	29	96.7	30	100.0	97.3
부산	15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4	93.3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99.4
대구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인천	9	8	88.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9.0
광주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3	60.0	5	100.0	5	100.0	96.4
대전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100.0
울산	4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100.0
세종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00.0
경기	35	35	100.0	34	97.1	35	100.0	35	100.0	35	100.0	34	97.1	34	97.1	34	97.1	34	97.1	35	100.0	35	100.0	98.7
강원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6	85.7	6	85.7	6	85.7	96.1
충북	1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0.0
충남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100.0
전북	1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9	9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99.1
전남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7	87.5	8	100.0	8	100.0	8	100.0	8	100.0	7	87.5	97.7
경북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7	87.5	7	87.5	97.7
경남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제주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100.0
계	175	173	98.9	173	98.9	174	99.4	175	100.0	174	99.4	170	97.1	173	98.9	173	98.9	170	97.1	172	98.3	172	98.3	98.6

※ 단순 설치율 현황

향후 과제

- 특수 ·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 · 관리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현재 유치원 525명, 초등학교 717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153명 총 1,742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 · 3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 명)

시 ·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0	32	12	16	110
부산	55	10	12	3	80
대구	2	10	11	1	24
인천	27	7	5	1	40
광주	16	7	4	1	28
대전	9	4	6	1	20
울산	22	20	2	3	47
세종	3	3	4	1	11
경기	32	77	28	8	145
강원	12	49	29	14	104
충북	25	57	16	11	109
충남	42	78	29	6	155
전북	37	57	39	7	140
전남	28	74	36	15	153
경북	55	78	49	26	208
경남	80	114	57	32	283
제주	30	40	8	7	85
계	**525**	**717**	**347**	**153**	**1,742**

■ 향후 과제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운영 등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 · 중등교육법 제59조)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 교사 45,102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 · 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다운학교' 7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연구학교는 15개교임

〈표 3 · 31〉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 명)

시 · 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1~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
서울	1,914	268	566	889	3,637
부산	1,095	83	367	2,106	3,651
대구	330	48	475	1,944	2,797
인천	582	63	228	2556	3,429
광주	351	43	229	971	1,594
대전	22	17	106	1,446	1,591
울산	173	61	168	1,152	1,554
세종	93	13	45	152	303
경기	2971	402	1162	5125	9,660
강원	441	111	251	261	1,064
충북	385	69	191	1,174	1,819
충남	1,500	220	394	674	2,788
전북	499	80	322	523	1,424
전남	987	127	781	298	2,193
경북	835	192	449	1,179	2,655
경남	1,738	139	574	1,716	4,167
제주	362	48	110	256	776
계	**14,278**	**1,984**	**6,418**	**22,422**	**45,102**

※ 2018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 · 32〉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 교)

시 · 도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	8	3	-	11
부산	-	4(2)	-	-	4
대구	2	12(2)	6	-	20
인천	-	1(1)	-	-	1
광주	-	2(2)	-	-	2
대전	-	1(1)	-	-	1
울산	-	1(1)	-	-	1
세종	-	4	2	-	6
경기	-	-	-	-	-
강원	-	3	1	-	4
충북	-	1(1)	-	-	1
충남	-	-	1(1)	-	1
전북	-	5	1	2	8
전남	-	1(1)	-	-	1
경북	-	4(1)	1	1	6
경남	-	1(1)	1(1)	-	2
제주	1	2	2	-	5
계	**3**	**50(13)**	**18(2)**	**3**	**74**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연구학교 수임

향후 과제

-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대
-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및 장애 · 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19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는 860명의 교사, 일반직 74명, 치료사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기타인력 527명으로 모두 1,461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은 약 960억 원임

〈표 3 · 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 계약직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료사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서울	13	46	28	74	-	-	-	-	-	40	40	114	9,331
부산	6	32	4	36	7	1	8	-	1	3	4	48	4,357
대구	5	23	43	66	1	-	1	-	11	1	12	79	5,682
인천	6	29	2	31	-	-	-	6	3	8	17	48	2,436
광주	3	17	1	18	1	6	7	-	3	4	7	32	1,721
대전	5	20	12	32	2	2	4	3	-	3	6	42	3,673
울산	3	18	1	19	2	-	2	39	-	5	44	65	5,291
세종	1	6	-	6	-	-	-	6	-	-	6	12	1,584
경기	25	78	35	113	-	26	26	48	2	37	87	226	13,274
강원	18	40	4	44	-	-	-	35	9	3	47	91	3,209
충북	11	32	31	63	3	1	4	13	2	14	29	96	5,618
충남	15	37	26	63	3	-	3	42	4	16	62	128	8,583
전북	15	34	28	62	3	1	4	12	2	19	33	99	9,244
전남	23	56	23	79	-	-	-	26	2	1	29	108	6,408
경북	24	37	31	68	-	1	1	11	-	9	20	89	5,742
경남	22	61	11	72	6	8	14	74	-	7	81	167	8,721
제주	3	11	3	14	-	-	-	3	-	-	3	17	1,193
계	**198**	**577**	**283**	**860**	**28**	**46**	**74**	**318**	**39**	**170**	**527**	**1,461**	**96,067**

※ 정규교사에 파견교사 27명 포함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30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7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34〉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시 · 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233	5	지체중복(1), 시각(2), 청각(2)
부산	6	56	4	지체(1), 발달(1), 시각(1), 청각(1)
대구	5	110	2	시각(1), 청각(1)
인천	6	66	4	청각(1), 자폐성(1), 시각(1), 건강(1)
광주	2	61	1	시 · 청각(1)
대전	3	26	1	시 · 청각(1)
울산	3	33	2	시각(1), 청각 · 지체(1)
세종	1	14	-	-
경기	15	128	4	시각(1), 지체중복(1), 청각(1), 시 · 청각(1)
강원	7	59	2	시각(1), 청각(1)
충북	3	78	3	시각(2), 청각(1)
충남	2	40	1	시 · 청각(1)
전북	1	34	4	청각(1), 지체(1), 자폐성(1), 시각(1)
전남	22	201	3	시 · 청각(3)
경북	23	173	4	시 · 청각(4)
경남	18	110	5	시 · 청각(3), 자폐성(1), 시 · 청각 · 자폐성(1)
제주	2	18	2	시 · 청각(2)
계	**130**	**1,440**	**47**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및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 ·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4월 현재 특수학교 284개 순회·파견학급에서 290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981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651명, 시설 271명, 병원 59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84명, 초등학교 338명, 중학교 193명, 고등학교 266명임
- 2019년 4월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 270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302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02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88명, 시설 439명, 병원 13명, 일반학교 62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 61명, 초등학교 385명, 중학교 279명, 고등학교 277명임

〈표 3·35〉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수	교사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651	271	59	-	981	184	338	193	266	981	284	290

〈표 3 · 36〉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수	교사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488	439	13	62	1,002	61	385	279	277	1,002	270	302

- 2019년 4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72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2,140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338명, 시설 123명, 병원 8명, 일반학교 1,671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662명, 초등학교 822명, 중학교 433명, 고등학교 223명임

〈표 3 · 37〉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338	123	8	1,671	2,140	662	822	433	223	2,140	772*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236명 포함

향후 과제

- 가정 · 병원 ·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 순회교육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인력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 학습보조기기지원 ·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현재 47,514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 · 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 38〉 치료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9,719	11,304,072
부산	3,578	5,014,080
대구	4,599	5,810,688
인천	3,081	3,193,100
광주	2,290	3,095,040
대전	1,424	1,530,431
울산	1,020	1,941,851
세종	454	633,294
경기	2,748	4,909,360
강원	2,174	1,252,790
충북	3,010	3,968,414
충남	2,528	3,430,841
전북	2,992	4,140,852
전남	1,338	3,232,550
경북	3,581	5,193,617
경남	2,055	4,256,554
제주	923	1,216,800
계	**47,514**	**64,124,334**

-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019년 4월 현재 국고 · 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포함 모두 12,707명이 배치되어 있음
- 국고 · 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8,231명으로 특수학교 2,685명, 특수학급 5,390명, 일반학급에 156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 및 무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4,476명이 배치됨

〈표 3 · 39〉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단위 : 명)

시 · 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복무 · 무급	소계	유급				사회복무 · 무급	소계	유급				사회복무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서울	305	-	5	310	536	846	692	37	-	729	448	1,177	5	-	-	5	11	16	2,039
부산	302	-	-	302	55	357	305	15	-	320	35	355	1	-	-	1	-	1	713
대구	220	-	-	220	54	274	298	-	-	298	121	419	3	-	-	3	-	3	696
인천	196	-	2	198	19	217	413	5	7	425	42	467	1	-	-	1	-	1	685
광주	77	-	-	77	58	135	158	7	-	165	71	236	-	-	-	0	-	0	371
대전	160	-	-	160	45	205	317	5	-	322	117	439	-	-	-	0	-	0	644
울산	114	-	-	114	133	247	183	-	-	183	137	320	-	-	-	0	2	2	569
세종	23	-	-	23	-	23	59	-	-	59	-	59	-	-	-	0	-	0	82
경기	288	-	-	288	401	689	827	-	1	828	729	1,557	20	-	-	20	3	23	2,269
강원	62	-	-	62	51	113	224	-	-	224	4	228	25	-	-	25	-	25	366
충북	230	-	-	230	25	255	316	-	-	316	37	353	16	-	-	16	1	17	625
충남	128	6	-	134	92	226	316	-	5	321	39	360	4	-	2	6	-	6	592
전북	148	-	-	148	19	167	239	-	-	239	22	261	11	-	-	11	9	20	448
전남	78	-	-	78	84	162	175	3	14	192	124	316	35	-	-	35	7	42	520
경북	103	-	-	103	144	247	326	2	-	328	149	477	26	-	-	26	12	38	762
경남	186	-	-	186	105	291	351	-	-	351	312	663	2	-	-	2	16	18	972
제주	52	-	-	52	63	115	90	-	-	90	106	196	5	-	-	5	38	43	354
계	**2,672**	**6**	**7**	**2,685**	**1,884**	**4,569**	**5,289**	**74**	**27**	**5,390**	**2,493**	**7,883**	**154**	**0**	**2**	**156**	**99**	**255**	**12,707**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459명 중 통학버스 이용 학생 16,094명을 제외한 10,365명 중 10,848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6,499명 중 통학버스 이용 학생 2,834명을 제외한 63,665명 중 30,044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299억원임

〈표 3 · 40〉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서울	4,497	2,399	194	610	818	525	8,282	-	-	-	2,250	788
부산	1,802	1,202	-	278	340	158	4,248	-	-	516	388	245
대구	1,602	826	-	330	424	1,617	3,272	66	-	304	797	538
인천	1,538	887	30	69	271	1,626	4,470	207	58	41	682	784
광주	1,026	679	4	125	189	233	1,845	-	63	223	532	602
대전	1,036	591	15	52	125	944	2,221	-	116	156	333	497
울산	812	518	-	109	240	189	1,767	11	67	260	508	446
세종	145	109	2	5	9	10	438	48	4	10	38	39
경기	4,939	2,928	89	1,037	1,797	5,227	16,863	10	1,502	4,401	5,021	3,493
강원	855	621	7	48	79	122	2,032	345	54	663	772	853
충북	1,276	807	19	199	364	388	2,705	279	109	695	882	874
충남	1,077	870	40	63	94	2,323	3,546	426	93	164	675	417
전북	1,135	843	7	73	150	115	2,561	154	27	330	663	510
전남	1,119	666	2	75	224	310	2,719	375	74	521	973	1,006
경북	1,496	844	19	335	739	845	3,480	415	62	1,399	1,468	1,302
경남	1,626	1,032	36	330	601	1,193	4,992	495	112	537	1,043	1,013
제주	478	272	-	113	69	323	1,058	3	29	264	165	364
계	**26,459**	**16,094**	**464**	**3,851**	**6,533**	**16,148**	**66,499**	**2,834**	**2,370**	**10,484**	**17,190**	**13,771**

- 2019년 6월 현재 전국 177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706대를 운영하며 26,084명의 재학생 중 16,094명(61.7%)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 · 41〉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 명, 대, %)

시 · 도	전체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비율
서울	4,362	102	2,399	55.0
부산	1,802	52	1,202	66.7
대구	1,591	39	826	51.9
인천	1,535	34	887	57.8
광주	1,026	35	679	66.2
대전	1,023	26	591	57.8
울산	804	26	518	64.4
세종	145	5	109	75.2
경기	4,862	139	2,928	60.2
강원	844	26	621	73.6
충북	1,264	34	807	63.8
충남	1,067	35	870	81.5
전북	1,135	47	843	74.3
전남	1,110	25	666	60.0
경북	1,460	34	844	57.8
경남	1,605	36	1,032	64.3
제주	449	11	272	60.6
계	**26,084**	**706**	**16,094**	**61.7**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자(학교장) 및 운전자 846명이 안전교육을 이수(예정 포함)

〈표 3 · 42〉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 교, 대, 명)

시 · 도	특수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보조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0	102	3	16	83	68	34	26	101	101
부산	15	52	-	16	36	52	-	15	52	52
대구	9	39	-	12	27	10	29	9	39	39
인천	9	34	1	7	26	9	25	9	34	33
광주	5	35	1	9	25	9	26	5	34	34
대전	5	26	3	1	22	13	13	5	25	43
울산	4	26	1	8	17	17	9	4	26	33
세종	1	5	-	-	5	4	1	1	5	5
경기	36	139	7	44	88	87	52	32	125	134
강원	7	26	0	7	19	21	5	5	22	20
충북	10	34	2	9	23	25	9	10	30	45
충남	7	35	-	10	25	16	19	7	35	35
전북	10	47	4	23	20	27	20	10	47	47
전남	8	25	-	4	21	19	6	8	25	25
경북	8	34	2	10	22	28	6	7	34	34
경남	10	36	-	10	26	25	11	9	36	36
제주	3	11	-	3	8	9	2	3	11	29
계	**177**	**706**	**24**	**189**	**493**	**439**	**267**	**165**	**681**	**745**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6,459명 중 25,910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66,499명 중 65,058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689억원임

〈표 3 · 43〉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 · 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 · 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 · 고등 학교	
서울	4,497	4,362	5,953	5,953	5,953	5,063	8,282	8,282	4,648	4,648	5,406	8,044
부산	1,802	1,802	3,500	3,500	3,500	1,179	4,248	4,248	3,360	2,960	3,835	2,643
대구	1,602	1,527	5,636	5,636	5,636	1,448	3,272	3,272	4,466	4,466	5,693	2,901
인천	1,538	1,501	4,000	4,000	4,000	1,140	4,470	4,470	3,200	3,140	3,900	2,967
광주	1,026	968	7,182	7,182	7,182	1,343	1,845	1,731	4,419	4,419	5,214	1,571
대전	1,036	1,023	2,700	2,700	2,700	725	2,221	2,221	3,150	3,150	4,000	1,468
울산	812	812	3,825	3,825	3,825	508	1,767	1,767	2,975	3,315	3,880	988
세종	145	145	5,170	5,170	5,170	142	438	438	3,150	4,620	5,170	379
경기	4,939	4,939	3,190	3,192	3,860	2,790	16,863	16,863	3,093	3,290	4,435	11,951
강원	855	844	3,510	3,510	3,510	528	2,032	2,032	1,770	2,450	5,910	994
충북	1,276	1,237	7,443	7,443	7,443	1,703	2,705	2,130	1,200	4,365	5,650	1,787
충남	1,077	1,067	2,220	3,100	4,320	777	3,546	3,546	1,820	2,850	4,280	2,145
전북	1,135	1,077	3,100	3,100	3,100	631	2,561	2,561	2,400	2,600	3,300	1,389
전남	1,119	1,110	6,140	6,140	6,140	1,294	2,719	2,719	5,150	5,150	5,980	2,839
경북	1,496	1,460	3,200	3,200	3,200	887	3,480	3,480	2,800	2,800	3,400	2,024
경남	1,626	1,587	3,130	3,130	3,740	1,110	4,992	4,240	-	2,663	3,287	2,325
제주	478	449	5,019	5,019	5,019	419	1,058	1,058	4,354	4,354	4,642	884
계*	**26,459**	**25,910***	**74,918**	**75,800**	**78,298**	**21,687**	**66,499**	**65,058**	**51,955**	**61,240**	**77,982**	**47,299**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375명) 등은 미포함

■ 향후 과제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적합한 지원 영역, 치료지원 적정단가 산출 등 효율적 제공 방법 강구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지원 추진
- 치료지원을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4월 현재 건강장애 학생은 1,763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19년 36개교로, 49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 학생 수는 661명임

〈표 3 · 44〉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시 · 도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9)	국립정신건강센터	17	특수교사 3
	고려대학교구로병원학교	20	사회복지사 1
	삼성서울병원학교	50	일반교사 1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학교	36	평생교육사 1, 일반교사 1
	서울아산병원학교	24	사회복지사 1
	서울성모병원학교	34	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학교	60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원자력병원학교	15	간호사 1, 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학교	5	간호사 1
부산(4)	부산대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동아대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13	특수교사 1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구(4)	영남대학교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대동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경북대학교병원학교	12	특수교사 1
	계명대학교동산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광주(1)	학마을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울산(1)	울산대학교병원학교	12	특수교사 3
경기(3)	국립암센터	10	특수교사 2
	화성제일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파주시티요양병원학교	4	특수교사 2
강원(2)	강원대학교병원학교	140	특수교사 1
	강릉아산병원학교	30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학교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충남(3)	국립공주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아람메디컬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병원학교	14	특수교사 1
전남(2)	느티나무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여미사랑병원학교	13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병원어린이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학교	46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계	36	661	49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5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은 1,362명이고, 월 평균 이용 학생 수는 1,885명임

〈표 3 · 45〉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단위 : 학급, 명, 일)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건강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	14	14	155	52	207	202	54
인천사이버학교(인천광역시교육청)	6	6	37	5	42	39	18
꿈빛나래학교(충청남도교육청)	6	28	23	4	27	28	21
꿈사랑학교(경상남도교육청)	42	31	833	287	1,120	1,053	84
한국교육개발원	24	9	314	319	633	563	75
계	**92**	**88**	**1,362**	**667**	**2,029**	**1,885**	**252**

향후 과제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초등학교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건강장애 학생 소속 학교와 연계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7)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 강화

관련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786개 기관과 연계하여 1,444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6,46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461개 기관과 연계하여 8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25,0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 · 46〉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현황

(단위 : 기관, 개, 명)

시 · 도 교육청	문화예술			체육		
	연계 기관 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연계 기관 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서울	53	154	2,566	43	56	965
부산	121	359	6,538	72	201	2,712
대구	126	234	3,103	78	119	4,360
인천	50	54	2,255	27	24	1,736
광주	7	42	1,182	7	29	1,803
대전	38	42	3,915	14	18	2,011
울산	19	34	1,026	10	51	315
세종	10	10	311	12	11	161
경기	39	39	3,211	2	62	3,205
강원	66	49	1,189	17	19	279
충북	21	50	1,899	10	18	744
충남	32	147	2,469	15	63	989
전북	24	32	2,845	24	24	2,845
전남	98	70	1,170	57	60	1,197
경북	65	92	1,892	71	68	1,409
경남	14	32	637	1	10	272
제주	3	4	253	1	1	10
계	786	1,444	36,461	461	834	25,013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 맞춤형 체육활동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건강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도입 · 정착 필요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및 발전

■ 관련 법규

-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함(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현황 및 추진실적

- ´19년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 (166교)에서 자유학기(년)제 및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한 학기)는 77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두 학기)는 87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는 2교에서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수는 915명,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 수는 1,034명으로 총 1,94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 프로그램 6,496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체험활동 1,363회(누적수)를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 · 도교육청 교사연구회가 177개 조직 · 운영되고 있으며 2,781명 연수 이수함

〈표 3 · 47〉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 지원 현황

※ 기준일 : 2019.6.1. (단위 : 교, 명, 개)

시·도	중학교과정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체험처 확보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문성 향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꿈길에 등록된 체험처	진로체험 활동 결과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수 이수 인원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26	22	302	3	21	395	110	25	712
부산	13	1	1	12	127	733	105	15	93
대구	9	7	78	2	22	398	144	1	79
인천	8	4	23	4	77	216	31	9	62
광주	5	4	100	-	-	357	55	3	62
대전	5	3	26	2	28	193	30	5	111
울산	4	2	16	2	32	835	118	2	206
세종	1	1	31	-	-	45	59	4	27
경기	33	-	-	33	343	773	70	33	727
강원	7	4	20	3	23	224	19	9	10
충북	10	4	48	6	44	321	120	9	138
충남	7	-	-	7	156	430	101	12	143
전북	9	6	52	3	31	297	98	9	51
전남	8	7	72	1	13	523	176	10	38
경북	8	5	46	3	37	308	68	18	203
경남	10	4	66	6	80	389	49	7	96
제주	3	3	34	-	-	59	10	6	23
계	**166**	**77**	**915**	**87**	**1,034**	**6,496**	**1,363**	**177**	**2,781**

※ '19학년도 서울(1교), 광주(1교)는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여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현황에 미포함

향후 과제

- 특수학교의 여건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유학년제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추진
-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혁신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 협의체 운영 활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강화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 내실화 지원

※ 교육부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25개 운영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학교기업 2개교, 부산광역교육청 1개교, 대구광역시교육청 1개교, 충청북도교육청 1개교, 경상북도교육청 1개교는 시 · 도교육청 지정으로 운영

〈표 3 · 48〉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 · 청각 · 지체 · 지적장애 ·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제과제빵, 세탁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예술, 스포츠 등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천연비누,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 · 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조명장치,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콩나물,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비누, 도자기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공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즙, 공예, 자동차 부품제조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공예, 건설 · 기계 재활용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허브재배, 천연비누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보안문서파쇄, 운동화세탁,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 · 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대구성보학교*	대구	공립	지체장애	문화 예술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재배 · 원예, 도자기, 비누,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9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및 체험학습
	청주성신학교*	충북	사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19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 · 도교육청 지정 14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49〉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시 · 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관악고			3(3)
부산	동래원예고*		부산 전자공업고								1
대구	대구서부공고					대구자연 과학고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3
광주	광주전자공고										1
대전		동대전고									1
울산											-
경기	성남방송고 이천제일고	안양공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 정보과학고			(오산정보고)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고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서산중앙고)		6(6)
전북					(이리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진안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함열고)**	이리고				1
전남	목포공고		전남 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김천생명과학고						(구미인동고)			1(1)
경남		이림고 김해생명과학고									2
제주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제주중앙 여고)**					2(1)
계	9	10(2)	8	(5)	(2)	3(2)	3	2(2)	(1)	-	35(14)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관

** 시 · 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로 한시적 운영

※ ( )안의 학교는 시 · 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33교 운영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 및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도모

〈표 3 · 50〉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지정연도	운영 학교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
2017	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2018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2019	광주선명학교, 울산태연학교, 세종누리학교, 한길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공주정명학교, 나사렛새꿈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목포인성학교, 경남은광학교

-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 개최 및 원스톱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확대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 설명회, 대학 내 및 지역사회 중심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 추진

- 2019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44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4명으로 취업률은 5.9%임

〈표 3 · 51〉 2019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11	314	-	5	-	-	-	-	-	-	5	1	3	-	3	17	17.5
부산	166	60	2	1	-	-	-	-	-	1	1	-	-	-	-	5	4.7
대구	167	75	-	8	-	-	-	-	-	1	-	1	-	-	-	10	10.9
인천	128	56	-	4	-	-	-	-	-	-	-	-	-	-	2	6	8.3
광주	120	33	-	-	-	-	-	2	-	-	1	-	-	-	-	3	3.4
대전	101	68	-	-	-	-	-	-	-	-	-	-	-	-	-	-	-
울산	51	33	-	-	-	-	-	-	-	-	-	-	-	-	-	-	-
세종	4	4	-	-	-	-	-	-	-	-	-	-	-	-	-	-	-
경기	378	124	-	3	-	-	1	-	-	2	2	-	-	-	1	9	3.5
강원	104	63	-	-	-	-	-	-	-	1	4	-	-	-	1	6	14.6
충북	122	102	-	-	-	-	-	-	-	-	-	-	-	-	-	-	-
충남	88	73	-	-	-	-	-	-	-	-	-	-	-	-	-	-	-
전북	131	64	-	-	-	-	1	-	-	-	-	-	-	-	-	1	1.5
전남	129	46	-	-	-	-	-	2	-	-	-	-	-	-	4	6	7.2
경북	137	99	-	-	-	-	-	-	-	-	-	-	-	-	-	-	-
경남	161	132	-	-	-	-	-	-	-	-	-	-	-	-	-	-	-
제주	49	18	-	-	-	-	-	-	-	1	-	-	-	-	-	1	3.2
계	**2,447**	**1,364**	**2**	**21**	**-**	**-**	**2**	**4**	**-**	**6**	**13**	**2**	**3**	**-**	**11**	**64**	**5.9**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9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18명으로 취업률은 32.0%임

〈표 3 · 52〉 2019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542	64	5	37	1	1	4	-	4	20	65	4	18	7	25	191	40.0
부산	216	109	8	2	-	-	2	-	1	3	1	-	4	1	12	34	31.8
대구	167	138	-	-	-	-	-	-	-	-	-	-	-	-	-	-	-
인천	215	106	2	5	-	-	1	-	-	4	4	-	2	1	6	25	22.9
광주	124	69	1	3	-	-	-	-	-	2	-	-	1	-	1	8	14.5
대전	124	71	4	1	-	-	-	-	-	3	-	1	-	-	1	10	18.9
울산	89	73	-	-	-	-	-	-	-	1	-	1	-	-	-	2	12.5
세종	14	8	-	2	-	-	-	-	-	-	1	-	-	-	-	3	50.0
경기	1,106	448	4	74	-	1	5	-	1	20	42	-	36	5	17	205	31.2
강원	86	41	-	1	-	-	1	-	-	1	7	-	1	1	2	14	31.1
충북	178	63	2	6	-	1	-	-	-	20	3	-	7	2	4	45	39.1
충남	225	93	-	5	-	-	3	-	1	8	5	-	12	3	13	50	37.9
전북	115	57	1	2	1	-	1	-	-	1	2	-	-	1	5	14	24.1
전남	202	97	-	6	-	-	3	-	1	4	6	-	-	-	2	22	21.0
경북	204	114	-	4	-	-	2	-	-	1	1	-	8	3	5	24	26.7
경남	291	127	6	24	-	-	6	-	1	6	4	-	8	-	8	63	38.4
제주	54	29	-	1	1	-	1	-	-	1	4	-	-	-	-	8	32.0
계	**3,952**	**1,707**	**33**	**173**	**3**	**3**	**29**	**-**	**9**	**95**	**145**	**6**	**97**	**24**	**101**	**718**	**32.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9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32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9명으로 취업률은 11.8%임

〈표 3 · 53〉 2019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08	102	-	3	-	1	2	-	-	1	2	1	1	-	3	14	13.2
부산	77	42	-	3	-	-	-	-	-	-	-	-	-	-	1	4	11.4
대구	113	68	-	6	-	-	2	-	-	-	-	-	-	-	1	9	20.0
인천	89	45	-	1	-	-	2	-	-	-	-	1	-	-	-	4	9.1
광주	49	32	-	-	-	-	-	-	-	-	-	-	-	-	1	1	5.9
대전	53	37	-	-	-	-	1	-	-	1	1	-	-	-	-	3	18.8
울산	53	30	-	1	-	-	-	-	-	-	-	-	-	-	2	3	13.0
세종	3	3	-	-	-	-	-	-	-	-	-	-	-	-	-	-	-
경기	247	134	-	2	-	1	-	-	-	-	-	-	1	-	2	6	5.3
강원	35	17	-	-	-	-	-	-	-	-	1	-	-	-	-	1	5.6
충북	78	40	-	-	-	-	-	-	-	1	-	-	1	-	2	4	10.5
충남	36	17	-	1	-	-	-	-	-	2	-	-	1	-	2	6	31.6
전북	50	25	1	-	-	1	1	-	-	-	-	-	3	-	-	6	24.0
전남	13	4	-	-	-	-	-	-	-	-	-	-	-	-	-	-	-
경북	77	49	-	-	-	-	-	-	1	-	-	2	-	-	1	4	14.3
경남	120	77	-	2	-	-	-	-	-	-	-	-	-	-	1	3	7.0
제주	27	19	-	-	-	-	-	-	-	1	-	-	-	-	-	1	12.5
계	**1,328**	**741**	**1**	**19**	**-**	**3**	**8**	**-**	**1**	**6**	**4**	**4**	**7**	**-**	**16**	**69**	**11.8**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19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131명 중 922명 취업으로 취업률은 43.7%임

〈표 3 · 54〉 2019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48	7	-	21	-	1	3	22	-	2	2	1	1	-	5	58	23.7
부산	106	-	2	26	-	-	-	5	-	3	7	-	2	-	8	53	50.0
대구	142	1	7	40	-	-	6	7	-	12	9	-	2	-	22	105	74.3
인천	102	1	3	15	-	-	2	3	3	9	26	-	2	2	4	69	68.3
광주	72	-	-	10	-	-	-	6	-	1	8	-	-	-	3	28	38.9
대전	132	1	-	1	-	-	-	12	7	3	10	1	1	-	2	37	28.2
울산	97	-	-	12	-	-	2	-	6	12	2	-	1	1	5	41	42.3
세종	6	-	-	-	-	-	-	-	-	-	-	-	-	-	-	-	-
경기	343	3	8	61	1	-	9	-	4	13	43	3	8	2	25	177	51.7
강원	116	4	-	8	-	-	1	4	3	5	11	-	6	-	9	47	41.8
충북	115	3	1	9	-	-	4	3	-	9	-	-	5	-	5	36	32.0
충남	121	-	1	21	-	-	1	-	-	9	8	2	9	1	5	57	47.1
전북	80	-	-	2	-	-	1	2	-	15	4	-	4	1	7	36	45.0
전남	89	3	7	1	1	1	6	3	-	7	11	-	-	-	8	45	52.6
경북	186	-	6	34	-	-	2	-	1	13	8	-	9	2	12	87	46.8
경남	149	-	4	4	-	-	1	-	-	6	2	-	4	1	2	24	16.1
제주	27	-	-	11	-	-	-	-	-	2	2	-	6	-	1	22	81.5
계	**2,131**	**23**	**39**	**276**	**2**	**2**	**38**	**67**	**24**	**121**	**153**	**7**	**60**	**10**	**123**	**922**	**43.7**

※ 취업률 = {취업자 수 / (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일반학교 전공과 이수자 103명 및 취업자 수 82명 포함

- 2019년 전국 147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641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5,159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19년 대구, 인천, 경기, 충북일반학교 18개교에 전공과 33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223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 · 55〉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47	641	5,159
일반학교	18	33	223
계	**165**	**674**	**5,382**

향후 과제

-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지원('20.3.1.)을 통해 특수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
- 문화 · 예술 ·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직업인으로 양성 · 지원하는 기회 확대
-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해 학령기와 학령기 이후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도모 및 효과성 확대
-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 도모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강화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 · 보급,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지원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 지원 강화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7,727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5.7%, 특수학급 졸업생은 43.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55.8%이며 전체 진학률은 49.3%임

〈표 3 · 56〉 2019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서울	411	542	208	1,161	282	12	4	7	18	26	25	34	72	314	64	102	480	41.3
부산	166	216	77	459	54	52	1	1	34	10	5	23	31	60	109	42	211	46.0
대구	167	167	113	447	68	105	1	1	19	35	6	14	32	75	138	68	281	62.9
인천	128	215	89	432	54	85	2	-	12	15	2	9	28	56	106	45	207	47.9
광주	120	124	49	293	15	53	1	5	8	7	13	8	24	33	69	32	134	45.7
대전	101	124	53	278	66	59	1	-	4	6	2	8	30	68	71	37	176	63.3
울산	51	89	53	193	32	59	5	1	9	6	-	5	19	33	73	30	136	70.5
세종	4	14	3	21	4	8	1	-	-	-	-	-	2	4	8	3	15	71.4
경기	378	1,106	247	1,731	116	335	5	6	52	36	2	61	93	124	448	134	706	40.8
강원	104	86	35	225	59	30	3	-	9	5	4	2	9	63	41	17	121	53.8
충북	122	178	78	378	94	46	-	1	10	17	7	7	23	102	63	40	205	54.2
충남	88	225	36	349	73	79	1	-	6	3	-	8	13	73	93	17	183	52.4
전북	131	115	50	296	64	42	2	-	10	8	-	5	15	64	57	25	146	49.3
전남	129	202	13	344	46	61	1	-	25	1	-	11	2	46	97	4	147	42.7
경북	137	204	77	418	99	88	9	-	18	12	-	8	28	99	114	49	262	62.7
경남	161	291	120	572	132	59	2	-	49	25	-	19	50	132	127	77	336	58.7
제주	49	54	27	130	13	20	-	-	7	8	5	2	11	18	29	19	66	50.8
계	2,447	3,952	1,328	7,727	1,271	1,193	39	22	290	220	71	224	482	1,364	1,707	741	3,812	49.3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9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 대학은 전문대학 16개교와 4년제 대학교 71개교로 모두 87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16개교 50명, 대학 71개교 905명으로 총 955명임

〈표 3 · 57〉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7)	79	71(71)	439	80(78)	518
2008	8(7)	100	74(65)	460	82(72)	560
2009	10(10)	74	80(70)	498	90(80)	561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 출처 : 대학정보공시(2019. 7. 2.기준)

- 2019년 6월 현재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178개 대학에 2,725명을 배치하여 지원함

〈표 3 · 58〉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학교 수	도우미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도우미	대학(원)	167	-	-	2,213	2,213
	전문대학	60	-	-	296	296
	원격대학	3	-	-	59	59
	소계	**230**	**-**	**-**	**2,568**	**2,568**
전문 도우미	대학(원)	40	121	9	-	130
	전문대학	7	12	-	-	12
	원격대학	2	3	-	-	3
	소계	**49**	**136**	**9**	**-**	**145**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대학(원)	12	-	-	12	12
	전문대학	-				
	원격대학	-				
	소계	**12**				
계		**178(중복제외)**	**136**	**9**	**2,580**	**2,725**

※ 영역별 도우미 유형 : 일반도우미(학내이동 및 강의 등 대필지원),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에 의한 교수 · 학습지원), 원격교육전문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 내용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하여 현장 수요에 맞춘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 개선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내 활동 및 학습활동 지원 내실화 추진
-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고등교육 복지지원 중기방안' 수립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

현황 및 실적

-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2017년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2018년 4월 결과 공표
- 조사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 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대학의 서면조사, 현장방문조사, 종합평가의 3단계 과정으로 실시됨

〈표 3·5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영역(4년제 및 전문대학)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3	6
교수·학습 (50%)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5%) 2.4 학습지원(12%) 2.5 평가지원(2%) 2.6 장학지원(2%) 2.7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6%) 2.8 장애학생 교수·학습 만족도(1%)	5 5 3 6 1 1 4 5	30
시설·설비 (40%)	3.1매개시설(8%) 3.2내부시설(12%) 3.3위생시설(8%) 3.4안내 및 기타시설(3%) 3.5강의실(1%) 3.6도서관(1%) 3.7강당(1%) 3.8식당(1%) 3.9체육관(1%) 3.10 기숙사(1%) 3.11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 실적(2%) 3.12 장애학생 시설·설비 만족도(1%)	7 8 3 3 1 1 1 1 1 1 1 5	33
3개 영역	22개 부문	69개 항목	

〈표 3 · 6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영역(원격대학)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2	5
교수 · 학습 (63%)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 · 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4%) 2.4 학습지원(25%) 2.5 평가지원(3%) 2.6 장학지원(2%) 2.7 상담 · 진로 및 취업지원(5%) 2.8 장애학생 교수 · 학습 만족도(2%)	5 5 2 9 1 1 4 5	32
시설 · 설비 (27%)	3.1 매개시설(8%)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6%) 3.4 안내 및 기타시설(1%)	7 8 3 1	19
3개 영역	14개 부문	56개 항목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2018, 국립특수교육원)

향후 과제

- 2020년에는 교육환경 변화 및 대학유형을 고려하여 2018년에 개정한 지표로 대학유형별(4년제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9년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을 운영함
-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평생교육법 제9조)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 · 지자체 · 교육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현황 및 추진실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전국 61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에서 585명의 교사가 2,091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총 443개임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예산은 약 38억원

〈표 3 · 61〉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단위 : 명, 개, 백만원)

시 · 도	설립형태 및 기관 수	교사 수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지원예산
				문해	교양	직업	기타	계	
서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20	150	13	3	3	13	32	644
부산	민간단체 1	26	56	1	-	1	2	4	50
대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19	42	2	3	1	-	6	130
인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6	76	178	6	17	4	1	28	150
광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43	71	5	4	1	4	14	300
대전	법인 2, 민간단체 1	31	122	6	5	1	4	16	82
울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14	66	7	14	4	1	26	82
경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5	158	575	20	145	8	-	173	825
강원	법인 1, 민간단체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26	95	5	15	-	8	28	81
충북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민간단체 1	54	98	7	11	3	4	25	292
충남	법인 1	23	53	1	5	2	-	8	48
전북	법인 2, 민간단체 2	37	233	8	4	-	11	23	44
경북	법인 2	12	54	1	4	5	8	18	-
경남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0	26	162	25	-	-	-	25	980
제주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	20	136	5	5	-	7	17	70
계	61	585	2,091	112	235	33	63	443	3,778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47개의 기관에서 67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약 13억원임

〈표 3 · 6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시·도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예산	학교 수	프로그램 수	예산	센터 수	프로그램 수	예산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예산
서울	83	111	227.6	2	2	4	-	-	-	85	113	231.6
부산	12	67	194	-	-	-	-	-	-	12	67	194
대구	7	39	21.9	-	-	-	-	-	-	7	39	21.9
인천	11	32	32	2	4	3	1	1	12	14	37	47
광주	8	9	23	-	-	-	-	-	-	8	9	23
대전	19	47	163.1	-	-	-	-	-	-	19	47	163.1
울산	2	2	4.6	-	-	-	1	1	0.6	3	3	5.2
세종	1	4	-	-	-	-	-	-	-	1	4	-
경기	8	16	36	-	-	-	-	-	-	8	16	36
강원	5	39	134.4	-	-	-	-	-	-	5	39	134.4
충북	2	4	3.9	1	4	7	-	-	-	3	8	10.9
충남	11	146	117	1	2	1	-	-	-	12	148	118
전북	1	11	26	-	-	-	1	9	26	2	20	52
전남	21	59	92.5	-	-	-	-	-	-	21	59	92.5
경북	17	21	42.3	5	14	25	-	-	-	22	35	67.3
경남	21	27	48.9	-	-	-	-	-	-	21	27	48.9
제주	4	6	95	-	-	-	-	-	-	4	6	95
계	**233**	**640**	**1,262.2**	**11**	**26**	**40**	**3**	**11**	**38.6**	**247**	**677**	**1,340.8**

향후 과제

- 장애인 맞춤형 평생케어 로드맵 설계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20~'22) 수립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 제도 정비 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 현황 및 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유치원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 · 고등학교용, 대학교 및 공공기관용 콘텐츠(전자책, 동영상 등) 보급
-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을 송출하여 장애이해수업을 실시함
  - 2018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초·중·고 학교 수는 10,809교이고 실시 비율은 92.9%임

〈표 3 · 63〉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 · 도	전체 초 · 중등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실시 비율
서울	1,308	1,190	91.0
부산	622	621	99.8
대구	447	447	100.0
인천	508	482	94.9
광주	311	300	96.5
대전	298	257	86.2
울산	237	234	98.7
세종	87	73	83.9
경기	2,362	2,237	94.7
강원	631	536	84.9
충북	469	436	93.0
충남	713	688	96.5
전북	761	635	83.4
전남	819	744	90.8
경북	919	857	93.3
경남	956	884	92.5
제주	188	188	100.0
계	**11,636**	**10,809**	**92.9**

※ 2018. 12. 31. 기준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법규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관계부처 합동, '18. 12. 18.)'을 발표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및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함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201개, 2,383명 위원을 구성·운영함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18년에 일반학교·특수학교 4,176개교 현장지원을 실시함

〈표 3 · 6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 개, 명)

시 · 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58
부산	6	71
대구	5	81
인천	6	66
광주	3	41
대전	3	37
울산	3	43
세종	2	22
경기	32	387
강원	18	199
충북	11	150
충남	15	180
전북	15	175
전남	23	273
경북	24	254
경남	21	215
제주	3	31
계	**201**	**2,383**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 · 6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18)

(단위 :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205	215	306	430	418	458	410	263	361	412	380	318	**4,176**

- 2019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278개임
- 2019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6,019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84개임

〈표 3 · 66〉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 개)

시 ·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20	15	7	18	1	2	5	6	37	26	15	15	22	32	31	24	2	278

〈표 3 · 67〉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 개)

시 · 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1162	60
부산	505	29
대구	1,089	37
인천	511	18
광주	718	16
대전	231	19
울산	317	12
세종	271	10
경기	246	103
강원	25	25
충북	301	10
충남	300	11
전북	24	20
전남	50	43
경북	235	45
경남	25	17
제주	9	9
계	6,019	484

향후 과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유 · 초 · 중 · 고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상별(교직원, 학생 등)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정기현장지원 강화
-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권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 관련 연수 확대

3) 장애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 · 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 ·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 · 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현황 및 추진실적

- 2019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 · 배치 현황은 37,552명의 신청을 받아 34,198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하여 91.1%의 배치율을 보임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096	974	2,346	2,035	1,096	837	195	154	4,733	4,000	84.5
부산	544	530	1,171	1,096	1,189	866	-	-	2,904	2,492	85.8
대구	437	437	867	820	722	621	25	25	2,051	1,903	92.8
인천	413	411	1,297	1,225	685	631	14	14	2,409	2,281	94.7
광주	322	322	551	525	226	220	-	-	1,099	1,067	97.1
대전	232	232	554	512	208	179	25	25	1,019	948	93.0
울산	179	175	536	474	272	212	29	24	1,016	885	87.1
세종	69	67	215	200	53	48	-	-	337	315	93.5
경기	1,585	1,379	5,723	5,237	1,869	1,708	120	111	9,297	8,435	90.7
강원	186	186	630	611	301	248	11	11	1,128	1,056	93.6
충북	460	459	850	842	348	337	24	24	1,682	1,662	98.8
충남	266	263	1,235	1,134	167	131	18	14	1,686	1,542	91.5
전북	293	278	701	634	479	420	4	4	1,477	1,336	90.5
전남	255	255	1,014	945	182	173	9	9	1,460	1,382	94.7
경북	334	333	1,023	954	579	539	36	34	1,972	1,860	94.3
경남	408	408	1,513	1,373	713	636	52	49	2,686	2,466	91.8
제주	106	118	247	225	196	179	47	46	596	568	95.3
계	**7,185**	**6,827**	**20,473**	**18,842**	**9,285**	**7,985**	**609**	**544**	**37,552**	**34,198**	**91.1**
영아	172	169	-	-	-	-	609	544	781	713	91.3
유	809	761	2,928	2,602	2,165	1,734	-	-	5,902	5,097	86.4
초	2,105	1,912	9,933	8,951	3,905	3,315	-	-	15,943	14,178	88.9
중	1,996	1,902	4,224	3,965	1,779	1,603	-	-	7,999	7,470	93.4
고	2,103	2,083	3,388	3,324	1,436	1,333	-	-	6,927	6,740	97.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509명이며, 이 중 만 6세는 297명, 만 7세는 100명, 만 8세 이상은 112명으로 나타남

〈표 3 · 69〉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 명, %)

시 · 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만 6세		만 7세		만 8세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71	25	15	6	5	1	91	32
부산	32	6	7	1	7	2	46	9
대구	83	28	46	21	28	10	157	59
인천	3	2	-	-	6	1	9	3
광주	4	2	4	2	15	7	23	11
대전	1	-	-	-	2	1	3	1
울산	-	-	-	-	-	-	-	-
세종	7	1	-	-	-	-	7	1
경기	26	9	5	1	8	4	39	14
강원	9	4	4	3	2	1	15	8
충북	10	2	-	-	-	-	10	2
충남	4	1	1	-	2	-	7	1
전북	5	-	6	5	13	4	24	9
전남	1	-	1	-	8	-	10	-
경북	11	4	4	1	9	6	24	11
경남	30	10	6	4	7	4	43	18
제주	-	-	1	1	-	-	1	1
계	**297**	**94**	**100**	**45**	**112**	**41**	**509**	**180**

- 2019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5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3.4%로 나타남

〈표 3 · 70〉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 명, %)

시 · 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의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서울	6	4	50	31	-	-	91
부산	-	17	26	2	-	1	46
대구	-	35	80	41	1	-	157
인천	-	3	2	2	-	2	9
광주	-	9	7	6	-	1	23
대전	-	-	1	-	-	2	3
울산	-	-	-	-	-	-	-
세종	-	-	7	-	-	-	7
경기	-	7	15	14	-	3	39
강원	1	2	10	2	-	-	15
충북	-	-	9	-	-	1	10
충남	-	1	3	1	-	2	7
전북	-	13	5	2	-	4	24
전남	-	7	1	2	-	-	10
경북	-	5	5	14	-	-	24
경남	-	4	36	2	-	1	43
제주	-	1	-	-	-	-	1
계	**7 (1.4)**	**108 (21.2)**	**257 (50.5)**	**119 (23.4)**	**1 (0.2)**	**17 (3.3)**	**509**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26,084명 중 25,358명(97.2%), 특수학급 50,812명 중 32,947명(64.8%), 일반학급 15,687명 중 7,353명(46.9%),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375명 중 199명(53.1%)임

〈표 3 · 71〉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590	954	1,011	14	2,569
뇌병변장애	3,405	2,949	1,469	144	7,967
시각장애	1,182	242	382	3	1,809
청각장애	647	676	1,611	23	2,957
언어장애	150	1,133	363	2	1,648
지적장애	13,620	20,305	1,853	13	35,791
자폐성장애	5,667	6,576	578	-	12,821
정신장애	74	20	1	-	95
신장장애	-	7	16	-	23
심장장애	3	22	22	-	47
호흡기장애	2	3	8	-	13
간장애	-	9	13	-	22
안면장애	3	2	7	-	12
장루요루장애	-	3	10	-	13
뇌전증장애	15	46	9	-	70
계	25,358 (97.2)	32,947 (64.8)	7,353 (46.9)	199 (53.1)	65,857 (70.8)

-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92명의 운영위원이 1,653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함

〈표 3 · 7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회)

시 · 도	위원회 수	구 성 원									운영실적 (´18.6~´19.5)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2	42	1	38	2	12	-	5	112	144
부산	6	10	10	6	19	2	2	4	10	63	48
대구	5	8	7	4	12	2	5	-	4	42	62
인천	6	8	17	-	18	-	6	4	4	57	85
광주	3	4	2	3	14	2	4	-	2	31	8
대전	3	8	14	2	5	1	1	-	7	38	31
울산	3	3	8	-	10	1	2	-	7	31	41
세종	1	2	1	1	7	1	1	-	-	13	10
경기	26	48	71	4	41	8	24	8	22	226	313
강원	18	23	67	3	22	2	12	3	21	153	138
충북	11	12	20	5	27	9	11	8	13	105	118
충남	15	20	38	8	45	7	18	5	2	143	104
전북	15	29	48	3	25	7	16	6	9	143	111
전남	23	38	108	5	23	9	13	6	18	220	122
경북	24	37	58	7	42	16	25	7	21	213	163
경남	19	30	45	5	30	12	20	8	14	164	108
제주	3	5	8	2	9	4	4	-	6	38	47
계	**193**	**297**	**564**	**59**	**387**	**85**	**176**	**59**	**165**	**1,792**	**1,653**

향후 과제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조기진단 연계체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37,992천원, 초등학교 28,473천원, 중학교 30,221천원, 고등학교 38,234천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5,619천원, 초등학교 51,660천원, 중학교 51,673원, 고등학교 61,514천원임

〈표 3 · 73〉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시 ·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40,625	44,462	19,908	58,908	20,084	59,084	26,891	65,622
부산	39,084	66,751	25,516	55,140	27,070	56,125	37,851	67,726
대구	34,336	54,336	28,721	48,721	31,764	51,764	42,781	62,781
인천	39,802	30,131	17,524	47,784	21,435	38,956	25,654	58,542
광주	36,522	76,522	24,413	64,413	26,096	66,096	40,156	80,156
대전	28,867	48,867	22,763	42,763	24,034	44,034	30,801	50,801
울산	32,260	55,127	26,507	44,263	27,067	39,087	43,211	54,672
세종	32,843	42,843	29,970	39,970	33,200	43,200	37,366	47,366
경기	34,176	56,006	45,137	66,967	39,063	60,893	54,739	76,569
강원	23,752	48,752	21,375	46,375	22,135	47,135	23,307	48,307
충북	22,902	62,902	22,079	62,079	23,008	63,008	37,095	77,095
충남	55,657	65,657	52,798	62,798	61,195	71,195	69,872	79,872
전북	42,701	64,701	34,196	56,196	38,841	60,841	46,724	68,724
전남	36,497	48,497	34,331	46,331	31,259	46,259	33,203	48,203
경북	37,283	52,283	22,033	37,033	23,024	38,024	24,119	39,119
경남	60,529	80,529	31,369	51,369	34,848	54,848	33,176	53,176
제주	48,023	47,150	25,393	47,110	29,638	37,895	43,032	67,010
평균	**37,992**	**55,619**	**28,473**	**51,660**	**30,221**	**51,673**	**38,234**	**61,514**

※ 특수학급 운영비 :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 보조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2조 9,296억 원으로 시 · 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0%의 비율을 나타냄

〈표 3 · 74〉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9,380,315,000	265,656,014	101,495,000	9,726,765	7,592,000	903,824	273,950	2,182,975	380,238,528	4.1
부산	4,355,469,270	121,575,933	51,078,439	5,269,469	1,443,962	834,976	163,702	84,478	179,006,997	4.1
대구	3,262,805,000	91,480,177	55,924,040	37,486,530	37,185,150	1,307,220	307,579	132,010	186,637,556	5.7
인천	3,788,828,097	67,612,062	67,389,968	31,852,260	6,613,834	395,000	143,150	17,847,927	185,240,367	4.9
광주	2,147,930,655	43,616,024	27,518,158	5,333,010	3,554,088	861,213	148,290	1,100,788	78,577,483	3.7
대전	2,127,975,550	60,758,731	39,117,835	15,995,819	1,165,633	9,750	60,482	1,038,037	116,980,654	5.5
울산	1,927,577,247	49,004,276	35,527,114	785,393	175,132	156,000	208,056	162,000	85,842,839	4.5
세종	1,347,656,284	14,945,387	4,495,803	7,258,550	5,758,550	29,500	78,330	1,013,258	27,820,828	2.1
경기	18,008,349,476	383,404,216	131,455,733	25,604,041	2,143,470	22,145,828	601,130	1,068,000	564,278,948	3.1
강원	3,440,612,000	34,210,000	40,957,454	5,970,137	3,240,000	5,000	194,530	-	81,337,121	2.4
충북	2,690,300,562	60,380,723	61,594,997	4,745,517	957,902	123,067	197,500	848,143	127,889,947	4.8
충남	4,077,186,879	89,512,368	42,390,469	36,177,770	8,558,266	435,163	248,084	2,170,170	170,934,024	4.2
전북	3,905,790,168	97,644,755	51,423,036	19,297,987	3,658,104	1,984,622	302,406	118,808	170,771,614	4.4
전남	3,839,300,000	68,693,865	48,756,147	17,411,663	828,150	1,459,289	251,580	2,767,468	139,340,012	3.6
경북	4,844,843,000	105,738,026	42,253,069	29,221,801	22,962,468	1,547,831	326,353	1,153,074	180,240,154	3.7
경남	5,426,711,841	123,417,926	71,134,394	8,378,495	928,000	1,032,750	420,814	1,933,231	206,317,610	3.8
제주	1,201,214,714	27,157,761	12,132,542	3,373,980	1,650,500	626,028	251,557	4,594,138	48,136,006	4.0
계	**75,772,865,743**	**1,704,808,244**	**884,644,198**	**263,889,187**	**108,415,209**	**33,857,061**	**4,177,493**	**38,214,505**	**2,929,590,688**	**4.0**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19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 · 도교육청 예산 2조 9,296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503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45억을 합하여 총 2조 9,844억원임

〈표 3 · 75〉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704,808,244	884,644,198	263,889,187	33,857,061	4,177,493	38,214,505	2,929,590,688
국립	특수학교	32,991,578	12,070,289	4,569,500	482,032	92,690	105,783	50,311,872
	특수학급	2,496,024	1,314,459	457,332	1,800	5,370	270,447	4,545,432
계		**1,740,295,846**	**898,028,946**	**268,916,019**	**34,340,893**	**4,275,553**	**38,590,735**	**2,984,447,992**

- 2019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2,10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7천원 증가함

〈표 3 · 7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 2019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3조 397억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약 2,563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9년 6월 현재 교육 예산의 4.3%를 차지함

〈표 3 · 77〉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연도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 시 · 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향후과제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현황 및 추진실적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예비조사는 2020 본조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본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부문별 수정, 조사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기존 발달검사들이 개발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정확한 장애학생 진단·평가가 어려워, 새로운 국립특수교육원 행동발달평가 척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된 몸짓상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 몸짓상징 활용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일반학교에 완전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내실 있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과정별 완전통합교육 운영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2019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인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관련 시 · 도별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연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학교 현장성에 기반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4월, ‘개별화교육계획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0월,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방안(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2019년 6월,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6권 제1호를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 560개 기관에 배부함
- 2019년 3월과 6월, 특수교육 현장 사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26권 제1호, 제2호」를 발간하여 시 ·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 · 초 · 중 · 고 특수학급 등 9,500개 기관에 배부함

〈표 3 · 78〉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예비조사 • 국립특수교육원 행동발달평가 척도 개발(1/2년차)	465
특수교육 정책연구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중도 · 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활용 가이드북 개발(3/3년) •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380
특수교육 기초자료 발간	• 2019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	25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 제26회 국제세미나 및 국내세미나 • 「현장특수교육」 제26권 발간(연 4회), 「특수교육연구」 제26권 발간(연 2회) •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언론보도 등) • 2019 국립특수교육원 학술 · 연구자료 가이드북	217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2018 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28
계	**연구 4건, 사업 11건, 행사 2건**	**1,115**

■ 향후 과제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예비조사의 면접 및 인터넷 조사 실시, 종단조사 패널 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대국민통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국립특수교육원 행동발달평가 척도 예비검사 문항 개발 후, 검사 표준화 작업을 위한 본조사 실시, 검사요강 및 채점프로그램 제작
- 부모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 몸짓상징 활용 가이드북 발간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보고서 발간
- 「현장특수교육 제26권 제3호, 제4호」 및 「특수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발간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최신 특수교육 정보 제공
-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보 및 연구 동향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따른 개별화교육 현장성 강화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문헌분석, 초점 집단 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방법 활용 실태 분석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문헌분석, 초점 집단 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으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각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가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방향과 적용 및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 초점 집단 면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개발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교수·학습자료 의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및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의사소통(2014), 자립생활(2015), 탐구(2016), 신체활동(2017), 여가활동(2018), 진로활동(2019)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특징 분석,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 단원/영역별 성취 수준 개념 정립, 교과 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안전한 생활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편찬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발행, 개발 절차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초점 집단 면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개정 한국 점자 규정과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정안 교수자(교사, 학부모 등)를 위한 점자교육 및 촉각 지도 자료, 자립생활(기능시각·일상생활) 교재 및 워크북, 수학 교과 교수·학습 지침서 등(14책 1종)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음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기초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3)를 기반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6개 생활기능영역* 중 '진로활동' 영역의 개인 자기탐색과 관리, 대인관계 형성, 공동체 진로활동, 진로·직업탐색 4종 및 (부록)진로활동 가이드 1종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6개 생활기능 영역 : 의사소통, 자립생활, 탐구, 신체활동, 여가, 진로활동

- 발달장애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경험과 사고의 폭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용으로 구분하여 초등~고등과정까지의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서 6종, 워크북 6종, 자료집 1종)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영아 학급 운영의 어려움 경감 및 보편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장애영아 교육과정 지원 자료 12종 개발을 위한 사업 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집필세목 심의를 실시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 교육 교수·학습자료 8책의 개발을 위하여 기관 선정, 심의회 구성, 집필세목·원고본 심의를 실시함
-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에게 우수한 품질의 대체교과서(점자, 확대, 디지털)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대체교과서 제작기관 선정 및 관리, 대체교과서 품질관리 등 대체교과서 발행·공급을 지원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203책 전자저작물 71종)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 중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등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4개 권역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선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관계 법령 개정 업무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기록부,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기준표 등 별지 내용을 수정함
- 개별화교육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협의함

〈표 3 · 79〉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서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종수(부수)
교육과정 · 교과서 기초연구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방안 연구(2/2년)	1종(50부)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실태	1종(600부)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분석	1종(600부)
	• 중도 ·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 · 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개발 방안	1종(600부)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평가 방안 개발(1/2년)	1종(600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1종(600부)
	• 시각장애대체교과서 단가 산정 연구	1종(50부)
교수 · 학습 자료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 보조교과서(보완자료) 14책 (점자본, 점묵자본, 묵자본) • 콘텐츠 1종
	• 중도 · 중복장애학생용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개발(진로활동 영역)	서책형 5종(각 4,500부)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 · 교수 · 학습 보완자료 개발(SW교육)	서책형 13종(각 3,620부)
	•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 개발	서책형 12종(각 2,500부)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 · 학습자료 개발(초등학교 5~6학년군)	서책형 8종(각 6,600부)
현장지원	•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발행 · 공급 지원	-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체계적 질 관리 지원	-
	•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지원	-
	•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지원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지원	-
계	보고서 7종, 교수 · 학습자료 52종(전자저작물 1종)	

향후 과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실태'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별 교육과정 적용체제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방법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안착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 '중도 · 중복장애학생을 위한교수 · 학습 자료의 활용 실태 결과 및 개발 방안' 제시 및 추후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평가 방안' 제시 후 교과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함

- 시각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정안 교수자를 위한 보조교과서 및 보완자료 개발 보급
- 진로활동 영역에 대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총 5종 개발 완료 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진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홍보 강화
- SW교육 자료의 홍보를 통하여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교의 '실과', '정보', '정보처리', '정보통신활용' 교과와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SW교육 지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영아 학급 운영 자료 개발을 통해 장애영아의 발달 촉진, 개별 가족의 요구 지원 등으로 장애영아교육의 보편적인 질 보장
-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교육 국정도서 개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의 체계적 질 관리 기능 강화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질 관리 체제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 편찬 준거, 개발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후속 연구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권역별 자유학년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회 개최 지원
- 2020학년도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사의 개별적 요구에 맞춘 대체교과서의 안정적 제작과 적기 보급을 위하여 수요 조사, 발행·공급 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 및 교과서 발행 출판사 업무 협조 추진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관계 법령 개정 업무 계속 지원 및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현장성 보완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행 방안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음

-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직업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진로 · 직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종 제시 및 맞춤형 직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를 개발(3/3년)하고 있음
- 전국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제시하여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지원하고자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도움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 탐색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인서비스 분야 직무 기초 및 실무 영역의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특수교육 현장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10건의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49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33교)를 대상으로 담당자 워크숍, 직종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 특별컨설팅, 상시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직무훈련, 연수, 가족지원 · 현장실습 · 창업 · 창직 워크숍 등) 현장지원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 우수 교수 · 학습 자료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수 · 학습자료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2019년 1월,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체험 중심의 진로 · 직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함
  - 2019년 4월,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교육 · 복지 · 고용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 확대 워크숍을 개최함

    ※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 일자리를 확충하고 직업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학생 기업가 정신 비즈쿨 캠프'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탄력성 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표 3 · 80〉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 개발(3/3년)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북 개발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380
자료 개발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대인서비스)	100
진로 · 직업교육 현장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사례집 발간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운영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맞춤형 현장 지원 세미나 • 제4회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수 · 학습자료 공모전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 확대 워크숍 • 장애학생 기업가 정신 비즈쿨 운영 지원 • 장애학생 진로탄력성 지원단 활동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성과 점검	120
계	**연구 3건, 자료개발 1건, 현장지원 사업 10건**	**600**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료 개발, 현장 맞춤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연구) 급변하는 직업환경의 변화와 미래 시대 장애인 희망 직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초 연구 수행
  - (자료 개발)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18.7.3)에 따른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확대로 장애유형별,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산업체 특성을 반영한 직업탐색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직종 중심의 콘텐츠 개발 · 보급
  - (현장 지원) 장애학생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 장애학생 교육 · 복지 · 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이행 방안 모색과 지역별 원스톱 취업지원 상설협의체 안착을 위한 실제적 지원 방안 마련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2건과 인권보호 현장지원 5건 등 총 7건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3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 고취를 위해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 23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 관련 모니터링 및 전국 201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지원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공동 주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표 3 · 81〉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관련 연구 · 자료 개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중학생용) •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도구 및 지침서 개발	308
인권보호 현장지원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현장 지원 결과 분석 등) • 장애학생 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6
계	연구 · 교육자료 개발 2건, 현장지원 사업 5건	314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2개의 연구와 1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은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개선요망' 등급의 대학과 '평가 미 참여' 대학의 차기 평가 준비 역량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대학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미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매주기 평가지표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고, 2020년 제7주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의 평가편람과 문항수정을 위하여 실시함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장애학생 고등교육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비정기적 회의로서, 한국복지대학교,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2019년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발생 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 · 82〉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50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50
유관기관 협력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계	연구 2종, 사업 1건	100

향후 과제

-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후 '개선요망' 대학과 '평가 미 참여' 대학에 대한 컨설팅 추진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예비조사 실시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학교(급)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36개 과정 2,021명을 계획 ·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연수는 매월 36개 과정을 계획 ·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7월말 현재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집합연수 18개 과정에 1,521명이 참여하여 수료(예정)하였으며, 원격연수는 38개 과정에 11,357명이 수료함

〈표 3 · 83〉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도 역량 강화(중등)	95	중등 특수학교(급) 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성교육 역량 강화	189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교 교장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166	특수학교 교장
	유치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1기)	39	유치원 원장(감), 교육전문직
	초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1기)	67	초등 교장(감), 교육전문직
	중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학 및 지원(1기)	38	중등 교장(감), 교육전문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담전문가 역량 강화	81	시도교육청 인권지원단 상담업무 담당교사 및 상담사 등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50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유치원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145	유치원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19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등
	긍정적 행동지원 핵심 교원 연수	57	특수학교 교사
	장애학생 인권교육 핵심 교원 연수(1기)	84	특수학교 교사 및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장애학생 인권교육 핵심 교원 연수(2기)	107	특수학교 교사 및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자격연수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과정	50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연수 대상자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01	특수학교(초등) 자격연수 대상자
전문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 문화조성(기초)	136	인권지원단 경찰위원(신규)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공감 문화조성	34	일반직 공무원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63	대학교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계		1,521	-

〈표 3 · 84〉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 명)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기간	대상
직무연수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1	464	3주	교원 및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2	195	3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이해	295	3주	
	특수교육관련 검사도구의 사용법	158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과 교수 · 학습 지도	208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과 교수 · 학습 지도	177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과 교수 · 학습 지도	61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학과 교수 · 학습 지도	50	3주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259	3주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	732	3주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심화	210	3주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1	1,492	3주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2	572	3주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485	3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150	3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실제	80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유치원)	285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초등학교)	221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중학교)	90	3주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과정(고등학교)	93	3주	
	초 · 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233	3주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468	3주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692	3주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연수	50	4주	
	특수교육 희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189	3주	
직무 및 교양연수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705	3주	교원 및 교육전문직, 관련인력 등
	한국수어기초과정	198	3주	
	시각장애학생 보행훈련	90	3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능력 개발	157	3주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325	3주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50	3주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 · ACT)실시 방법의 이해	90	3주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기간	대상
교양연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기초과정	860	3주	학부모 및 보조인력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심화과정	479	3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고급과정	420	3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41	3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특수교육개론	19	3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치료지원 서비스	14	3주	
계		11,357	-	-

■ 향후 과제

- 교원의 통합교육 실행 · 지원 등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과정 지속 운영
- 통합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의 지속적 추진
-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지도 관련 연수의 지속적 추진
- 정책 · 현장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집합연수 교육과정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운영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정보화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조공학 연구,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3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2018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75.6점(목표 75점)과 접속횟수 858,819회(목표 760,000회)로 목표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

〈표 3 · 85〉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사이트 명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콘텐츠 지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사진 및 이미지, 시 · 도교육청 우수 수업자료 – 수업지원 콘텐츠 및 수업 자료 제공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 시각장애학생 · 교사용 대체자료(EBS 등) 제공 – 시각장애학생 교수 · 학습지원 사이트(blind.nise.go.kr)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콘텐츠는 학교 및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 · 학습 콘텐츠로 e-Book형태의 콘텐츠 4종(초 5~중 2학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통해 지원 예정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 장애학생 IT 및 e스포츠체험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2019년 9월 3일(화)부터 9월 4일(수)까지 약 1,500명의 학생, 교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
- 장애 학생이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각, 지체,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코딩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자료 3종 개발 예정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학생 교수 · 학습 및 학교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1종 개발 및 특수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 공학 연구 보고서 발간 예정
-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대체자료 지원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약 320책을 대체자료(점자도서, 확대도서 등)를 제작하여 에듀에이블 사이트(www.eduable.net) 내 대체학습자료 메뉴를 통해 제공 예정
-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범국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교원 및 초 ·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진과 홍보영상을 공모 · 포상하며, 수상작은 국립특수교육원 운영 사이트와 발간물 등에 활용하고, 수상작 전시회를 한국철도공사와 협업 등을 통하여 개최

- 민 · 관 협력 사업으로, 장애 청소년 소트프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복코딩 스쿨 운영 지원(SK텔레콤), 장애학생의 건전한 게임 이용 및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게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지원(넷마블문화재단),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우리두리 운영 지원(두산) 등을 추진

〈표 3 · 86〉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개발 • 특수교육 공학 연구 보고서 발간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1,062
시각장애 지원	• 시각장애학생 · 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교재 점역 지원	463
기타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 학술정보관, 전산실 운영	357
유관기관 협업	• 장애학생 게임문화체험관 구축(넷마블문화재단) • 장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두산) • 장애 청소년 행복 코딩 스쿨 지원(SK텔레콤)	-
계	**개발 5건, 사업 6건, 행사 1건**	**1,882**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콘텐츠 개발 · 운영) 순회교육,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 ·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수학교(급) 교원, 대학 교원 및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전국 규모 대회 운영 확대 및 지속 필요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영역별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 2)
> – 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 –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 연구·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 교육 :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 협력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의 학습능력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4종 및 교재·교구 4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1종 및 교육 프로그램 1종,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평생교육 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회)'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연계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체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6회)'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87〉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시설 · 설비 표준(안) 개발 •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일반화 모델 개발	1,820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 교구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체계(정보 시스템) 구축	1,932
교육 ·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1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50
협력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운영	30
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 등	81
계	**연구 · 개발 10종, 연수 등 사업 3건**	**4,044**

향후 과제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재 · 교구 등 개발 보급 확대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시행('19.10.24.)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부록 I

- 서울특별시교육청 / 139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0
- 대구광역시교육청 / 165
- 인천광역시교육청 / 174
- 광주광역시교육청 / 185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9
- 울산광역시교육청 / 21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31
- 경기도교육청 / 243
- 강원도교육청 / 257
- 충청북도교육청 / 269
- 충청남도교육청 / 282
- 전라북도교육청 / 305
- 전라남도교육청 / 312
- 경상북도교육청 / 328
- 경상남도교육청 / 34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50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서울 특수교육 방향

장애·비장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중점 과제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중점 과제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4.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2-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2-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2-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2-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10.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2-1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3-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1. 장애공감문화 조성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4-5.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4-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2019 특수학급 설치 현황

구분 \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18	71	74	426	699	199	289	86	252	782	1,314
2019	89	94	442	731	201	291	88	256	820	1,372
증감	↑8	↑20	↑16	↑32	↑2	↑2	↓2	↑4	↑38	↑58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 장애유형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방안 정책연구 추진

4)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10교)

5) 노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환경 개선

6) 학교 부적응 장애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활용 방안' 연수 실시

○ '2019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국외 현장 연수' 실시

2)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특수교육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4)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2) 학교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라.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정보 접근권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정보 통합 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4) 특수학교(급)의 정보화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거점센터 11센터 운영)

나)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 : 11교

다) '통합교육지원단' 구축 및 운영 : 통합교육지원단 12단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학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더불어통합공동체 11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학교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화 지원

4) 전공과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6)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내실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 방문 순회교육

가) 복지시설 내 파견학급 설치 운영 학교 : 서울정민(영락애니아의 집)

나) 가정, 복지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방문순회교육 운영 학교 : 서울경운, 서울다원, 서울정문, 서울정민, 서울정애, 서울정인, 서울정진, 새롬, 연세대재활, 한국우진

2)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가)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는 30시간 원격직무연수 의무 실시

나)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수 실시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4)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5)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가)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나)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일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의 내실화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및 운영 내실화 지원장학 실시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연세암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원자력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3) 원격수업(꿀맛무지개학교) 지원

4)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11센터

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기능 강화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5)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6)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 강남서초)

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동작관악, 성북강북)

다) 지체중복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서부)

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2) 가족지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장애특성에 따른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촉각교구 지원

나) 기기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 공동구매 또는 학교별 구입 후 대여

4) 통학지원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

가)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 운영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나) 특수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다) 찾아가는 음악 · 체육 전문 순회강사 운영 : 특수학급 설치 중 · 고등학교 61교

2)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4) 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26교 전체)

○ 연구 · 시범학교 3교 운영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단위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현장 안착 도모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지원청(11개)별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 직업 체험처 발굴 협의체 구성 ·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2)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 사후관리 체계 구축

3) 현장 중심 진로 ·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확대

가) 대상 : 특수학교(급) 고3 · 전공과 대상

나) 희망일자리 추진 절차

(1) 직업능력평가

(2) 구직역량강화 연수

– 운영기간 : 3일

– 대상 : 직업능력평가 기준 통과 학생

(3) 지원고용 프로그램(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 적용)

– 실시장소 :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 운영기간 : 3주(주 5일, 1일 4시간 기준)

– 대상 : 취업준비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 실시직종 :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등

(4) 인턴십 프로그램(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적용)

– 실시장소 :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 운영기간 : 6주(주 5일, 1일 4시간 기준)

– 대상 : 지원고용 프로그램 평가 통과 학생

– 실시직종 :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등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의 고용전환 실시

4) 시각장애 특수학교「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2교

○ 학교기업 운영학교

학교명	기업명	개관연도	사업직종	장애유형
서울맹학교	서울맹학교 점자도서출판부	2014	점자도서출판	시각
한빛맹학교	한빛힐링센터	2011	건강기기체험(이료)	시각

5)「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 활성화

가)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나)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현장실습 실시 및 취업 지원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학교

연번	관할청	학교명	운영 프로그램
1	강남서초	경기고	바리스타, 사무보조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자격증, 디저트과정
3	남부	관악고	카페, 제과제빵, 자전거공방
4	강동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사무자동화
5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목공 및 전기, 운동화빨래방, 주말농장
6	북부	서울문화고	바리스타, 공예, 홈카페 마스터과정

6)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나)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공과 과정 해당 발달장애학생에게 개별요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체험과 직업훈련 실시

다)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실습실 구축

라) 장애학생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체험 및 훈련대상자 선발, 학교와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교직원 파견(교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마) 2019학년도 1, 2학기 직업체험 기본·심화과정 1, 2 및 직업훈련 실시

7)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현장실습 운영 철저

8)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9)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원

3)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으로 교육소외계층 교육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2) 장애인식 개선교육 홍보 강화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예술공연 지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장애인식개선 예술공연 사업 운영) 활용 권장
4)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5) 교육지원청별 장애공감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4)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5)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6)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7)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및 지원 : 5단
8) 문제행동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한「행동중재특별지원단」지원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3) 특수학교(급)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포함
4)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5)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지원(급당 2,000천원~3,000천원)

2) 돌봄교실(종일반) 운영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 20학급 운영, 특수학교 : 30개교 86학급 운영

3) 토요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2)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3) 유 · 초 · 중 · 고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운영비 : 유치원(급당 3,700천원), 초 · 중 · 고(정액분 급당 3,000천원, 차액분 차등 교부)

나) 특수학급 신 · 증설비 지원(유치원 15,000천원, 초 · 중 · 고 40,000천원)

다)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 학급당 8,000천원~32,000천원

라)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직업교육비

○ 지원기준 : 급당 2,000천원 내외(학급 수, 학생 수 대비 차등 지원)

4) 특수학교(급) 시설 · 설비 확충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학교명(가칭)	예정지	장애영역	규모	개교 예정
서울서진학교	공진초 이적지	지적장애	22학급 142명	2019. 9월
서울나래학교	언남초 이적지	지체장애	22학급 136명	2019. 9월
서울동진학교	미정	지적장애	16학급 106명	2022. 3월
서울00학교	서울정진학교(분리개교)	지체장애	12학급 80명	미정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강화 연수	물량	250	명	50	50	50	50	50
	예산	2,000	천원	400	400	400	400	4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축 및 운영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학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9	2020	2021	2022
통합교육지원단	11	단	5	8	11	11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 내실화 지원

1) 유아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긍정적 행동지원 안착 등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2) 유아특수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물량	200	명	40	40	40	40	40	인턴십
	예산	625	백만원	85	105	125	145	165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학교로 찾아가는 다양한 장애이해교실 운영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물량	217	교	33	38	43	48	55
	예산	150	백만원	20	33	30	35	40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6)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7)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8) 치료지원
9) 통학지원
10)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12)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
14)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3)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4)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5)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6)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7) 특수교육 연구 활동
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9)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10)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지원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1)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공감문화 조성 '世울림' 교육활동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운영
2)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특수교사 배치(6명)
3)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 순회교육 및 보조인력 지원
4)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유치원 2개원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 : '19. 4월
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 '19. 3월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 장애 유아 순회교육 실시 : 연중
4) 특수교육대상 영아 학급 운영 : 특수학교 7교(15학급)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1) 전문적 진단·평가 지원체제 구축 : 6개 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2) 진단·평가 지원체제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연 1회)
3)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 ′19. 7월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수요조사(6월),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9월)

라.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관리(평가조정, 수행평가, 원격수업 등) 안내
3) 장애학생 편의 시설 확충 :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4)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부서와의 협업 강화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가) 인력현황 : 총 54명(전문직 6, 순회교사 36, 행정직 8, 기간제 3, 장애전담 인력 1)
   나) 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북부센터(발달장애), 동래센터(시각장애), 해운대센터(청각장애)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가) 근무여건 : 행정기관 복무 준수, 학생 방학기간 활용 개인 연찬 기회 확대
   나) 인센티브 부여
      (1) 전보 시 급지점(최고점) 부여 및 전보가산점 부여
      (2) 업무겸임 순회교사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교육전문직 전형 시 별도 가산점 추가 부여
      (3) 순회교육 유공교원 표창 : 매년 7명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과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센터명	부산특수교육 지원센터	서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남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북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동래특수교육 지원센터	해운대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색사업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지체장애교육	발달장애교육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4)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실시 : 치료기관(267기관)

나)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 장애인 복지관, 고용공단, 재활협회, 직업능력개발원 및 각종 산업체 등(22기관)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 8기관(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등 영역별 2기관) 및 인형극 공연 단체 1기관

라) 가족지원 및 직업평가 시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 고신대학교 외 2교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대상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안내 : ′19. 4월

2) 순회교육 교사 충원 : 초등 3명, 기간제 3명

3)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9. 7월(1박 2일)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병원학교(4교, 월평균 20명) 및 원격수업 지원(월평균 110명)

2)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실시 : ′19. 4월(100명), ′19. 9월 예정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원적학교 8교

아. 치료지원

1) 지원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타 관련서비스 등 11개 영역 지원

2) 지원방법(대상자 수) : 치료지원카드시스템(마중물카드)을 통한 지원(3,578명)

3) 치료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강화 :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6팀, 총 16명)

자. 통학지원 : 학생, 학부모 1일 최대 2회 지원

차.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713명(교육청 지원 608명, 자활센터 지원 15명, 사회복무요원 90명)

카.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품목별 보조공학실 운영(총 3실)

2)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리, 세척, 소독 연계

3)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 비치

4) 장애 영역별 거점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구축(홈페이지)

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안내 : 국립특수교육원(이얍, 에듀에이블), 교육청 홈페이지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http : //bsesc.pen.go.kr)

파.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 기관연계 찾아가는 가족 지원(28가족), 장애학생 가족상담(18가족), 장애학생 부모 토크 콘서트(300여명) 운영 예정

하.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1) ´19 특수학급 신(증)설 : 19학급(유치원 3, 초 14, 고 2)

2) ´20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 : ´19. 6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

가) 교육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1)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2) 지역여건,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 반영 노력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 · 운영

(3)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 : 15교, ´19. 4월

나) 중도 · 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 · 운영

(1) 교과군(별) 50% 범위 내 시수 감축,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 운영(2교)

(2) 중도 ·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 · 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15교, 교당 600만원)

(3) 중도 · 중복장애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 1팀

다)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1) 교과 내,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지원 : 상상나래실 12교

(2) 직업교육 중점학교 연구학교 운영 1교, 진로 집중학년제 운영 1교

(3) 현장 및 실습중심의 진로 · 직업교육 운영

(가) 직업교육 특성화 지원 : 특수학교 1교(부산해마루학교)

(나) 현장중심 전공과 실습 지원 : 특수학교 9교(38학급)

라) 인성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인성교육

(1) 1학교 1인성 브랜드 연계 학교별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2) 인성교육중심 수업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교별 교육과정 재구성

(3) 전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연 4시간 이상 이수

마) 학생자치 활동 강화 및 자율과 참여의민주시민 교육

(1) 교육과정에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 권장(월 1회 이상)

(2)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 교육 : 교재 및 프로그램 활용자료 배포 (특수학교 15교)

바) 범시민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정착

(1)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송 활용 : 일과(수업)전후, 학교 시종과 연계

(2) 아름다운 인사 습관화 : 스승존중 제자사랑 '수업인사'

사) 문화예술·체육활동 내실화

(1)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정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1인 1기 및 동아리 활동(특수학교(급) 21교 지원)

(3)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는 '예술 체험의 날' 운영

(4) 단위학교 자율체육프로그램 추진 권장 : 일주일에 5일 이상 60분 운동

(5) 1인 1종목 연간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단위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일반학교 교육과정 포함 편성·운영

(2) 2019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575학급

(3)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고(42지구)

(4)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가) 학생수준에 알맞은 통합교육 수업참여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 : 학기별 1회 이상

(다)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통합교육 협의회 구성·운영 : 학기별 1회 이상

(5)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가) 교재 · 교구 구입비 : 급당 800천원
(나) 특수학급 운영비 : 유(1,997천원), 초(2,358천원), 중(2,918천원), 고(3,495천원)

나)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학생수준에 맞는 통합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698교)
(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 전담부서 지정 및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 2개원
(나) 정다운 학교 운영 : 연구학교(해원초, 모라초), 선도학교(몰운대초, 문현초)
(다)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 6개 지원단 56명
(4) 통합교육협의회 구성 · 운영 : 학기별 1회 이상
(5)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정 노력
(6)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수 감축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적용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운영 안내 : 2월
나)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다) 개별화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 6월(특수교사 47명)

2) 개별화교육 운영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 · 운영
나) 국정 교과용 도서 및 학교(급)별 · 교과별 프로그램 자료 활용
다)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활용

3)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 · 운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하여 긍정적 행동 지원팀 구성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및 가이드 북 활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작(2014)

다) 긍정적 행동 지원 운영

(1)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 지원 : 15교, 교당 3,300천원

(2) 특수학급 긍정적 행동 지원 : 현장지원단(22명), 외부 자문단(10명)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1) 컨설팅 운영지원단(15명), 진로체험지원단(15명), 총 30명

(2)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우수학교 교원, 연구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다)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1) 자유학기(년)제 운영학교 계획 단계 컨설팅('19. 2월 11교)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가) 자유학기제 운영(1교), 자유학년제 운영(12교)

나)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내실화 : 교과연구회(13팀) 운영

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운영 : 2교(부산혜남학교, 부산혜송학교)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나) 진로체험지원단의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검증

다) 학교별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라.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1) 학생참여중심 교실수업 개선

가) 학생참여중심 수업 실천 : 토의·토론학습, 협동학습 등 활성화

나) 1교사 수업 브랜드 갖기

(1) 월 1회 이상 내 수업 돌아보기 : 수업 성찰일지 작성

다) 교실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 나눔

(1) 학기별 1회 이상 교내 수업공개

(2) 교내 선배교사와의 협력적 멘토링 : 수업 커플제 운영

라)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교실수업 개선 연구발표대회 참여 확대

가)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참여(교육부 주관)

나) 전국 특수교육 연구대회 참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주관)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1)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가) 학년초 현장지원장학 :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19. 4월, 15교)

나) 학기중 현장지원장학 : 교육실습,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다) 학년말 현장지원장학 : 외부 전문가 참여 학교교육 성과관리, 자체자율장학 평가 등

라) 특수학교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운영 : 연 2회(수업공개 및 주제·사례 발표)

마) 특수학교 내 자율장학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 60교(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각 10교)

(1)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2)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등 현안 협의 등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 42개 지구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수업공개, 사례발표 등 자율적 운영

(2)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 컨설팅 : 연 4회 이상

3)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 : //counsulting.pen.go.kr) 활용 컨설팅 장학

가) 영역 : 수업, 교육과정, 생활교육, 평가, 학교생활기록, 긍정적 행동 지원 등

나) 컨설팅의 자율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공

다)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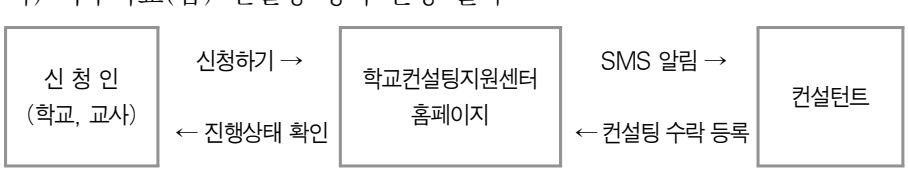

바.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자체 연수 계획·운영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통합) 교육 역량강화 연수 : '19. 9월

나)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 독려

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확대

사. 특수교육 연구 활동

1) 특수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정책연구학교 : 부산혜남학교, 부산혜송학교

나)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연구학교 : 부산솔빛학교

다)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다운학교(연구학교) : 해원초, 모라초

2) 특수(통합)교육 연구활동 지원

가) 특수학교별 자유학기제 연구회 운영 : 13교(13팀)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 1팀

다)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연구회 운영 : 1팀

3) 특수학교 교내 교육연구회 조직·운영

가) 과정별, 과목별 교사 자율연구회 조직, 운영

나)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아.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1) 특수학교(급) 457강좌 운영

2) 특수학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질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확대

* ('18) 22기관 → ('19) 23기관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예·체 중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자. 문화·예술·체육 강화

1)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교 1인 1기 문예체 교육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3)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등 1인 1기 배양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1) 직업교육 역량강화 My JOB 프로젝트

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연중

(1) 고등학교 과정 이상 설치 특수학교 11교 및 고등학교 61교

(2) 직업체험학습,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을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3) '장애학생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9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실습재료비 지원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지원 : 부산혜성학교 학교기업「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학교기업「에코해마루」 운영

라) 부산솔빛학교 대상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연구)학교 운영 지원

마) 부산해마루학교 대상 특수학교 직업교육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가) 산학겸임교사 지원, 실내수경재배시설 및 농업실습장 운영비 지원 등

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프로그램 : 전자조립, 실용공예 / 12교 78명 참여)

사)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거점센터 운영 :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25교, 223명), 포장·조립, 사무·사서보조, 바리스타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2) 기관연계 역량강화 My JOB프로젝트

가) 기관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평가 운영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1, 3학년(53교, 309명) 대상,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팀 연계

나)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운영 :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2, 3학년(42교, 222명)대상,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외 20개 기관, 26개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 일반고 3학년(4교, 5명)대상, 부산직업능력개발원(외식사업, 특화실무훈련 과정)위탁 교육

3) 취업역량 지원 My JOB프로젝트

가) 진로·직업교육 지원 연수 및 상담 강화

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 부산시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1개 기관(위원 12명) 참여,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 운영

다)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 '19. 9월

(1) 운영 방침 : 부산시청 장애인채용박람회 연계 운영

(2) 대상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특수교육 교원 및 학부모

(3) 협력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직업교육 유관기관 25개 기관

(4) 내용 : 지역사회 진로·진학 정보지원 연수 및 상담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世울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가) 유·초·고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계획 포함 안내

나) 학교·교육청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다)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초·중·고 교과서 장애이해교육 내용 지도 자료 활용

라) 장애이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학년초 권장) 의무 실시

마) 특수학급미설치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지원 : 158교

2) '世울림' 교육활동

가) 찾아가는 '世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 200교

나) '世울림' 인형극 공연(60개 유치원), '世울림' 그리기대회 및 우수작품 전시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찾아가는 성·인권교육(60교) 실시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인권 및 성교육 연수(2회)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교육의 내실화 : 예방상담프로그램(30교), 찾아가는 장애학생 인권교육(60교), 찾아가는 성인형극(20개 유치원), 홍보리플릿(1,000부)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가) 인권지원단 : 총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단, 71명)

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 연중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실천프로그램 운영(3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 : ´19. 2월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 · 운영

다) 장애학생 등 · 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51차시)에 따른 체험중심의 안전한 교육 실시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필수 반영)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 · 유괴 예방

(1) 신고의무자(교직원, 강사 등)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2)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 19.)과 예방주간 운영

(3) 매뉴얼에 따른 미인정 결석 학생(유아) 관리

3)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 사업 지원

가) 특수학교 재학생의 등 · 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나) 위치추적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 특수학교 13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 지원

1)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홍보 : ´19. 10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19. 12월

다.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 ´19. 7월

2) 건강장애 학생 지원 담담교사 연수 : ´19. 9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

1)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19. 7월
2)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리단계 현장지원 : ´19. 11월
3)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회 개최 : ´19. 12월
4) 특수학급 현장지원
   가) 유·초·중·고 특수학급 현장지원 : 학교급별 5교 지원, 고(10학급)
   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42지구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1) 학부모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부모 연수 : ´19. 6월
2)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단 워크숍 : ´19. 8월
3) 자유학기제 교실수업개선 수업나눔 축제 : ´19. 11월
4) 진로체험처 검증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료집 수정 보급 : ´19. 12월

다.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지원

1)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보고서 제출 : ´19. 10월
2) 전국 특수교육연구대회 보고서 제출 : ´19. 10월
3) 특수학교(급) 수업컨설팅 지원
   가)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컨설팅 지원 : 수시
   나) 수업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결과 분석 : ´19. 12월

라.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1) 연구학교(자유학기(년)제, 직업중점학교, 정다운학교 등) 운영 지원
   가) 계획-실천-정리단계 협의회 운영
2) 교육연구회, 정책연구 등 연구 성과 제출 및 일반화 : ´19. 12월
3) 긍정적 행동 지원 사례 발표회 : ´19. 12월

마.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 ´19. 9월
2)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 ´19. 7월
3)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 : ´19. 8월
4) 건강장애 학생 지원 담담교사 연수 : ´19. 9월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연수 및 운영 지원 : ′19. 9월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 지원 : ′19. 11월

다.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19. 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世울림’ 인형극 실시 : ′19. 4. ~ 9월(60개 유치원)

나. ‘世울림’ 전시회 : 학생교육문화회관, ′19. 6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홍보 앱 업데이트 : ′19. 7월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 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 문화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1) 특수교육의 혁신 터닝포인트 특수교육원 신설 추진

가) 전국 최초 통합형 직업안전체험시설 설치(안) 반영

나) 특수교육 교육가족 중심 통합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시설 및 교육장 마련

라) 미래역량,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및 연수 추진

마)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2015 교육과정 설계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가)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 병설 및 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

– 대구불로초등학교 통합병설유치원 2019. 3. 1. 개원

· 규모 : 6학급(일반학급 3, 특수학급 3)

· 예산 : 1,430,000천원(유치원동 환경개선사업)
· 개원식 : 2019. 9. 1.
– 맘껏 놀이 중점 통합단설유치원설립 추진
· 교명 : 가칭 '대구인지유치원'
· 규모 : 12학급(일반학급 6, 특수학급 6)
· 예산 : 11,937,879천원
· 개원 : 2021. 9. 1. 예정
· 개원 T/F팀 운영 및 통합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국외 연수 추진 (2019. 6. 24.~7. 1.)

나) 직업중점 및 문화예술 중점 신설 추진, 과학정보 중점 설립 검토
–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30학급
· 교명 : 가칭 '대구이룸고등학교'
· 규모 : 30학급(학생수용 인원 : 210명)
· 예산 : 45,083,000천원
· 개교 : 2021. 3. 1. 예정
· 설계 T/F팀 운영, 건축 설계 수정 및 보완, 공사 추진(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25학급
· 교명 : 가칭 '예아람학교'
· 규모 : 25학급(학생수용 인원 : 154명)
· 예산 : 301.7억원
· 개교 : 2021. 3. 1. 예정
· 개교 T/F팀 운영 및 설계 용역 의뢰 중

다) 주민 이용 가능한 복합형 특수학교 설계 반영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교원 연차적 증원
가) 2019년 공립 특수교원 51명 증원 배치('22년까지 69% → 80% 달성 목표)
나) 전문상담 및 사서보조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다) 장애교원 지원방안 마련(정원 외 기간제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업무 지원
가)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22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라)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중점 운영학교에 관련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 특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00% 설치 완료 및 기타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

나)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98.4% 설치,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다)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라. 특수교육환경 혁신적 개선

1) 특수학급 급당 신(증)설비 지원 : 급당 2천만원

2) 특수교육환경 리노베이션 공모 사업을 통한 교실환경 혁신

가) 9개 특수학교 직업교육실 리노베이션 : 27억

나) 노후 특수학급 리노베이션 : 22억

다)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 6억

※ 리노베이션이란? 기존의 학교 교실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특수 교실 공간의 새로운 디자인과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방식 등을 미래형으로 재구조화함을 의미, 즉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20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하여 통합교육 지원단(특수교육지원센터별 5팀)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

다) 통합교육지원실(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통합교육 전담실) 9개교 구축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7개원 운영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20개교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집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필수

나)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 운영

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 권장

라)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소양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9-1호, 6호)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법적 이수 시간 적용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 지원 방법 등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가) 병원학교 4학급(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병원*) 운영

* 계명대학교병원학교 : 2019년 5월 1일 개교(신설), 달성군 및 달서구지역 건강장애 학생 교육적 지원 요구 충족, 건강장애학생교육권 제고 및 책무성 강화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과 전담교사 지원 및 특기·적성교육 실시

라) 병원학교별 건강장애담당교원 연수회 실시 등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지원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개별 맞춤 지원 강화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인력 지원 현황 : 총 727명(실무원 532명, 사회복무요원 195명)

2)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전원 연수 실시

가) 원격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내 90시간)

나) 자체연수 강화 : 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자체연수, 학생 변동 시 연수 실시

다) 집합연수 : 7, 8월 중 실시 예정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학기초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2)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교수·학습 및 관련 서비스 지원

3) 특수학교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초·중·고 특수학급으로 점차 확대

아.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독려

2)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3) 평가조정제 지원 명문화 : 대구광역시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포함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5개소(교육지원청별 4개소,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마)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위원 – 5명, 외부위원 – 8명)
대구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위원 – 5명, 외부위원 – 12명)
대구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9명)
대구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12명)
대구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12명)

– 더봄학생 중심으로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특별 지원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맑은소리 하모니카 학교기업 출범(2018. 6. 18.) 후 북구청 일자리 5명 확보 (연 160여회 전국단위 공연 확정, 연초 영국 순회공연 성황리 마감)

2) 특수교육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빛솔합창단 등 단위 학교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3) 9개 특수학교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교부

4) 제5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원 약 3,000명 참가)

5) 제8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 운영(34팀 263명 출전)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치료지원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월 12만원 범위 내 지원

2) 가족지원 : 보호자 교육, 상담활동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통학지원 : 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 지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1)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연구학교 1회, 특수학교별 2회)

2) 자유학기(학년)제 지원단 정기 협의회 실시(2회, 전반기, 후반기)

3) 진로체험처 구축 및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 실시

※ 장애학생 이용 가능 「꿈길 등록처」 221개 확보 및 체험 가능 여부 점검

4)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교원 연수 실시

5) 자유학기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2회, 전반기, 후반기)

※ 15시간 1~2기(상 · 하반기) 운영, 특수교원 40명

6) 자유학기(년)제 연구학교 운영 : 대구덕희학교(자유학년제)

7)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기(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10개 중학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2교)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5교 연합 학교기업 운영

– 대구성보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행정 지원

다) 안전한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1교, 대구광명학교)

라)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운영(중심교 : 대구보명학교)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다) 교육청 특화형 전공과 잡페스티벌 운영(후반기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협업 잡페스티벌 운영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총괄 위탁, 2개 복지관 수행기관 지정 운영

나) 고3,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적용(연 44명)

4)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가) 중등 특수교사 실기 직무연수 과정 개설(후반기, 35~40명)

나)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수시 실시)

5)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가)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1~3학년, 연인원 6,800명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11개 과정(기초, 심화) 운영, 보호자 및 사업주 교육 운영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라) 직업역량 강화 및 체력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연 8,000명)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2) 교육(지원)청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1회 반영
3) 모든 학교(유, 초, 중, 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예산 교부(학교별 50만원)

나.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활동 활성화

1) 대구교육의 자랑 특수학교(급) 연주단 및 합창단 홍보 강화(3개팀)
   -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대구성보학교),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빛솔합창단
2)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대구학생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출연 기회 마련
3) 신문 및 뉴스보도, 방송출연을 통한 장애공감 메시지 확대
4) 대구교육박물관 내 특수교육관 지속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1) 문화예술중점특수학교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T/F팀 구성
2) 문화예술중점특수학교 교원 배치를 위한 특정교과 교사 신규채용, 연수 신규개설
   ※ 2019년 : 특수음악 2명, 특수미술 1명 총 3명 선발, 2020년 : 총 3명 선발예정
3) 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개교 요원 구성, 기자재 목록 세분화
4) 진로직업 전문교사 양성 직무연수 실시(3년째),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신규)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통합교육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추진
2) 중등특수교사 진로직업 연수 과정 개설 및 만족도 조사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지원실 구축(18교 예정) 추진

2) 통합학급 업무 경감을 위한 학급정원 1~3명 감축 조정

3) 통합교육 유치원 학급정원 축소, 방과후 과정 인력 추가 지원

4) 정다운학교 과정별 통합교육 모델 개발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2) 특수교육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잡페스티벌 협업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나. 공공기관 일자리 발굴 및 적용

다.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수업발표 및 보고회

라. 진로직업교육 지역사회 관계 기관 네트워크 정기 모임(2회 예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찾아가는 연주회, 정기연주회 개최(연말)

나.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연주회, 정기연주회 개최(연말)

다. 빛솔합창단 후반기 대회 출전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특수교육 핵심역량 강화와 공감문화 확산으로 장애학생의 성공적 미래생활 실현

2.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장애학생 취업 및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예방 지원체제 구축

3. 중점 추진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충실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2)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수업중심 학교 문화 형성

2) 특수교육 장학 지원으로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

다. 특수학교 자유학년(기)제 확대

1) 자유학년(기)제를 통한 장애학생 특기 적성 개발

2) 자유학년(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 지원

라.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1)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마. 진로체험활동 및 직업기능 강화

1) 현장중심 위드잡,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2)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다양화

1) 종일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통학비 및 치료지원

2)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찾아가는 성교육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2) 장애학생 상시 관리 지원체제 구축

아.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

2)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0학급, 중학교 0학급, 고등학교 0학급

나)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신증설(전환) : 고등학교 5학급

2)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해소

– 특수학교 설립 계획 추진 : 2020년도 (가칭)서희학교 개교 예정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가) 특수교육교원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연수(6시간)

– 특수교육교원 교과지도, 자유학년(기)제,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수업컨설팅 지원 : 멘토-멘티가 만나는 특수교육 수업 지원

– 좋은 학교 만들기 특수학교 컨설팅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2회, 4시간)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10팀)

2)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돋움터 연계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3) 장애 영역별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 : 6개 센터 31명
2)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 : 5개원
3) 통합교육협의체 구성 : 교수, 교육전문직, 유관단체, 교원 등 다분야 전문가 25명
4)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 6개단
5) 통합교육 요구 기초자료 조사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기타 등 660여명 참여
6)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 개발 실행팀 구성 : 30명
7) '정다운학교' 운영을 통한 협력모형 개발 · 운영 : 1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실시 : 8개 과정
2) 초, 중, 고등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공감 집합연수 개최 : 450명
3) 유치원 관리자 대상 장애공감 집합연수 개최 : 100명
4)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원격연수 확대 지원 : 8개 과정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중도 ·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도모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설치 : 초 7학급, 중 3학급, 고 5학급, 특수학교 3학급
2)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담당교사 사전 컨설팅 및 지원팀 연수 : 78명
3)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연수 :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34명
4)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 11명
5)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거점학교 운영 : 단봉초 1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562명
2) 특수교육 원격연수 지원 : 7개 과정
3) 특수교육실무사 힐링연수 개최 : 7회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아. 건강장애학생 지원 강화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 인하대병원학교
   나) 원격수업 지원 : 인천사이버학교 초등 42명, 한국교육개발원 중·고 63명
2) 건강장애학생 적응 지원
   가)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나) 통합학급 대상 건강장애 이해교육 실시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 39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실시
2)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청각장에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 남부교육지원청
   나) 시각장에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 동부교육지원청
   다) 자폐성장에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 북부교육지원청
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가족상담, 양육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지원 : 유, 초, 중, 고 54개

2)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유, 초, 중, 고 24개

3) 장애 – 비장애학생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 초, 중 5교

4) 공모형 문화예술 ·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고 20교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자유학년제 4교, 자유학기제 4교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강화

가)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컨설팅 : 8교

나)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 및 안내

다)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운영 연수 및 컨설팅 : 각 1회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도권역 워크숍 개최 : 1회

마)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도권역 연수 개최 : 1회

3) 자유학기(년)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 9팀(교내 8팀, 교간 1팀)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진로인식 및 탐색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초,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나)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탐색,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진로 · 직업 체험처 참여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탐색,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5센터

– 진로 · 직업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1팀

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미추홀학교

라)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특수학교 전공과 8교 43학급(자립생활훈련반 11학급 포함) 운영

– 일반학교 전공과 2교 3학급(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운영

마)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6교

바)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전공과, 진로전담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각 1팀

2)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가) 교육·고용·복지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연계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운영 : 7개 프로그램

다) 복지관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평가 실시

– 장애인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무체험 기본과정(150명, 10개 직무체험, 10시간)

· 직무체험 심화과정(140명, 2개 직무심화체험, 40시간)

· 직무체험 특별과정(220명, 10개 직무체험, 12시간)

라)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수립

– 인천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마)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위탁교육(20명, 180시간)

– 기초사무능력 향상, 예약발권 훈련, 서비스마이드 훈련, 진로직업소양 교육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미추홀학교

4)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가) 거점학교 3교(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나) 인근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79개교 113학급 지원

5) 지역 내 일자리 참여 및 현장실습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참여 확대 : 장애인 근로자 160명 고용

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 확대

다)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 1기, 전공과 학생 20명 참여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 상담 및 진학 정보 제공 강화

2)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중도·중복장애 참여 기회 확대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3) 교육기관 공무원 등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6개

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정기 현장지원 : 30회

나) 일반학급 대상 인권존중 교육 실시 : 156명

다) 특수학급 대상 자기옹호 수업 실시 : 170명

2) 장애학생 인권(성)교육 강화

가) 초, 중, 고등학교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나) 찾아가는 특수학급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 40회

다) 장애학생 성인권 공감 공연 관람 : 10회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위주 학교안전교육 실시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학교별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및 미세먼지 피해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 협력체제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3)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
4)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개인별, 학교별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 55학급, 종일제강사 55명 배치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운영 예산 지원 확보
2)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 특수학교 시설·설비 확충 지원
4) 특수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비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일반학교(원) 설립 계획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조치
2) 특수학급 정원 실태 파악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3) 특수학교 설립 계획 추진 : (가칭)서희학교 2020년 개교 예정

나.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교원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실시
2) 특수교육 행복 수업나눔을 통한 협력수업 우수사례 공유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2) 무장애학교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2) 통합교육지원단 활동을 통한 우수교 발굴 및 통합교육 운영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집합연수 실시
2) 유치원 협력교수 역량 강화
3)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연수과정 참여 적극 홍보
   나)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적용을 위한 연수 지원
2)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전문가팀 컨설팅 지원(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지원 보조인력 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2) 특수교육실무사 집합연수 기회 확대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안내
2) 특수교육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인천사이버학교 운영 : 초등학생 지원
2)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 운영 : 중·고등학생 지원
3) 병원학교 운영 : 인하대병원학교

4) 건강장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성화 거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및 연수 지원
2)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영유아 내방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4)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2) 고등학교 사제동행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15시간) 개최 : 9월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 관리자 연수 : 8월
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실수업 나눔 페스티벌 : 10월
4)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도권역 성과보고회 : 11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교육·고용·복지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2)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학교기업, 및 전공과 운영 내실화
3)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1, 2기 운영 : 6월~12월
4) 대학기반 장애학생 전문 직무과정 직무위탁교육 운영 : 6월~12월
5)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7월~9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2) 고등학교 찾아가는 인권존중 교육 확대
3)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2)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대상 인권(성)교육 및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지원

3) 가정 연계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2) 학교 실정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안전교육 수시 실시

3)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 강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 교육활동 지속적 지원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확대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지원

3) 통합교육지원단 구축에 따른 맞춤형 통합교육 운영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특수학교 1교 신설 추진
      – 2019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 신설 5학급, 증설 6학급
2)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나)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나) 특수교육 현장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및 보조인력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가)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원 운영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공립유치원 의무교육비 지원 : 월 110천원 범위 내 지원
- 사립유치원 의무교육비 지원 : 월 400천원 범위 내 지원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확대

- 2018년 1교 ⇒ 2019년 2교 : 하남초등학교, 무등초등학교

나) '정다운학교'를 통해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은 직무연수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이수 권장

나) 국립특수교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다)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2)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 3시간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 · 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2교 :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컨설팅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한 순회교육 지원 : 특수학교 영아학급 6학급 운영

마.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심리안정실 등 특수학교 교실 환경 여건 개선

2) 중도 · 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3)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 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235명

나) 학교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운영 및 근무평정 실시

다) 특수교육실무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라)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실시

2)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사회복무요원 129명

나) 학교별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 교육 등 연수계획 수립·운영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병원학교 운영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다) 병원학교 위탁 운영 :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라) 원격수업 위탁 운영 :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당교사 연수 실시

3)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장애영유아교육 등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치료지원비(월 110천원 범위 내) 지원, 학생 및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사업체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직업재활시설 6개 기관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 강화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 : 학교별 2회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보급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학교 주관 체험처 활용 결과의 누적·통계 관리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및 질 관리 효율화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특수학교 2교(1년차 1교, 2년차 1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특수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 특수학교 2교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다)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한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협의체' 구성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 총 570시간 집합·원격연수

-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탁연수기관 한국교원대학교

6)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광주선광학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운영 실적 평가 실시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2017. 7. 1.)

2) 장애성인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4기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기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교육청(직속기관) 및 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안내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및 성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장애인권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라)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
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나)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라)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18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원 지원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11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원 지원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월 550천원 지원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 월 90천원 내 실비지원
3) 방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적정 배치

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의 연수 등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신·증설 시 교육 환경구축 운영비 지원 : 급당 40,000천원 지원

나)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특수학급 운영비,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다)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비 편성(학교표준교육비의 1% 내외 권장)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자율장학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3) 교권보호 관련 직무연수,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힐링동아리 등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2)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현장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2) '정다운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을 위한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 보급

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및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2)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2)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 실시 확대

바.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2)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 평가 자료집 등 자료 보급

2) 자유학기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발대식 및 연수 실시

3)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성과보고회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진로전담교사 자격연수 실시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1)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2)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캠프 운영 기관 선정·지원 : 2기관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진학을 위한 부모, 교사 대상 설명회 및 진단·평가 실시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 특수학교 1교, 비영리기관 4기관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2)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특수교육자율장학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 추진 방향

1) 장애특성별 특수교육대상자 핵심 역량 강화
2)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통합교육 강화
3)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구축

나. 중점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ㅇ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북부권 특수학교 설립 추진('21. 3월 개교 예정)
     - 특수학교 4학급 증설(대전맹 1, 대전가원 1, 대전원명 1, 대전성세재활 1)
     - 특수학급 14학급 신·증설(유치원 3, 초등학교 8, 중학교 1, 고등학교 2)
2)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ㅇ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ㅇ장애학생 통학 편의제공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

3)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고려

○ 특화된 학교 운영과정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개편 방안 모색

– 학교 형태, 학생 수, 통학시간, 학부모 의견 등 지역 실정과 여건 고려

○ 병원학교, 병원파견학급 등 병원 내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이상 설치교 진로·직업교육 중심교사 추가 배치

※ ('18년) 11명 → ('19년) 13명(2명 증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담당교사 배치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 배치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장애 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확대

○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일반교사 자격·직무 연수 시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 특수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현장연구 운영 활성화 지원

– 교실 수업 개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권장

3) 특수교육 교원 심리상담 지원 노력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연계 강화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 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안내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구축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강화

※ 청각장애학생 수어 통역 및 (원격)속기지원 확대

라.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아를 위한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편성·운영

2) 무상(의무)교육 및 취학 홍보

○ 국가시책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 언론보도 및 매체 활용 홍보
- 홈페이지, 전광판, 라디오 캠페인 등 특수교육 홍보 및 콘텐츠 게재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안내
-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특수교육기관 홍보지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 배부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심사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급별 진단·평가팀 운영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ㅇ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ㅇ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ㅇ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ㅇ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시, 생활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 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마. 특수학교(급) 운영 개선

1)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특수학교 운영 개선
   ㅇ지역 및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ㅇ장애영·유아상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상담지원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 개선
   ㅇ내실 있는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추진
   ㅇ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ㅇ관리자,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협의회 등 학기별 1회 이상 운영(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 가능)
   ㅇ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3)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ㅇ'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ㅇ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및 관련서비스,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조정 권장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 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안내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정보지원

○ 장애유형별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중심 거점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대학생 멘토링 등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운영(초 1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4) 통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비장애학생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한 통합학급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권장

○ 장애인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 모범학생 표창
  – 각급학교별 장애학생 도우미 모범학생 학교장 표창 및 교육감(감) 표창 추천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원) 관리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직무연수(60시간)
  ○ 일반학교 교원(유·초·중·고)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포함 운영

2)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지원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통합교육 연수 참여 권장
  ○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운영 참여 권장

3)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관련 연수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자를 통합학급 담당교사로 우선 배치 권장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학습공동체 권장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지역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특성, 학생·교사·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고등학교 과정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운영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
   ㅇ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따른 교과용도서 활용
   ㅇ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확대
   ㅇ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ㅇ시·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ㅇ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ㅇ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ㅇ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ㅇ2019학년도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학년에 유의하여 운영
   ㅇ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연수
   ㅇ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ㅇ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및 현장 의견 수렴

라.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ㅇ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ㅇ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보호자 참여 등 충분한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 준수
   ㅇ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
      –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 배치 포함)는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대상
   ㅇ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보호자에게 통보

○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정 기한 준수

내 용	기 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출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14일 이내

※ 전학 : 나이스로 학적자료 전송 시, 개별화교육계획 포함하여 전송
※ 진급 : 상급학교에서 하급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 자료 전송 요청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 교육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 지도를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 충남대학교 병원학교 운영(협력학교 : 대전대신초)

○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내실화 도모

ㅇ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보호자 교육 강화

ㅇ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 지도 등 소속학교 교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ㅇ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비치하여 활용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ㅇ건강장애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ㅇ학교복귀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복귀 지원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ㅇ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ㅇ모든 평가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6)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ㅇ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은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원 기능 강화

ㅇ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전문직 및 순회교사 배치 연차적 확대

ㅇ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 인력 맞춤형 연수 확대

ㅇ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

– 경력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등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ㅇ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ㅇ일반학교(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 대상 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 · 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 교육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 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 · 교육 · 보육 · 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Wee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학습, 출석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3)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연수 및 복무관리 강화

4) 병원파견학급 운영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 병원파견학급(유치원 4학급) 운영

다. 중도 · 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 ·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중도 · 중복장애학생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안정실 구축

2) 중도 · 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강화

ㅇ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등과 연계망 구축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ㅇ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모델 보급

ㅇ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이상 확보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ㅇ학생중심의 수업 및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ㅇ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ㅇ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마.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ㅇ장애학생 미래 직업탐색 환경 구축(특 2교)

ㅇ진로·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대전성세재활학교)

ㅇ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진로·직업교육지원

- 자유학기(년)제 진로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에 '진로·직업중심교사' 배치(2학급 이상 학교)

ㅇ중증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급)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 순회교육대상학생 자립(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ㅇ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 협의 활성화

– 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고용 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학생 안전 담보 및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전환

– 직업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적성·흥미·요구 등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6)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지원

○ 학교기업체험센터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현장실습 지원 (특 2교)

7)「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

○ 교내·외 수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에 중점

8)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자립생활·직업재활 및 현장실습 중심의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31학급)

바.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관계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 체험 기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지원

○ 특수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 포함

○ 모든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전면 배치

○ 장애학생의 체력증진 및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원의 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명확한 업무 내용 안내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집합연수)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내용 포함된 직무연수

3)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

○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인권 교육 포함) 실시

아. 방과후 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유치원 방과후학급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

2)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별 학급 수 규모에 따라 배정하고 배정학급 내에서 학교 자체 계획·운영

3) 개별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4)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방학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특 5교, 관계기관 1기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연수, 가정통신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체험, 봉사활동 시간 등 활용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일반학교(유치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범국민 대상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교육·홍보 콘텐츠 전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시 감지체계 운영

– 특수학교(급) 내 신고함 등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상담사) 배치를 통한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정기 현장지원, 특별지원,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로 더봄학생 대상 방문·수시상담 및 거주지 순찰 등 지원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정착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관리자, 교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실화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일반학교(원) 및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내용을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ㅇ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체험 중심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ㅇ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ㅇ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취약지역 CCTV 설치 권장
   - ㅇ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권장

라.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1) 긍정적 행동지원 지원체제 구축
   - ㅇ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 행동중재지원, 연수 등 지원
2) 행동중재지원단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3)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ㅇ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슬로건

공존과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비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3. 교육목표

가.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행정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4. 추진방향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 중점추진과제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행동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취학 절차 등 의무교육 적극 홍보

2)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가) 연령별(만 3~5세)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 26명
나)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 105명
다) 특수교육실무사 및 보조인력 배치 : 실무사 27명, 복무요원 15명
라)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 : 3회
– 의무교육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보급(유치원 198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사무소, 어린이집, 보건소 배부(총 1,232부)
마) 의무교육 지원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특수센터 운영부장)
4)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관리자 전문성 신장

구분	시기	참석인원
학교(유치원) 관리자	2019. 5월	56명
통합학급 담임교사	2019. 5월	65명
특수교사	2019. 4월~5월	31명
학부모	2019. 3월	48명
어린이집 소속 직원	2019. 5월	9명

5)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 2개 유치원
6)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정보교육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필수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학교 견학(체험) 프로그램 : 학교 시설 이용 체험
– 입학 초기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 장애유형 및 특성고려
– 입학 전후 초등학교 입학적응 관련 학부모 교육 : 간담회 등 집합교육
7)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 월 110천원, 사립 월 380천원 이내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가) 구청,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부모 동의하에 실태 파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다) 특수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2)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가)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 인력 배치
   나)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실 운영 및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 9명
3)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가) 일반 교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영아 담당자 연수 및 부모교육 실시
   나)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 연수 3회(2019. 5.), 홍보리플릿 보급
   다)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실태파악 및 홍보
4)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증설 : 20학급(유 3, 초등 5, 중 4, 고 2, 특 6)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 설치율 60.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25	27	95	135	46	56	32	47	198	265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1)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 강화 : 월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안내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 (시센터 26명)
3) 특수교원대상 특수교육핵심영역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강화 연수 : 201명
4) 학교별 직원 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5)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인권 연수 강화 : 연 5시간
6)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증치 : 5명

마.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0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장애학생 인권보호·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2)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3)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4)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집행
   - 유치원 : 400만원 이상
   - 초·중·고등학교 : 500만원 이상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관련 서비스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
   -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 실시
   - 통합학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수 배치

2)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통합학급 관리자(교장) 연 3시간 이상 집합연수 실시(5월)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이수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 교원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249명)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통합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278교 1,662급, 급당 150천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3) 문화예술활동 지원

가) 미술작품 전시회 :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별 1회씩 실시

나) 문화예술 공연단 지원 : 장애학생 문화예술단 '차이'

다) 특수학급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지원

4)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특수학교 4교, 55,000천원

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

(2019. 4. 1 기준)

구분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육통학실무원	사회복무요원
2019년	272	25	272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가) 특수교육실무사

(1) 신규 채용자 :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2)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

(3) 원격연수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원격연수

(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학교 자체 연수(연 2회) 실시

나) 사회복무요원

(1) 신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2) 기존 사회복무요원 : 연 2회 이상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1학기)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고등 3명)

나)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3명, 유치원 12명, 초등 13명, 중등 2명)

다)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6명, 유치원 14명, 초등 7명, 중등 0명)

라) 총 60명(영아 9명, 유치원 26명, 초등 20명, 중등 2명, 고등 3명) 순회교육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배치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	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3	4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3	1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바.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원격수업(화상강의 포함) 이용 학생 지원 : 총 이용자 37명(4. 1. 현재)

2) 병원학교 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 현황		이용학생
		교사	센터순회교사	
다솜병원학교 (설치년도 : 2007년)	울산대학병원 내	1명	2명	14명

3) 건강장애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관리자 연수 실시 : 2019. 4월(14명)

4) 학년말 병원학교 행사 : 다솜병원학교 학예발표회 및 송년의 밤

5) '즐거운 병원학교' 운영 : 단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인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3)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감 승인 후 적용

4)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으로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6)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7)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8) 특수교육자료개발팀 구성을 통한 특수교육 도움 자료 개발·보급

아.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및 개별교육계획서 작성 관련 현황 점검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 지원 및 관리

다)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구성에 대한 연수·컨설팅 실시

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할	특성화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2	•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인권교육 시각장애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5612	• 유 · 초 · 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지체장애 청각장애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 유·초 · 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영·유아

2)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특수 교육지원센터	1	1	·	12	·	·	1	1	1	1	**18**
울산강남특수 교육지원센터	1	1	5	3	2	·	1	1	1	·	**15**

3) 인력 배치

구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치료 지원	심리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2	2	0	1	3	6	·	2	2	**19**
울산강북특수 교육지원센터	·	1	8	1	·	·	16	3	·	1	**30**
울산강남특수 교육지원센터	·	1	4	3	·	·	12	2	·	1	**23**
계	**1**	**4**	**14**	**4**	**1**	**3**	**39**		**2**	**4**	**72**

4)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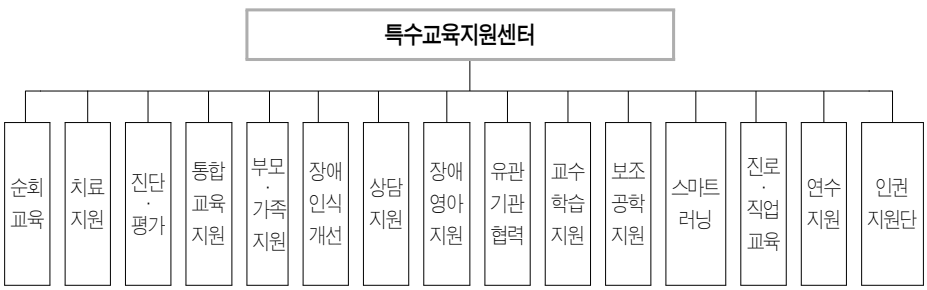

차.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가족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가) 부모상담 WITH 프로그램 운영

– 4월~12월, 1~4기 신청 접수 및 개인별 8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 1기 10명, 2기 10명 상담 실시

– 부모상담 플러스(1~4기) : 1기 10명, 2기 10명 실시 중

나) 가족 상담지원

– 학부모 : 3월~10월, 22교, 30명(개별상담으로 주 1회, 50분, 총 10회기 운영)

2)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기기명	강북·남 센터보유 수량	시센터 보유 수량
보조공학기기 (시각, 지체, 청각, 의사소통장애)	81종 409개	34종 198개
진단·평가 도구	9개 영역 105종	37종 44개
교재·교구	1,351종 1,573개	276종 355개
도서	20종 3,785권	18종 8,657권
직업훈련교구	4종 29개	20종 60개
성교육자료	10종 63개	2종 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2종 168개	12종 18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54종 386개	54종 38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23종 716개	21종 691개

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1) 치료사 현황

(단위 : 명)

기관 / 구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울산강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계
				울산 행복 학교	울산 혜인 학교	태연 학교	메아리 학교	
치료사	6	19	14	4	5	4	4	**56**

2)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실(거점치료실 포함) 현황

구분	운동 재활실	일상생활 재활실	언어 재활실	청능센터	감각, 운동 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센터	-	1	-	-	-	1	2
울산강북특수교육센터	-	-	12	-	8	5	25
울산강남특수교육센터	1	2	2	-	1	1	7
울산혜인학교	1	3	3	-	1	-	8
울산행복학교	1	2	2	-	1	-	6
태 연 학 교	1	1	2	-	1	-	5
메아리학교	1	-	2	1	-	-	4
계	**5**	**9**	**23**	**1**	**12**	**7**	**57**

3) 치료지원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학교 치료지원				병 · 의원 치료지원		계
	운동재활	일상생활 재활	언어재활	심리상담	물리치료	작업치료	
유치원	45	44	5	7	1	102	**99**
초등학교	92	106	154	35	18	92	**490**
중학교	11	116	34	1	1	163	**198**
고등학교	38	68	51	18	2	177	**181**

타.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파.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컨설팅 : 1회

2) 특수학교, 특수학급 컨설팅(교육과정, 개별화교육) : 8회

3) 초 · 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강남 · 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4)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 단위학교 자체계획 및 추진

하.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이용(여가문화체험실, 교육정보실 운영)
   -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2실
   - 활용 :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 활동, 현장학습 등
2)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이얍)
3)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태블릿 PC 지원
4) 2019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 실시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능력평가
   •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21교 61명
   •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직업적 소양, 직업기능평가 등
2)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 중, 고 특수학급(265명)
      • 내용 :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및 특수학급 중심의 직업교육
      • 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급(47학급), 특수학교 전공과(24학급)
      • 내용 : 현장 체험 중심 직업교육 강화
      • 지원액 : 급당 2,000천원 지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별실 대관 운영
      • 대상 : 울산 울주군 특수학급, 6교 7학급 22명
      •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일상생활실, 여가체험실 등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 특수학교(급)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와의 협약, 연계 운영, 민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4)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 대상 :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2교 12명

• 내용 : 바리스타, 계산원, 매장지원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나)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과정 이상)

•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12명

• 내용 :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다) 고등학교과정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5)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가) 지원고용 사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재활사의 업체 개발 내실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사후지도 강화

6)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내용 :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내고장 걷기, 타지역 견학, 단체활동 등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원 지원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 자유학년제 연구학교(울산혜인학교),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울산행복학교)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메아리학교, 태연학교)

2)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컨설팅단' 구성 · 운영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 운영 :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4) 진로체험자원 확충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진로체험처 '꿈길' 등록 안내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 문자해득 등 교육비 지원 : 2개 기관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2) 2020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 7~8월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가)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대피계획 실시
   다)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운영
4)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영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 시설 개선, 재난위험 시설 해소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연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21교
3)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 연수 : 5월, 유·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

4) 장애인식개선 행사 : 미술공모전, 장애인 예술단 지원 등

5)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 시각장애인복지관 암흑카페 장애체험행사 참여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1)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가) 외부기관 개설 강좌 참여 : 79명

나) 개인교육비 지원 : 1,723명

다) 1인 월 120,000원 이내 실비 지급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립58학급 87,000천원, 사립18학급 27,000천원

3) 계절학교 지원 : 설명회 학생 간식비 및 장애학생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운영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 7학급 29명

2)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 3개교 102,457천원

사.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공립 특수학교 2교, 총 4실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순회교육 강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1) 지원방식 : 1시간(40분 수업, 20분 상담)씩 주 2회 수업, 센터 내방 또는 가정 방문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 및 시행

3) 부모상담 및 형제·자매 지원(상담), 교재교구 대여 등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구분	2017	2018	2019	2020
특수학급 수	246	256	265	275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1) 지구별 역량강화 협의회 운영(7월~12월)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시연수(2기) : 12월, 25명

3)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마.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0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 경영평가를 통한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

2) 통합교육지원단 맞춤형 1대1 지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맞춤형 지원

4)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2) 장애학생 1인 1기(技) 지원 강화

3) 학교별 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영화·연극 관람 등 기회 제공 확대

4)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미술대회 및 전시회

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장애학생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 7월, 11월
2) 특수교육 보조인력 근무 여건 개선 :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3)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성교육 및 안전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등) : 신규 사회복부요원 및 기존 대상 직무교육 3회 실시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2)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및 상담 전문성 강화

바.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아.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자.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2) 가족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차.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치료사 활용 및 병·의원을 통한 치료지원비 지원

카.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타.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연 30회
2) 특수학교 유치원 컨설팅 지원 : 연 6회(학기 3회)
3)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4)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 단위학교 자체계획 및 추진

파.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2019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6월) 실시 및 전국대회(9월)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선 제공
2)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강화
3)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고용 실시
   나)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연계 : 바리스타 및 공공기관 내 일자리 직무훈련
   다)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 채용 기업체 현장 견학 연수 실시
   라) 장애학생 취업기관 방문 지도를 통한 취업 후 사후관리
4)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직업교육 실무팀 운영
   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사업체 개발
   라)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2)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3)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담당자 워크숍(7월)
4) 자유학기·학년제 컨실팅 5회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가)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방송통신고 활용한 교육서비스 지원
   나)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홍보

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라) 지역사회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2020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 7~8월 진단평가 실시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연수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2)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및 학교별 안전계획 점검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인식개선 미술공모전 운영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1) 연중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4교, 여름 및 겨울방학 운영비 지원

3) 달팽이학교(여름 및 겨울 방학학교) : 사회복무요원 110명 내외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철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비전 : 꿈 찾고 행복 키우는 세종 특수교육

나. 방향

1)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

2. 세부 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9년 특수학급 15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유치원 3,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증설, 고등학교 2학급

2) 제2 특수학교 설립 계획 추진

– 세종시 제2특수학교 설립 TF 운영 중

※ 7월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개최예정,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 제출 예정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에 정교사 배치 법정 교원 100% 확보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1교)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 운영(1교)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 특수교사 연구회 6팀 운영

※ 전체 특수교사 155명 중 161명 연구회 활동 중 (중복가입 활동 포함)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세종시 관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저경력 교사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학교 요청 시 보조공학기기 컨설팅을 실시 후 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 '19년 세종누리학교는 총 5대의 정규차량 확보 및 운영

※ 세종누리학교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연수 실시

2) 각 급 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특수학교 '우수' 등급 획득)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2018년 세종 각 급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1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지정운영)

※ 벨트형 현장학습, 각종 연수, 통합교육 교수 · 학습 연구 등 2개 유치원 선정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장애유형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지원비" 지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연수 시 통합교육관련 내용 포함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는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실시('19. 7. 4~7. 5.)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15시간) 실시 및 원격연수 권장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보 시 인센티브 제공(전보가산점 부여)

– 통합학급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19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택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6명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지원비" 급당 100만원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중·고 특수학급 학생 6명 이상인 경우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 · 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 · 운영

– 학교에서 요청 시 행동중재지원단 지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 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95명 교육공무직으로 운영

– 특수교육실무사 업무 명확화(특수교육운영계획 연수 시 전달)

–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교육공무직 인사원칙 반영)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강화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향상을 위해 연 2회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상반기 '19. 8월 여름방학 중 1박 2일 예정, 하반기 12월 예정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사회복무요원 5명 세종누리학교, 1명 도담초 배치 운영

–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하여 지원인력 확대 노력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를 위한 안내

– 학교별 개별화지원 팀 협의회 IEP 나이스 등재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건장장애 및 요보호대상자 13명 원격수업지원

※ 초등학교 4명 충남 꿈빛나래학교 지원, 중 · 고 9명 한국방송중고등학교 원격수업지원

2)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1교)

–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1명, 순회교사 6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배치예정(7월)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행동중재 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 언어재활사 5명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3)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 장애학생 성인권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권 교육 등 협업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연 3회 실시 예정)

※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지원(3개 동아리 지원)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운동부 3팀 지원(역도, 육상, 슐런)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수영교실 운영(매주 2회 50명 참가)

– 세종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선수 훈련반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겨울방학 중(1월 ~ 2월) 계절학교 운영 8개영역 92명 참여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연수(연 2회), 학부모홍보연수(연 2회)실시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4) 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중학교 과정에 진로인식 및 탐색 프로그램 적용·확대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직업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비(중·고 1,000천원, 전공과 3,000천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산업체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1교, 관내 특수학급 포함)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참여 확대('18년 7명 → '19년 9명)

– 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2018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5명 취업(21.7%), 전공과 졸업 7명 취업(87.5%)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학생대상 23교, 교직원대상 44개교, 학부모 6개교

2) 교육청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연 3회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2019. 6월까지 11개교 정기지원 실시, 특수학교 통합현장지원 실시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 23교 101시간 3,540명 참가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특수학급 80학급 586회기 실시

– 1 : 1 맞춤형 성인권 보호교육 실시(10명)

4)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단 17명 구성 운영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추진(세종누리학교 9월 예정)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1인당 월 120,000원 방과후 바우처 지원(748,800천원)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129,816천원)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담당 유아특수교사 배치(15명)

3) 방학프로그램 운영(토요 프로그램 포함)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153,000천원)

※ '19. 1. 15~2. 9, 유아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3반, 15명 참여)
※ '19. 1. 15~2. 9, 문화예술 4강좌, 체육 3강좌, 직업체험 1강좌, 총 8강좌 63명 참여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9. 8월 정기진단평가 이후 특수학급 신증설

2) 제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립계획 마련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에 정교사 배치 법정 교원 100% 확보 유지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방학을 이용한 연구회 중심 교사연수 추진(진로직업교육, 수업탐구동아리)
- 행동중재 직무연수 추진(긍정학급훈육 ABA)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워크숍과 연계한 특수교사 힐링연수 추진(10월 예정)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 수요조사 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후 보조공학기기 제공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유치원 및 중, 고 배정 시 정원 산정)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지정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연수 시 통합교육관련 내용 포함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실시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19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실시(10월 중)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택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6명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 · 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 · 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 · 운영

– 학교에서 요청 한 5명에 대한 행동중재지원단 지원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 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19. 9월 특수교육실무사 9명 추가 배치 예정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강화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 하반기 특수교육실무사 직무교육 실시(12월 중)

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를 위한 안내

– 학교별, 권역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9월~10월)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1명, 순회교사 6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1명 배치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정기 진단 평가 실시('19. 8.)

3)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세종 학생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발표회 실시(11월)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제3회 세종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10월 예정)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2) 교육청 단위 컨설팅 실시(9월 예정)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8월 중 실시 예정)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졸업생 직업유치 및 취업현황 조사(10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홍보(20년도 참가 희망교 현황 조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예술단 운영(10교)
2) 교육청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11월 예정)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매월 2~4개교 정기지원 실시, 인권지원단 협의회 및 통합현장지원 실시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1 : 1 맞춤형 성인권 보호교육 실시(10명)

4)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평가 실시(8월 예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9월, 11월)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대상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12월)

라.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2학기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8월)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돌봄전담사 배치(4명)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특수교사 배치 운영

3) 방학프로그램 운영(토요 프로그램 포함)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7월~8월, 초·중등반 운영)

마.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운영 점검(9월)

경기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 진 목 표]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중도 · 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의 내실화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강화 ■ 특수교육 행 · 재정 지원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 · 평가 체계 강화 ■ 방과후 교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1) 특수학교 신설·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원거리 통학 해소,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특수학교 부지 확보 노력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수요 충족

가) 특수학교(급)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조사

3) 복합 특수학급 구축·운영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 필요 학생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2019년 고양, 화성, 광명, 남양주 지역에 복합 특수학급 운영

나) 예술, 체육, 진로·직업 등 특정 분야의 교육수요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고려한 특성화된 특수학급 설치(예 진로와 직업 중점 특수학급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집중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병원 내 병원학교 설립

※ 2018년 전국 최초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개교(화성 브론코기념병원)

나)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유치원 설립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일정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추진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가) 교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나)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확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등 지원
가)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확대 배치 및 역량 강화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및 전보우대
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근무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기준 개선 적용
4)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2. 통합교육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협력체 구성 운영 권장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장·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교육지원청별로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교장·교감 대상 특수(통합)교육 워크숍, 연수
2) 통합학급 담당교사 통합교육 연수 이수 강화 : 재직기간 중 1회 통합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시수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권장
3)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가)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가) 혁신학교의 확대·발전으로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모델 구현
   나) 중점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배움·체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다) 지원 및 평가 :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특수학교 혁신 자료로 활용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내실화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
      –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2·3학년 연계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과 연계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권장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전일제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급당 4명 배치) 등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를 위한 지원

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강화

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활용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 교육 지원 가능

라)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교육청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2)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 기회 확대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단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조치 강화

마) 학교·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

나) 지자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인적 자원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도입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나)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진로교육 집중학기(년) 시범·확대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도모

마)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진로교육 집중학기(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바)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효과성 확대

사)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다)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마)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18. 7. 3.)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

– '20년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각 1명씩 의무 배치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통합체육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반학교 체육교사 연수 강화

나)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운영 확대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연 2회) 철저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된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장애이해·인권 교육 실시 : 신규 배치 3개월 이내에 장애이해·인권교육 포함 교육

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강화

1) 장애인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가)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인증 의무 준수

나)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포함) 확충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미설치 승강기 설치 지원

가) 도내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향상 노력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설치 유도

나) 교육지원청별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다) 각급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바.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운영 관련 지원

가)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유치원 1학급당 3,000천원, 초·중·고 1학급당 2,000천원(목적사업비)

나) **특수학급 급당 경비** : 특수학급지원을 위해 지원되므로 직접적인 특수학급 운영·학습에 우선 편성

다) **특수학교(급) 순회학급 여비** : 가정·시설 등에 설치된 순회학급의 교육을 위한 교사 여비 지원

라)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재교구비 지원** : 특수교육의 내실화 도모 및 교수·학습 여건 조성

마)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기준 면적(66㎡ 이상 교실) 확보, 교내 이동, 세면장·화장실 접근성 등 고려 위치 선정

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운영비** : 공·사립 특수학교 등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임차료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원활한 통학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유대금은 실비 지급,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차액분 지급

나)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및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강화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3) 특수학교 행사 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권장

가) 예능발표회 및 체육행사 등에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통해 특수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내에 장애인권 전문 학생인권옹호관 배치

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지원

3) 장애학생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학치 내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 등 신설·강화

라)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가)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다)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라)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지원

라.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1) 긍정적 행동지원 지원체제 구축

가) 긍정적 행동지원의 연계성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지원 시스템 구축

나)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 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2) 행동지원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지원청별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급)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

나)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3)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여건 마련 및 지원,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마.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바.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9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 교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방과후 자유수강권(꿈e든카드) 운영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및 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늘해랑학교(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학교명	개교예정일	예정지	학급수	비고
용인특수학교(가칭)	2020.03.01.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일원	31	
의왕특수학교(가칭)	2020.03.01.	의왕시 포일동 28	30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2019. 10월 :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 2019. 11월 : 2019 특수교육활동 유공 교원 표창
- 2019. 12월 : 특수학교 수업 나눔 컨퍼런스

2. 통합교육 내실화

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교육 지원시스템 개발·공유와 지원체제 강화

- 2019. 12월 : 통합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편성·운영 도움자료 개발 보급

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내실화

라. 개별화교육계획 Q&A 자료와 매뉴얼 보급으로 계획·실행 내실화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 2019. 8월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연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 ′20년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각 1명씩 의무 배치하고, ′22년까지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 완료 목표
2) 2019 스페셜바리스타 대회 개최(2019 11월)
3) 2019 진로드림 페스티벌(2019. 10월)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2019. 10월 : 2019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클럽 한마당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2019. 8월 : 특수교육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추진
- 2019. 7월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2학기분 지원
- 2019. 12월 : 2020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방안 수립 및 추진

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강화

- 2019. 7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교 예산 지원

바.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 2019. 6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1학기분 지원
- 장애학생 의무교육비지원 : 약 1,020명, 분기당 2,700만원 정도 지원 / 3분기 (9월) 및 4분기(11월) 지원예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 2019 12월 :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 실시 현황 조사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2019. 8월 : 2020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및 연수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2019. 8월 및 12월 : 방학 중 늘해랑학교 운영
- 2019. 9월 : 2차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비 신청
- 2019. 12월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돌봄) 운영 점검

강원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실현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체계 확대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및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급 신증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계
2019. 3. 1	2	4	2	2	3	**13**

2) (가칭) 원주특수학교 개교예정 : 2020. 3. 1.자
(가칭) 동해특수학교 개교예정 : 2021. 3. 1.자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교(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 과밀학급 해소 및 법정정원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특수교원 정원 확대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학급운영비 지원

2)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춘천계성학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정다운학교 운영 : 강원도교육청 4교(초3, 중1)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구 수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확대 및 보조인력 운영지원

1) 특수학교내 심리안정실 구축(7교)
2) 병원학교 2학급 운영 지원 : 강원대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3)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지원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위탁 운영

4) 건강장애학생 원적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연수 : 연 1회

5)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운영(도센터 1 외 특수학교설치)

6)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현황

지원학교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7)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

구분	유급보조인력	장애학생 지원사회복무요원	계	기타	계
2019	313	55	368	–	**345**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1)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연중)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화상수업(꿈사랑학교)과 원격수업(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운영)으로 구성

※ 건강장애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17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	철원 특수교육지원센터	– 상담·홍보활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지원 –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원주특수교육지원센터	횡성특수교육지원센터	
• 강릉특수교육지원센터	평창특수교육지원센터	
• 속초·양양특수교육지원센터	고성·인제 특수교육지원센터	
• 동해특수교육지원센터	삼척특수교육지원센터	
• 태백특수교육지원센터	영월·정선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및 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 권장 (예) 교사 학부모 연수, 학생 행사 등)
• 홍천특수교육지원센터	양구·화천 특수교육지원센터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상시 개방으로 장애인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3)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 순회특수교사 : 43명

– 정원 외 기간제교사(순회교육담당) : 1명

– 치료사 : 53명(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특수학교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비 지원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일반학교 체육교사 연수 강화

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현황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2,239명

– 지원방법 : 치료사지원, 모두사랑카드지원

– 지원방법 : 100천원 × 10개월, 연 1,000천원(1인 기준)
– 치료지원 내용 : 물리 · 작업 · 언어 · 음악 · 미술치료 등

2) 통학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 26대
– 통학비 지원기준 : 대중교통비 기준 1일 학생 2회, 학부모 4회

카.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1)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기준 : 100천원×12개월, 연 1,200천원(1인 기준)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대상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기준 : 1주 이내 운영(여름 · 겨울방학)
– 운영프로그램 :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3. 진로 · 직업교육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1)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 관리 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홍천
–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학교기업, 전공과 등 체험처 활동
– 자유학기제 체험처 공유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자료실 활용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행복한 일자리사업 확대운영 : 특수학교 전공과 61명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화
–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분석, 협력 추진

3) 전문대학 연계 장애학생 및 학부모 취업 · 창업교육 지원

4)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 직업교육 담당 교사 연수 활성화

5)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업체와 MOU 체결
6) 특수학교『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2개교(태백미래학교, 속초청해학교)
7) 장애학생『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효율적 운영 : 영서고등학교
8)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전공과 : 26학급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 거점형으로 4개 센터 운영
9)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강화
10)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1)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특수학교(급) 43명, 산업체 실습 확대
12)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예정 : 2019. 10월 예정, 원주시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연 2회)
- 유·초·중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일반학교 중심(연 2회)
- 일반학교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연 2회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장애학생 인권지원단」설치·운영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안전점검의 날 연계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안전관리 실태점검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특수학교(급) 노후환경개선비 지원
5)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다.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진단·평가 의뢰 안내 홍보 : 17개 지역청,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의무·무상교육 등 홍보 리플렛 배부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 18개팀 운영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본청 1, 지역청 17개 운영
- 기능
  ·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

라.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0만원, 12개월 지원

– 매 학기 초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2) 방학중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 희망하는 특수학교

마.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2) 모든 학교, 기관 대상 장애이해교육 : 연 1 ~ 2회 이상 실시

3)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 개선 행사 실시

4)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 자료 활용

5) 학교급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6)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 및 연수 확대

7) 교원학습공동체, 및 혁신교육연구회(특수)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인원(8명), 지원규모(1인 기준 사립 월 91천원)

2)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내 배치 및 의무교육(통합교육) 이행 철저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학부모, 교사 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 연수 및 부모 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유 · 초 · 중 · 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 · 운영

(단위 : 학급)

추진내용		연차계획		비고
		2019	2020	
특수학급	유	2	2	
	초	4	4	
	중	2	2	
	고	2	2	
	전공과	0	0	
	계	**10**	**12**	

※ 신설 특수학교 별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추진내용		연차계획		비고
		2019	202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일반학급 배치 순회교육대상자 수	153	160	
	지원교사 수	43	43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확대 운영

추진내용		연차계획		비고
		2019	2020	
치료지원	학생 수	2,239	2,250	
	지원예산	1,208,000천원	1,300,000천원	

다. 특수교육 행 · 재정 지원 확대

1)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환경 개선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 · 설비기준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설비 · 비품을 우선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지침에 포함

라.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

1) 특수교육대상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사회 참여 확대

2)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

3. 진로직업교육 지원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우수업체·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계운영,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 매년 진로직업교육 관련 컨설팅을 통해 자유학년제 및 지역과 연계한 직업체험처로 운영

2)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3)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운영의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특성화하여 전공과 운영

4)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1)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교정을 두도록 지도

2) 지역교육청 설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지원 및 연수 실시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나. 장애학생 체육 · 문화 · 예술활동 지원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체육 · 문화 · 예술활동 지원

다.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라.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1) 통합교육 내실화 및 통합학급 교수 –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강화

2) 통합학급관리자,행정직원 장애이해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워크숍 실시

마. 공립특수학교(가칭 원주특수학교, 동해특수학교) 신설추진

1) (가칭)원주특수학교 – 2020. 3. 1.자 개교 예정

2) (가칭)동해특수학교 – 2021. 3. 1.자 개교 예정

구분	유		초		중		고		전공		합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가칭)원주 특수학교	1	4	8	48	7	42	7	49	5	42	**28**	**203**
(가칭)동해 특수학교	1	4	7	42	4	24	5	35	2	24	**19**	**129**

□ 설립규모 : (가칭)원주특수학교(28학급, 203명) / (가칭)동해특수학교(19학급, 129명)

□ 부지위치 : (가칭) 원주특수학교 – 원주시 봉대길 33[(구) 봉대초 부지]
(가칭) 동해특수학교 – 동해시 부곡5길 22 일원

□ 총사업비

구분	부지 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	계
원주특수학교	500,000	1,198,160	23,912,719	726,056	179,638	2,390,000	**28,906,573**
동해특수학교	700,000	1,395,992	22,415,467	778,746	44,831	1,857,000	**27,192,036**

충청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충북특수교육 지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충북특수교육의 목표

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충북특수교육 중점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급 신증설 : 27학급(유 9, 초 14 중 4)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추진(부지 선정 등)

나)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 특수학교 설립 타당성 검증 및 특수학교(급) 교육시설 모델창출을 위한 위탁연구 실시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추가 배치

나) 읍·면 단위 학교에 정교사 우선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과정 교육연구회 운영 : 1팀, 16명
-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 특수학교 10교 및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12개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국립특수교육원)

다) 특수교육교원 성장과정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98명, 충북특수교육원)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연수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학생 12,54명 / 보호자 1,014명 / 1,189백만원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지원 : 특수학교 34대, 특수학급(전공과) 2대
-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승하차실무사 배치 : 45명

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을 통한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3)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으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사항 준수·이행

2.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3교, 9백만원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 9교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확대

나) 통합교육거점기관 유치원 3원(15백만원), 센터 3기관(20백만원)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3센터, 30백만원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청각 특성화 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등 확대 운영 : 2018년 2센터 → 2019년 3센터, 40백만원
- 특성화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정다운학교'(목도초) 운영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학교 관리자 집합 연수 : 437명, 충북특수교육원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 69명, 충북특수교육원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구성(20명 내외)
나) 충북특수교육 교육과정 각론 개정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연구학교 4교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주 2회 이상 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대표교사 8시간 이내, 순회교사 16시간 내외)
2) 순회교육 실시 : 158명 지원(가정 30명, 시설 1명, 병원 3명, 일반학교 124명)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팀 구성 운영
4) 심리안정실 구축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지원 : 6교, 90백만원
5)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교, 60백만원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관리 강화
가) 현장 맞춤의 다양한 보조인력 형태 운영 지원 : 632명
• 특수교육실무사 385명, 자원봉사자 177명, 사회복무요원 70명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속적 확대 지원 추진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 권역별 4회 실시
나) 저경력 특수교육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 1회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 3개월 이내 장애이해·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실시
나)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4) 유급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3)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2) 종합병원학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1교, 7백만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전담 전문직 3명 확대배치, 순회교사 3명 추가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 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4센터, 10교, 88백만원

2) 통합체육 연구학교(용담초) 운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 협력 모형 개발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 2회, 충북특수교육원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청주혜화) 운영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보급
   나) 희망교(6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한 특수학교 진로교육 강화
   다) 거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및 교원 · 학부모 인식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자유학기 학년제 프로그램 구성 등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자료 활용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다)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확대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전공과 11교 운영 : 특수학교 10교, 일반학교 1교
   나) 학교기업 3교 운영 : 청주맹학교, 꽃동네학교, 청주성신학교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교 운영 : 청주농고, 제천제일고, 충북산업과학고
   라) 체험중심 안전한 진로직업교육 환경조성 : 청주맹학교, 청암학교
   마) 진로직업 중점교육과정 운영 :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연 4회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 · 직업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취업 준비과정인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나)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 점검단 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등 위탁교육 확대
라)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취업지원 서비스 :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체험 등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가)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현장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나) 유관기관 연계하여 졸업 후 3년까지 사후 관리

다. 특수교육대상자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1) 장애학생 전환교육 T/F팀 구성 운영
가) 전환교육팀 구성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
2) 장애학생 전환교육
가) 전공과 학생 직업능력평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나)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관련기관의 원스톱 취업지원 운영
3) 장애학생 평생교육 연계 지원
가) 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 연계방안 모색
나)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의 업무 협조 및 서비스 지원 연계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84교, 162학급
3) 기관별 직장교육으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월 1회 이상 정기지원을 통한 학교별 인권보호 현장 점검 및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긍정적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3센터, 15백만원
   나) '긍정적행동지원팀'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및 지원 : 1교
   다) 문제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 : 10교, 80백만원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지원 계획 수립하고 가정 연계를 통한 행동중재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안전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홍보 및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매뉴얼을 준수 등 선정·배치 절차 강화
4)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마. 방과후 교육·돌봄 및 치료지원 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가)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 44학급(특수학교 30학급, 특수학급 14학급) 운영
- 종일반 1실당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나)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1인당 12만원 이내로 방과후 교육비 지원

2) 치료지원

가)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팀 : 전담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나) 충북특수교육원 전문직 배치 :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직 배치 : 전담 장학관 1명, 전담 장학사 3명, 겸임 장학사 7명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유·초·중 450만원, 고 600만원

나)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운영

3)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가)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연 2회(1월, 7월)

나)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운영 : 정기회(4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Ⅲ 향후 추진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노력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교육대상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나)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8월, 1월)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다)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단위 : 교, 급)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특수학교수	0	0	0	1	0	
특수학급수	27	16	11	10	10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 프로젝트 수업실천 국제연수(6월 ~ 8월 중)

순	연수내용	연수국	기간	인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독일	10일	4명
2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대만	10일	4명
3	장애학생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 및 지원	미국	10일	4명
4	오르프 지도방법 탐구	오스트리아	10일	4명
5	특수교육 내실화 및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캐나다	10일	4명

나)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힐링 연수 운영

- 개인상담, 집단상담, 힐링 연수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다)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한 교권 및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법률 상담 등 지원
-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교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심층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구축

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구축

•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및 대여 안내 (충북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배너 활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강화 (시각, 청각, 학습, 의사소통, 이동 및 보행, 자세유지, 일상생활 등)

2)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에 맞는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점검

2.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3) '긍정적행동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4)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중점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나) 정다운학교 운영 : 1교, 연구학교(목도초) 운영

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라) 충북형 통합교육중점학교(정다운학교) 확대 운영('20~'22)

5) 장애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통합교육운영비 지원 : 1교당 150만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나) 일반학교 관리자 집합연수 참여율을 높이고 집합연수 6시간으로 확대
다)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참여 권장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 확대 노력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문화예술 · 체육 동아리 운영
• 특수학교 10교, 특수교육지원센터 10센터로 지원 확대
3)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확대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 · 직업교육강화
가)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장애인일자리 참여 : 81명 예정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더센터와 연계한 협조체계 구축
2)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가) 성신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고3, 전공과 재학생
나) 발달장애영역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3)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休' 운영
가)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나)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가) 참여 학교 :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청주성신학교
나) 진로 · 직업체험의 날 운영 : 11월 중, 특수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청주농업고 협력 7기관, 충북산업과학고 협력 5기관, 제천제일고 : 협력 6기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확대 운영
   가) 일반학교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학교 방문교육 실시
2) 교육기관 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매월 1교 이상 방문)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 각 2회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실시 : 센터별 1회 이상
   다) 특수학교 대상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충북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 연차적 추진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육환경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 ~ '22)
   나) 특수학급 설치연도, 통합교육 환경(편의성), 특수학급 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 ~ '22)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장학 운영으로 역량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출발선이 평등한
맞춤 특수교육 실현

목적

생애 단계별 특수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과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육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2.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카.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내실화
타. 특수교육 장학 활성화

3. 진로·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4.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 구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 학급 해소
   나)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 34학급(특수학급 31학급, 특수학교 3학급)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라)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운영
2) 특수학교(급) 학생수 법정 정원 준수, 과밀학급 지원
   가)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나)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3)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 : 학생 4명 당 교사 1명
4) 유치원와 일반 공·사립학교 설립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5)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4조 제2항 기준에 의한 설비·비품 우선 확보
   나)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6) 특수학급 재정 지원
   가)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기준
      (1) 유치원 : 2명 이하 기본운영비 2,000,000원 + 초과 1명당 500,000원
      (2) 초·중·고등학교 : 3명 이하 기본운영비 2,000,000원 + 초과 1명당 500,000원
   나)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 학급당 연 30만원 이상 편성 권장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가)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수업전문성 향상 등 일반교과 교육 연수 참여 권장
   나) 특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와 현장연구 활동 등 적극 권장

2) 특수교육 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 중 · 고등학교, 전공과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직무연수 기회 확대

3)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가) 특수학교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 참여와 전달 연수를 통해 교내 인권교육 등 선도적 역할 담당

나) 특수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 참여

다) 특수교사 대상 매년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이수 권장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특수학급 담당 교원 부장교사 임용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교원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장교사' 임용 권장

5)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다)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 장애인권교육 실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과 인근 특수학급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관리 등) 컨설팅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마)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설치교 관리자의 통합학급 운영·관리 책무성 강화

가) 교육지원청 통합교육 연수 연 1회 이상 추진

나)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연 3시간 이상 집합연수(워크숍) 실시

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연수 과정(집합, 원격)에 참여 적극 권장

라)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

마)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누적치 인정) : 미이수자 연수 이수 적극 권장

3)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근 특수학교(급) 교사의 순회교육 실시

나) 시각장애학생 점자·확대교과서 적기 보급

다) 청각장애학생 수화통역 지원, FM 송수신기 보급

라)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과 장애학생 교과지도 능력 강화

4)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정 배치와 일반학생 수 감축

가) 통합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 편중 배치 지양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통합학급의 급당 인원수 감축 권장

5)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6)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나) 통합교육과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참여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 권장
   나) 통합교육 원격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연중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직무연수(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연 2회 추진)
3)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교육 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우수 학습 공동체 발굴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1)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 2019 충청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다) 특수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라) 2019학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학년 유의 운영
   마)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바) 특수교육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2)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수학교(급)와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운영

라)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재편성 : 통합학급 시간 배당 기준 준수

마)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보완자료 활용

바)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특수학급 시간표 우선 작성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 활용

가) 특수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나) 특수학급의 학교급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자료를 수정 적용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6) '행복나눔학교(충남형 혁신학교)' 운영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나)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가)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성교육, 인권보호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나) 학기 초 순회교육 대상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 교사 연수 지역별 추진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나) 학교가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

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 등 필요한 지원 실시

라) 단위 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마)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민원 발생 예방

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실시

마)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해당 요원의 전공·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보조인력 담당부서와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권장

바) 자원봉사자 운영 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상해보험 가입 등) 마련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가) 신규 채용인력의 경우 연 3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의무 실시(교육지원청, 학교 단위 연수 포함)

나) 기 배치된 보조인력의 경우, 직무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별 연 1회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장

다)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수 또는 정기 협의회 실시 권장

라) 임용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의무연수 이수 여부,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등 평가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과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라)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마)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 교원의 참여를 통한 역할 확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교육과정,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화상수업, 온라인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다)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라)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 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보호자 교육 강화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나)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운영 : 3교(단국대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아람메디컬병원)

다) 원격수업(꿈빛나래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 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4) 건강장애학생 학적·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다)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교육청별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 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팀 구성(장학관, 장학사, 특수교사 2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특수교사 7명, 행정직원, 전문상담·통합교육 지원 인력)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거점지원센터 운영

거점영역	거점지원센터	주요 추진 내용
시·청각 장애	아산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학습기자재, 교수·학습지원
자유학기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진로체험지원 전산망과 연계한 체험처 발굴, 관리 지원, 체험활동 현장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체육	천안, 서산, 홍성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 영·유아 교육	천안, 아산, 논산계룡, 금산, 홍성, 예산	●장애영아학급 운영, 조기 발견, 홍보 ●장애영유아 진단·평가, 순회교육, 상담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 제공,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라)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마)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바) 장애영역별 전문성 있는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특수학교를 통합교육 거점지원센터로 지정·운영

4)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
   가) 지역별 특성·여건에 적합한 치료지원 운영계획 수립·시행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우선 지원
   다)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치료지원 내실화 인력 활용
   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실시
5) 가족지원
   가) 학교, 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강화
   다)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부모회 6단체(충남, 서산, 계룡, 당진, 서천, 홍성)
   라) 대학 연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2교
6) 맞춤형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등 지원
   가)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독서확대기 등) 구비, 각급학교 대여 활용, 대여 시 사용 연수 지원
   다) 학교 진급 또는 전학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반납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관리 철저
7) 통학편의 지원
   가) 통학차량 지원 확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편의 제공
   나) 통학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 제공
   다) 통학 차량 지도원 배치 : 특수학교·통합 유치원 36명
   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마) 개별화교육계획 내에 통학지도 계획수립으로 사회적응능력 신장 강화
8)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청능훈련, 보행훈련 등의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국가자격 또는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차.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과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나)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다) 특수학교(급)별 예술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라)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문화 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인력 배치,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다)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특수학교「학교스포츠클럽」운영 강화
   가) 장애영역·특성을 고려한 단위학교별 특색체육 종목 선정·운영
   나) 특수학교별 장애학생의 체력증진,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학교스포츠클럽 활동」운영계획 수립

카.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기기 지원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다) 특수교육대상자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 모형 적용과 관련 자료 보급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가)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사항 점검·컨설팅 실시
   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정보화 관련 준수 사항과 조치 방안 안내
   다) 특수교육대상자 정보화기기 활용·정보통신 윤리 교육 실시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가)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나)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

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자·음성자료 지원
라)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방송 통역 서비스 제공
마) 재택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4) 「장애학생 스마트교육」 지원 : 스마트교육을 위한 태블릿 PC 보급, 환경 구축, 교육과정 활용 자료 보급, 특수학교 e스포츠실 구축

5)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2019. 6월)

타. 특수교육 장학 활성화

1)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 강화
가) 도교육청 장학 추진 계획, 교육지원청 장학 계획에 따라 지원
나) 특수학교(급)의 장애유형,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원
다)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라) 특수학교 경영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특수교육 행복나눔 장학 실시
가) 학교 자체 행복나눔 장학 계획 수립 시행 : 학교 특성·여건을 분석하여 행복나눔장학 주제 선정
나) 교실의 공공성에 기반한 자발적 수업공개 활성화
다) 단위학교 자율적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 장애맞춤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장학, 동료장학 실시

3) 특수교육 행복지원 장학 운영
가) 학교 요청 또는 필요시 정책 안내와 지원 중심의 수시 장학 활동 전개
나) 행복지원 장학 지원단 구성·운영
다)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추진 상황 등 참여 중심의 장학 지원
라) 지원 장학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특수교육 실현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확대 운영 지원
가) 장애특성·정도 고려, 교원·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안정적 정착 유도
나) 학생들의 창의, 인성, 자기관리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함양 중심 추진

2)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운영
   가)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 특수학교 7교 전체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구성·운영
   다) 교육지원청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라)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연구회' 등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험활동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마) 안전한 체험활동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관리
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가)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1~3학년 중 한 학년 두 학기를 정하여 운영
   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 운영
   라)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기반, 221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며,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3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102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마) 1학생 1문화·예술 활동, 1체육 활동 참여
   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과정·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사) 교과 시수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아)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교는 생활기능영역과 연계, 221시간 이상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136시간 이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하나, 교과(군)별 시수는 50% 이상 확보
4)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가) 교사연구회 등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방법 적용
   다)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활용, 자유학기 활동 운영 프로그램 구안 적용

라) 학교장, 핵심 교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 운영, 컨설팅 추진

마) 학교별 자유학년제 학부모 지원단 구성·운영, 학부모 대상 교육 또는 공개수업 1회 실시

5)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모니터링, 학교 주관 체험처 활용 결과의 누적·통계 관리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과 질 관리 효율화

다)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특성화

가) 초·중학교 과정에 집중학년(기)제 운영 도입·확대 등을 통한 진로인식·탐색 기능 강화

나)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 운영

라) 직업교육과정 작성 시, 지역사회 사업체 분포, 시대·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직종·직무 분석, 학생 분석 등 취업과 연계되는 현장 공감 내용으로 구성

마) 직업교육 중점 연구학교 운영

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의 활동 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아) 장애학생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성과지표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 성과 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특수교육(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다)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취업지원 방안 마련

4)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또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다)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가)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나)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프라 구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자가 교육기관 소속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기회 확대
다)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라)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1)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센터중심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3) 장애이해 ·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가) 학교별 다양한 장애영역의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실시
나)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다) 장애인 초청 장애이해 토크콘서트, 수업전개 등
라) 통합캠프, 통합교육 연찬회 등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마) 장애인식개선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시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5개단 운영(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14)
나)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다)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라) 매월 1회 이상 일반 ·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마)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 (성)폭력 피해 예방, 인권보호 강화
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 조력 기능 포함
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담인력(상담사) 배치 · 운영 : 2명(천안 1, 아산 1)
2)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조기 대처 지원
3) 더봄학생(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인권침해 예방 관리, 지원 강화
가)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
나)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지원 계획 수립 · 운영
다)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가정 – 학교 – 경찰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가)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점검 강화
4) 장애학생 통학안전 지원
   가) 취약지역 통학학생 실태 파악 : 농로, 산길, 골목길 등
   나) 경찰서와 연계한 통학시간대 순찰 강화 통학지원 '길벗 동행 서비스'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과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교육적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태 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과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다) 진단·평가 담당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실시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마. 방과후 교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돌봄 지원체제 강화

가) 유치원 방과후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

나)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 : 7개 특수학교 21명

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종일반 운영

라)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2) 토요 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하여 '나홀로 가정' 장애학생 돌봄 지원 강화

다) 토요 프로그램 운영 홍보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발행 등

라) 학교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리 철저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과 역량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장학관 · 장학사 배치, 지원 기능 강화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다) 교육과정 연수 등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나) 특수학급 교재 · 교구 구입,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비,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등 목적성 예산 지원

다)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

라)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3교 설립 추진

가) 직업중점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천안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고+전공과 12학급

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당진 가칭 '당진나래학교', 초 + 중 + 고 + 전공과 17학급

다) 장애영역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예산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28학급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나) 충남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교원 500여 명, 2019. 7월 중 실시

다)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1) 각급학교 안전·편의시설 확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나) 장애학생 안전·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이행 철저

라)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도모

마)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2.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가)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장애

이해 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나) 기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 인권교육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가) 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 · 교육 · 보육 · 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나) 주민센터, 시 · 군 · 구별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등 교육기부 인력 활용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 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노력

나) 통합체육 연구학교 운영 : 1교(수촌초)

다) 장애 · 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라)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4시간 이상 실시 의무(중증 장애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경우 예외 가능)

마)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 · 육성

2) 제7회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2019. 9월)

3. 진로 ·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 발전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 · 체험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지자체, 대학 등과의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다) 거점센터 –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라)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가)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나) 특수학교(급)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예회 등

다) 장애인식 변화 조사 : 설문조사, 감상문 작성 등

라) 장애 이해 주간 운영 : 모든 교직원·학부모 대상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마)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인권보호 직무연수' 운영 : 15시간, 연 4회

2)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기·적성 계발과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 장애개선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나) 꿈과 끼를 키우고, 발달 요구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운영

다) 장애학생 특기·적성, 문화·예술·체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2)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가)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다양화

나) 장애특성, 학부모의 요구, 지역실정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다)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라) 체육·문화·예술 등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마) 학생 이동, 운영시간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전라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 추진 목표

가.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2. 중점 추진 과제

가.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기관 확충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7) 장애학생 안전 강화

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순회교육 지원 강화
4)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6) 각급학교의 장애인 등에 대한 적정한 편의제공 강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마.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3) 유아무상 교육 지원

4) 방과후학교 지원

5)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요보호학생) 교육 지원

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1) 유초중고 특수학급 자율선택과제 운영 : 50학급(급당 1,500천원) 지원

2)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실시(싱가포르 : 2회)

3)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9교

4)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의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30명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대면 6회+서면 12회)

➡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실시

– 일시 : 2019. 1. 20.(월).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

– 특수학교(급)교사, 전문직, 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등 150명, 4시간

➡ 2019 상반기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실시

– 일시 : 2019. 5. 13.(월) ~ 5.17.(금),싱가포르 3박 5일

– 대상 : 장애학생과 보호자 15팀 30명, 인솔자 6명 총 36명

➡ 2019 전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안내

회차	회의 일정	장소	협의내용	비고
1	4.19.(금) 10 : 00~16 : 00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	고등학교 재학생 신규 선정배치와 재배치 등	서면심사 메일과 메신저 활용
2	7.12.(금) 10 : 00~16 : 00			
3	9.19.(목) ~ 20.(금)		2019 중3학년 2020고등학교 선정배치 등	
4	10. 18.(금) 10 : 00~16 : 00			
5	11.15.(금)10 : 00~16 : 00		고등학교 재학생 신규 선정배치와 재배치 등	
6	2020.2.7.(금)10 : 00~16 : 00			

나. 특수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1)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19. 2. 21.월(150명)

2) 특수교육지원단과 신규저경력 교사 역량 강화 연수 : 연 2회

> ◘ 2019 특수교육지원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 일시 : 2019. 6. 14.(목). ~ 15.(금), 1박 2일, 왕의지밀 사임당홀 외 2곳
> – 대상 : 2019특수교육지원단. 행복동행 참여 교사. 현장교사 신청자 등 110명

3)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함양 국외 연수 : 10명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6,000천원)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운영

1) 장애학생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10교), 특수교육지원센터(15개소)

2) 문화예술거점기관 운영 : 6기관

3) 장애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조성 : 1개소(100백만원)

4) 장애학생 e-페스티벌(5월, 9월 – 15,000천원)

마. 특수학교(급) 교실환경 개선 지원 : 30학급(600,000천원)

2. 2019학년도 특수교육기관 확충

가. 2019학년도 소요학급 및 학생 수 현황

(단위 : 학급, 명)

급별	2019학년도 특수학급			비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22	28	91	8
초등학교	226	245	936	9
중학교	71	84	344	
고등학교	38	61	330	
특수학교	10	225	1,162	
합 계	**367**	**643**	**2,863**	**17**

나.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소요학급 및 학생수 비교증감 현황

(단위 : 학급, 명)

구분		2018학년도(A)		2019학년도(B)		증감(B-A)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교	유치원	22	78	28	91	6	13
	초등학교	235	932	245	936	10	4
	중학교	83	359	84	344	1	△15
	고등학교	59	332	61	330	2	△ 2
	소계	399	1,701	418	1,701	19	-
특수학급	영아반	3	12	2	8	△1	△ 4
	유치부	14	54	16	59	2	5
	초등부	66	245	66	252	-	7
	중등부	55	252	52	229	△3	△23
	고등부	60	377	59	344	△1	△33
	전공과	27	222	30	270	3	48
	소계	**225**	**1,162**	**225**	**1,162**	-	-

3.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위탁운영+집합연수) : 300명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 : 70학급(급당1,000천원)

다.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교(원)장, 교(원)감 연수 실시 : 2회(4월-회)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일시	2019. 4. 4. 목	2019. 4. 12. 금
대상	모든 학교 교(원)장,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담당전문직	모든 학교 교(원)감
연수 내용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주회(김지희 기타리스트 공연) ▪ 정다운 학교 운영 사례 발표(전주서중 교장 손주현)	

라.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장애이해교실 : 15개 교육지원청

마. 장애영유아통합교육거점 운영 : 6기관

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8교)

순번	활동주제명	학교명	담당자
1	마음이 통(通)하는 행복한 통합교육	전주인봉초등학교	설성정
2	통합교육 활성화	서신초등학교(정읍)	손지은
3	생태놀이와 비폭력대화로 만들어가는 정다운 학급	한별고등학교	이은경
4	책이랑 놀며 배우는 함께 사는 세상	백운초등학교	유선경
5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만드는 둥근 세상	전주덕일중학교	안숙현
6	P. E. S. 협력적 접근을 통한 통합교육 사례 연구	전주하가초등학교	최은영
7	3way 통합교육	순창제일고등학교	이세연
8	통합교육 Never? Ever!	정읍동초등학교	우혜련

사. 모든 학교 학생 2회, 교직원 1회, 장애이해 교육 의무 실시

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출입구(문) 157교, 점자블록 60교, 유도 및 안내설비 65교, 승강기 5교

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 6기관(30,000천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신축) : 임실, 진안 2개소

나. 장애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15개 센터

다.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 4개소(전북맹아학교와 전주, 군산, 익산 교육지원청)

라.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3개소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3회

바.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 10개 기관(40,000천원)

사. 장애학생 인권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 3팀(4,500천원)

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보급 : 15명(30,000천원),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20,000천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6교(60,000천원), 장애학생 긍정적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 10기관(50,000천원)

5. 특수교육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가.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직업실습생 운영 : 75명(307,500천원)

나. 특수학교(급) 진로 · 직업교육 운영 지원 : 100,000천원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1교 운영 지원 : 전주선화학교(21,000천원)

라.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2교(40,000천원)

마. 진로 · 직업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지원 : 10팀(15,000천원)

바. 지역사회연계 맞춤형 진로 ·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개 교육지원청 (50,000천원)

사.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발달장애, 서울)개최 : 10. 1(화) ~ 2(수)

6.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2,570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250명

다. 특수교육대상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무상교육비 지원 : 72명(279,384천원)
- 특수학교(급) 유치원 종일반 운영 : 37학급(3,700,800천원)

라. 특수학교(급)유치원 종일반 지원 : 31학급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 2,530명

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위탁운영 및 원격수업 수강 지원 : 3기관 (268,800천원)

- 전북대한누리병원학교, 꿈사랑학교(초 · 중 · 고과정), 한국교육개발원(중 · 고과정)

> ◘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요보호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학급 담임(담당)교사 연수
> - 일시 : 2019. 4. 2.(화).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
> - 담당(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 150명, 3시간

사.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 394명

-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연수 운영 : 연 3회

Ⅲ 향후 추진계획

1. **신규·저경력 특수교사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지원단 '행복동행' 운영 및 특수교육현장 컨설팅** : 연중

2. **2019 하반기 특수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 11. 8.(금) ~ 9.(토)

3. **특수교육전문가 국외 실시(독일과 덴마크)** : 11월 중 8명

4. **하반기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해외연수 실시** : 10.28(월) ~ 11.1.(금), 36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연수** : 6.28.(금), 150명

6. **특수교육 하루장터 운영** : 9월 중 450명

7. **장애 영·유아교육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 3회(7월, 9월, 12월)

8.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개최** : 10. 1.(화) ~ 2.(수), 서울시교육청주최
   : 2019학년도 발달장애영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분과로 참여

9. **특수교육지도사 워크숍** : 8월 중, 80명

10.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6월 ~ 12월
    -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1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참가** : 9. 3.(화) ~ 9. 4.(수)

12.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7 ~ 12월

1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강화** : 연중

14. **특수행정실무사 및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2학기 37명) 실습 운영**

15.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연중

1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및 특별모니터링 실시** : 연중

17. **2020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개발 2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 10월 중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 3회 (7월, 9월, 11월)
    -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 중

전라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목표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가) 2018년도 대비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현황

구분 \ 연도	2018	2019	비고
특수학급	550	579	29학급 증
특수학교	186	192	6학급 증

나) 특수학교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동부권(광양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설계 등 추진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기반 마련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라)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교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다) 특수교육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찬회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운영 : 2019. 8. 14.(수) 예정
-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과정 연수 운영
-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연수(950명, 3월~12월)

라)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별 신규 특수교육 교원과 유경력 특수교육 교원 간 멘토링제 운영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실시

바)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의 평가조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구축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나)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다) 관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2019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6개원 운영

3) 일반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속적 지원

4)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정 운영

5) 특수 · 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공유,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 · 운영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1교(화순오성초) 운영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나)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다)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운영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18호(2016.11.28.)] 등을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학교(급)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일반학급,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학생 : 해당학교 학년 편제와 시간 배당 적용 하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가능
- 순회교육 대상학생 : 해당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알맞게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가)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나)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 교과별 단원지도 계획 활용

5)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료 활용

가)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1.)

나)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5~6학년 교과별 단원지도 계획 탑재(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특수교육지원센터/자료실)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학급 운영 : 재택 장애학생 순회교육, 복지시설 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1교 순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4) 순회교육 담당 교원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실시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다)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및 기준 마련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범죄이력 조사 철저

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예방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연 2회) 철저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의 연수 실시(원격연수 포함)

나) 지원대상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연수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다)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시스템 작성 권장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확대

나)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행·재정 지원

나) 병원학교 설치·운영

병원학교명	설치 장소	운영교	개설일자
여미사랑병원학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오성초	2006. 3. 1.
		화순제일중	2007. 3. 1.
느티나무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나주이화학교 (남평중)	2017. 3. 1. (2011. 3.~2017. 2.)

다) 원격수업 운영

–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위탁교육 : 초등학생 및 중·고생 일부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격수업시스템 이용 : 중·고생(중 19, 고 44 교과 운영)

라)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요보호학생)은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 지원 가능

2)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병원학교 강사, 보호자 교육 강화

나) 보건실, 도서관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3)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나) 병원학교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다)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 및 평가담당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 총괄 및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내실화 및 실적 관리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라)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주민센터, 시·군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나)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다) Wee센터, 진로체험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라) 특수교육 관련 홍보전략 수립과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유관기관에 배부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나) 특수학교(초등학생 전체) 수영 실기 교육 지원

3)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 실시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가) 치료지원 운영 실태조사, 지역여건 및 장애영역 등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 전담인력), 특수학교(치료사 채용),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실시 가능

2) 가족지원

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 조력자인 가족에 대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체제 구축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가)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신장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학습 편의성 및 성과 제고

나) 시 ·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목포, 순천, 나주)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확대 : 특수학교 통학차량 25대, 통학차량실무사 25명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보호자 통학비 지원 : 원거리 통학생 1일 2회, 동행 보호자 4회, 수업일수 기준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 강화

5)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국가자격 또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과 연계 강화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3)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5)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7)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8)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및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에 대한 대학 정보 제공 확대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마련
3) 지역실정을 감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교육기관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의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나)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 민원 / 전남청렴신문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강화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및 장애학생 및 교사 표집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라)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마)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나) 일반학생 성교육 시 장애학생에 대한 성추행 예방교육 병행 실시

다)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철저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가) 교육현장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다)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3)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5)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나) 교육지원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가) 지원대상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영유아

나) 운영 : 주 15시간 미만, 영유아 방과후과정의 취지와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보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계획 수립 운영

2) 특수교육 초등 보육교실 운영

가) 지원대상 : 특수학교 초등(중학)부, 초등 특수학급 재학생 중 희망자

나) 운영 : 주 15시간 미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시간 이용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가) 분야 :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치료지원 등 학생, 학부모의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나)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통합교육과 함께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권장

다) 교외 방과후 활동 지원 : 치료지원, 소질·적성 계발 관련 지원(교과관련 학습 제외)

4) 돌봄 지원체제 강화(토요 프로그램 포함)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토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방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나) 학생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철저

다) 예산(학교운영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유관 기관 적극 활용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시설 · 설비 확충 지원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 · 설비 확충 지원

나)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66㎡) 확보

2) 특수학급 재정 지원

가) 특수학급 시설 · 설비, 교재 · 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 · 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 · 집행 지침에 포함

나)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조기에 단위학교에 배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가)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나)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 · 증설 추진

나. 특수학교(급)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 운영

라. 중도 · 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 기회 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교원 자율연구회 확대 운영

2)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활용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센터 운영 내실화

라. 학교 단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마.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연수 강화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승진 및 전보가산점 부여,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등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연계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3)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자원 발굴 및 특수학교(급) 제공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
3)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제 구축
4)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7)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8)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및 협력적 분위기 확산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2)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3) 예방활동 위주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다. 장애학생 체험형 안전 교육 활동을 통한 안전 강화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마.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재정 지원으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

2. 기본방침

가.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나. 교원의 통합·특수교육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다.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3.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신·증설 확대

1) 목적

가)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나) 합리적인 기초 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장기 수용계획 마련

다)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을 운영

라)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목적

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사 배치 개선

나)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다)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목적

가)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2) 추진 내용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목적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및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 자원 활용

나)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다)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목적

가)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2) 추진 내용

가)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지원, 신규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조직 ·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목적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추진 내용

가)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직업중점 학교 운영 - 경산자인학교(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18~19')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 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추진 내용

가)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다) 순회교육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목적

가)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2) 추진 내용

가)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나) 중도 · 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 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라)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2) 추진 내용

가) 치료지원

나) 가족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라) 통학지원

마)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목적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2) 추진 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나) 다양한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제공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목적

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나)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2) 추진 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다)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라)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목적

가)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나)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다) 권역별 기능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4개 기관)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목적

가)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발전

1) 목적

가) 학생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다) 진로체험지원전상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라)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목적

가)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강화

나)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환 성과 도모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개 학급)

나)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마)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1) 목적

가) 유·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나) 범도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목적

가)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라)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마)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바)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목적

가)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 의식 고취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다)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라)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목적
가)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나) 특수학교 토요 프로그램 운영
다) 방학프로그램 운영
라)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목적
가)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2) 추진 내용
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나)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장학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특수학교(급)시설·설비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일반학교 설립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치
2)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적극적인 행·재정지원
3)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신·증설 및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
○[신·증설] 47학급 : 7억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적극 홍보

3)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4)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6교, 7,000만원]

5)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6)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지원[4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연수과정에 장애이해(인권보호 포함)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2)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및 교육지원청(4청) 지원

3)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조직·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특수학교(급) 현장 맞춤형 컨설팅 장학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학교교육이 가능한 순회교육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재택순회, 학급순회) 지원 계획 수립 추진
3)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4)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추행(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결정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치료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각급 학교에 배치
2)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 연수 실시[455명]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예산지원[380명]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가족지원(1가정 2자녀), 통학 지원(대중교통비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별 연 1회 이상 연수 실시)
2)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및 계획
   ㅇ순회교육 계획, 진단평가 계획, 특수교육관련연수 계획,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예산 집행 세부 계획 포함
2) 4개 권역별 기능 거점 및 23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 운영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1인 1기,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ㅇ중점 특수학교 2교 지원[교당 1,000만원], 문화예술 동아리 32교 지원 [교당 250만원 지원]
   ㅇ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 지원[110명, 1인당 25만원]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1) 교육지원청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인력 확충 및 담당자 지정 · 운영
2)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 ·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ㅇ고등부 특수학교(급)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한 운영 예산 지원(10개 기관)
2)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지원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ㅇ특수학교 학교 기업
      – 안동영명학교 : 보안문서 파쇄, 세탁, 커피제조
      – 포항명도학교 : 직업체험훈련실, 임가공
      – 상희학교 : 커피제조, 직업체험훈련실
   ㅇ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 바리스타 및 제과 · 제빵, 구미인동고등학교 : 바리스타[2교 6,000만원]
   ㅇ전공과 특색사업 : [8교 3억 2,000만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1) 모든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및 장애 인권교육 실시
2) 전문강사,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직장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23개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2)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체 운영 지원
2)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전문성을 갖춘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 운영 : 학부모 및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서류 요구 금지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지속적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 활용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재활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재활승마 가족 캠프] 운영 : 80가족(여름방학(1기), 겨울방학(2기)으로 나누어 2박 3일 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희망을 주는 맞춤형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장학 별도 추진
2) 특수학교(급)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경상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2. 중점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환경 개선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나. 통합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개별화 교육계획 내실화
4)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5) 통합교육 역량 강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 확대·방안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라.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 공감문화 조성
2)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학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 환경 개선

1) 특수학교 설립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요구에 적합한 특수학교 설립 및 권역별 특수교육 기회 제공

나) 2019. 3. 1.자 거창나래학교 개교(거창, 함양)

2) 특수학급 신·증설 교재교구 및 환경 개선비 지원

가) 2019학년도 신·증설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가) 특수교육 교원 연수(집합+원격) : 2000명

나) 신규임용교사 장애이해 연수 : 60명(초·중등 신규임용교사)

다) 통합학급 교사 원격(집합)연수 : 2,000명

라) 건강장애학생 담임교사 연수 : 40명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치료사 연수 : 118명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및 특수교육수업연구교사제 운영

가)수업동아리 운영지원 : 3개 동아리 지원

나)특수교육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12명)

3) 특수교육 자료개발

가) 현장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2종)

나) 개발된 자료 활용 및 지원체계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홈페이지(gnise.gne.go.kr)에 개발자료 탑재(메인화면-특수교육지원센터-자료실)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1) 유급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500명('18) → 556명('19)]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 특수교육보조인력 집합 및 원격연수 : 1,000명(1월, 8월 및 수시원격)

2)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시스템 운영
나) 특수교육정보화 지원실 운영
다) 보조공학기기 대여 208건
3)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조정 지원 : 일반학교 평가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연 1회(10월 중)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숙식경비 지원
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가)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배치 : 118명
– 병원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월 15만원 이내 실비 지급)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2.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운영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운영 (초 11, 중학교 7, 고등 7)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18개 교육지원청(진주 김해는 거점으로 운영)
나)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3) 통합교육거점 유치원 확대 및 운영
가)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4개 유치원)
나)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지역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교육 연수 실시
4) 시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창원, 김해, 함안)를 활용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나) 장애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통합교육 효과 증대
다) 시청각장애 거점 지원센터 중심으로 담당자 연수 및 학부모 연수 실시

5) 특수교육체험관 운영
가) 안전생활체험관, 진로설계관, 공학체험관 및 게임문화체험관 운영
나) 장애체험관 운영
6) 특수교육수련관 운영
가)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생 (16기, 842명)
나) 매주 수·목요일(1박 2일 숙박형)

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나) 2015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 학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다)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지원
4)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
가) 특수교육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지침 발간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개최
5)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제출(12월)
6) 정다운학교 운영
가) 교육부 요청 정책연구학교 2개교 운영[안골포중학교(2/2), 신현초등학교(1/2)]
나) 과제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방안

다. 개별화 교육계획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미설치학교 개별화교육계획서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책임은 단위학교장(교육책임자)에게 있음

3)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보급 : 연 1회(10월 중)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 바람직한 행동형성을 위한 학교, 학급, 개별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특수학교 10개교

3)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 경상대병원학교(진주혜광학교), 양산부산대병원학교(양산희망학교)
나) 원격수업 지원 : 만성질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신체 질환 또는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지원
다)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10개교

4)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파견학급 운영 : 순회학급 25학급, 파견학급 11학급

마.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지원 연수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포함)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원)장 집합연수('19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 상반기 670명 이수, 하반기 9월 200명 연수 예정)
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집합연수(7월, 220명 연수 예정)

2) 통합학급 교원 특수교육 연수
가)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 강화
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다)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위탁 원격 연수 실시(연중,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서 전액 부담)

라)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교육 직무연수(누적 60시간 이상) 의무 이수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가) 자유학년제 운영 : 6교(경남혜림, 진주혜광, 통영잠포, 김해은혜, 양산희망, 경남은광)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 통영잠포학교('19~20', 2년)

다)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각 학교별 전문적수업공동체 지원 : 10교)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

가) 자유학기 교과 재구성 및 평가, 교실수업 개선 방안에 대한 지원

3) 자유학기(년)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거점센터 :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나)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활동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20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각 1명씩

2) 특수학교 기업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가)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창원천광학교

나)「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 :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3)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가) 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나)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위한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4) 장애학생 해외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가)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20명 및 인솔교사 10명

나) 장소 : 일본(오사카)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각 급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조항 신설·강화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가) 운영기관 :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나) 대상학교 : 74개교(초, 중, 고)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1)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가) 해당학교별 신입생의 적응을 위한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 교육비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나)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 운영 지원 :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승인된 민간 지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체계 확립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정서행동장애 및 학습장애 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중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여부 결정
   다) 건강장애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여부 결정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나) 장애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인권보호
5) 경남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가) 학부모, 특수학교 교원, 전문직,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나)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수시협의회 개최
   다) 경남 특수교육의 중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
   라) 경남특수교육의 중요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공공성 확보 및 공감적 분위기 확산

6)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강화를 위한 센터장 협의회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소관 부서장) 협의회를 통한 특수교육정책의 소통강화

나) 연 2회 정기협의(3월, 9월) 추진

다.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

1)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

가) 베트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및 교육

나) 중장기적 지원 전략으로 차년도 지원 및 향후 방전방향 모색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 환경 개선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특수학교 설립	-	-	-	2	
특수학급 신·증설	-	25	25	20	
노후특수학급 환경개선	-	25	25	25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00	350	350	400	연수지원 인원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2	2	2	2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수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유급 특수교육실무원 증원	56	20	50	50	특수교육실무원 증원수
보조공학기기 지원	208	260	312	364	보조공학기기 대여 인원수

2.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구축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지원	30	30	30	30	특수학교 미설치학교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8	6	6	9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수

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65	69	72	75	전체 학교수 대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
시청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지원(명)	25	25	30	30	시청각 장애 대체자료 지원 학생 수

다.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실)	1	1	1	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수
건강장애학생 지원(명)	180	180	180	180	건강장애학생 원격 수업 지원 인원

라. 통합교육 역량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지원 연수(명)	150	150	150	150	통합교육지원연수일반학교 관리자 참여인원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연수 지원(명)	85	87	89	90	통합학급담임 특수교육연수 이수율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교)	2	4	2	2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개)	1	1	1	1	운영지원단 구성 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회)	1	1	1	1	담당자 연수 횟수

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2	4	2	2	진로전담교사 배치 수
전환교육지원실 프로그램 운영	55	60	65	70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참여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교)	74	75	80	80	장애이해교실 지원 학교 수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명)	330	350	370	400	장애인식개선 참여인원 수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19	´20	´21	´22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84	88	92	95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참여율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급)	36	39	42	45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방향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지원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2. 중점 추진 과제

가.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3.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을 길러 성공적인 사회통합 능력을 기른다.

나. 균등학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 문제해결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들어 간다.

마.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활동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바. 우리 고장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Ⅱ 2019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 제주서초병설유(1), 영평초(1), 서귀포초(1), 오름중(1), 대기고(1)

나) 특수학급 증설 : 서귀중앙초병설유(1), 삼성초(1), 남광초(1), 삼양초(1), 동광초(1), 삼화초(1), 한라초(1), 함덕초(1), 서귀북초(1), 안덕초(1)

다)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 : 고등학교 50,000천원, 유·초·중학교 30,000천원

라) 특수학교 전공과 학급 증설 : 제주영지학교 전공과(1학급)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가)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초등 1학급 운영지원

나) 제주권역재활별원 순회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립 추진

다) 특수교육대상자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제주고, 표선고, 함덕고

※ 직업교육 중점학교 : 제주중앙여고, 제주일고, 제주여상,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한림공고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시·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점역사, 교정사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의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확대 권장

나) 도서지역,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원격교육연수원 포함) 연수 지원

나)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초등통합교육수업연구회, 중등진로직업교육연구회, 전공과수업연구회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 운영, 교원 심리·법률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노형초병설유치원)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정다운학교 :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표선초, 삼성초, 아라중, 표선중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 2019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찬회(2019. 6. 5.) 실시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초등통합교육수업연구회, 중등진로직업연구회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따른 교과용도서 활용 활성화
   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나)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5)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및 현장 의견 수렴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여 순회교육 지원 철저
      –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3)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는 순회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나) 특수학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 등 필요한 지원 제공

바.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라) 특수교육실무원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연 1회 실시

2)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가)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실시 의무화(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원 연수 과정 이수)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라)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마)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다)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가)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나) 병원학교 설치 · 운영에 대한 행 · 재정지원 홍보 및 해당지역 종합병원과 적극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설치 운영

다) 주책임 의료진에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 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다)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제주영지학교 운영

6)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 · 운영

가) 제주특별자치도 ICT융합담당관 지원

나) Blue Band 시스템 구축(http://ubb.jje.go.kr)

다)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운영 관리 및 홍보(이용 안내)

라) 대상 :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에 1일 이상 입원 중인 초등학교 학생

마) 수업과목 : 국어(동홍초등학교), 수학(일도초등학교) 실시간 영상수업 운영

바) 출석인정 : 입원기간 동안 1일 최소 1교시 이상 학습 시 인정(녹화수업 포함)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 ·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 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나) 주민센터, 시·읍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별 예술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및 문화향유권 기회 제공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참가

나)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 · 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제주영지학교 전공과 1학급 증설)
다)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 ·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 · 직업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유관기관 연계 ·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 ·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지원 확대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7)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다양화 추진
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전공과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반 조성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나)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 네트워크 지원 권장

다)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정보 제공 강화

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 체계적 안정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3)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가)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나)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가)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리플릿 등) 제작·활용

나) TV,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나)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다)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라)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다) 2008년 개발 장학자료 활용 지도 : 「알고 싶은 소중한 성」 성교육 자료

라)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의 인권보호 자료실 활용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환경 개선

다)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활용(도교육청 장학마당 사이버장학실 탑재)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가)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철저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마. 방과후 교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돌봄 지원체계 강화(토요 프로그램 포함)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강화

3)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나) 유관기관(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방과후학교, 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학교, 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등 업무경감 방안 마련

바.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1)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나)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계획 마련

2)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강화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나) 특수학교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특수교육 유공교원 표창 실시

3)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

나) 특수교육 전공 교감 등 현장 장학요원 위촉 활용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2020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나) 전공과 학급 증설 여건 마련 : 제주영지학교 전공과(1학급)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가) 제주권역재활병원 순회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립 추진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인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다)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정다운학교 및 장애이해교실 운영학교 컨설팅 지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2)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2)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라.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다)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 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마.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 확대

2)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특수교육실무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 확대

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아.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3.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과 연계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집중학년(기)제 운영 도입·확대 등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가) 특수학교 전공과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나)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3)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2020년 제주영지학교 전공과 1학급 증설 여건 마련

다.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반 조성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장학사 배치 및 지원 기능 강화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다) 교육과정 연수 등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6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8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16. 5. 29.〉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1536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대통령령 제29258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12. 8.]

제16조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 · 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 · 산촌 · 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 ·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3조 【가족지원】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 【치료지원】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 · 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숙사의 설치 ·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 · 설비 기준은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 · 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7. 5. 29.〉

제6장 보칙

제33조 【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 제3항 및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 운영 : 2016년 1월 1일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29258호, 2018.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6. 2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3.〕〔교육부령 제101호, 2016. 6. 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교육과정】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0.]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 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 2016. 6. 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 · 유아발달검사
진단 · 평가 영역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 · 평가 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명 (한자)		성별	남 여
	주소			
	소 속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시 · 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월일

시 · 도교육감(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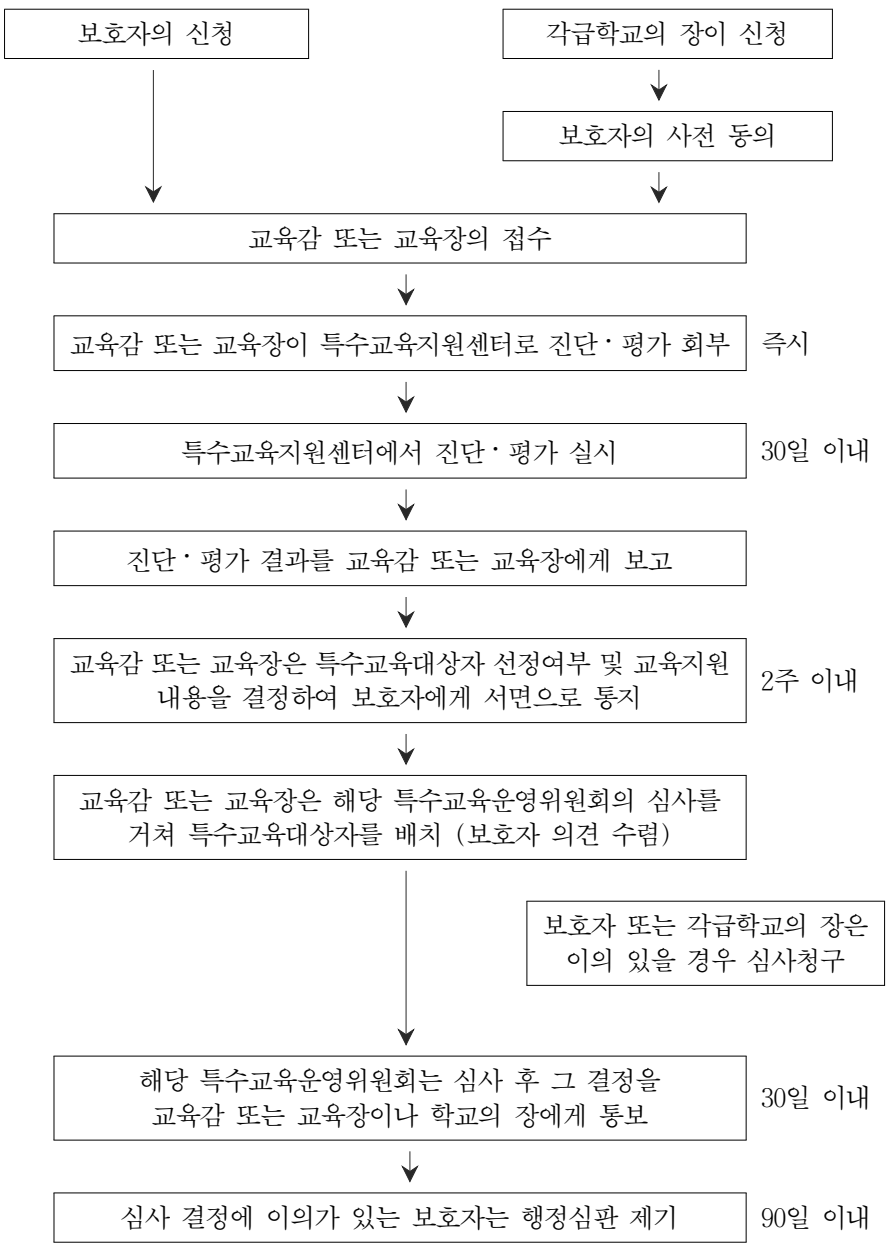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

배정학교	학교부제학년(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월일

시 · 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심사청구서(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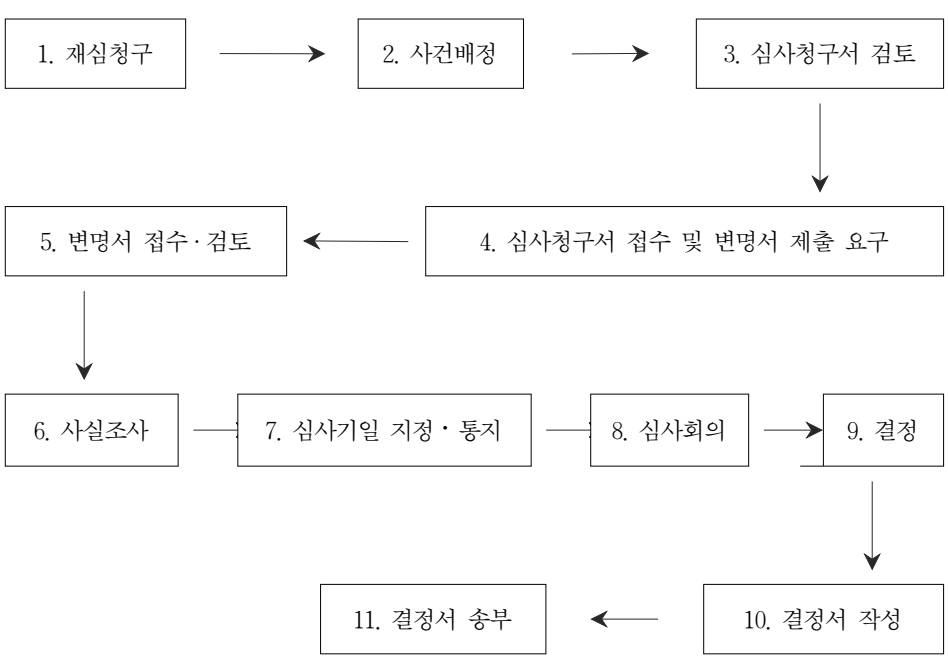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심사결과통지서(전문대학 이상)</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　　)</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4"></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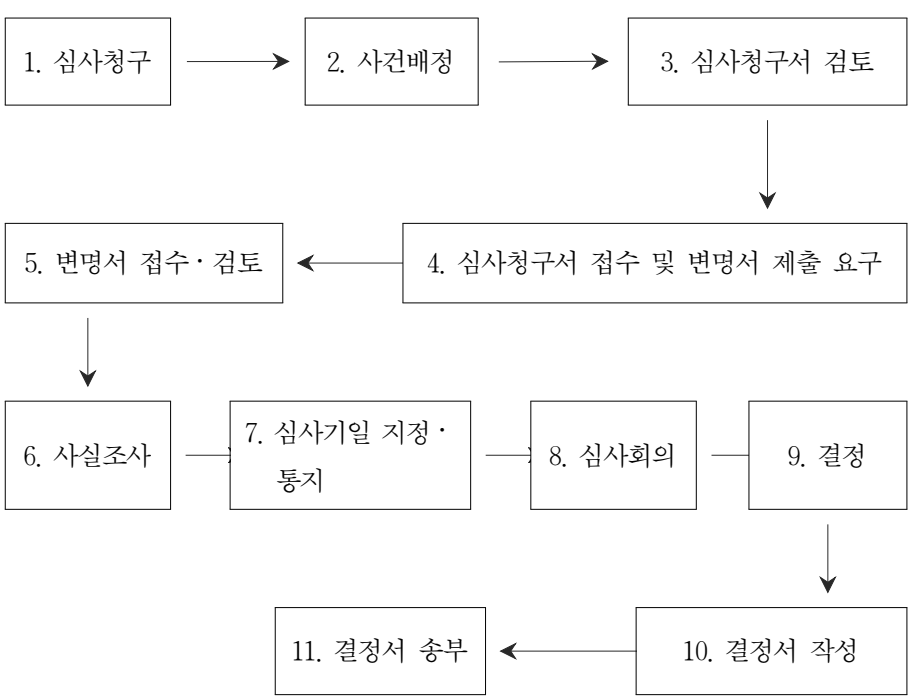

〔별지 제7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9년 9월

발행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954

인쇄처 : 에프앤(주)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 120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전화 02) 6445－2250 / Fax 02) 6445－2262